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김은정 장수정 · 정영모 · 오신휘



【책임연구자】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영유아 돌봄 서비스 공급 구조 분석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 지원 체계 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공동연구진】

장수정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정영모 국립공주대학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선임연구위원 오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45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발 행 일 2019년 12월

저 자 김은정

발 행 인 조 흥 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경성문화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ISBN 978-89-6827-651-4 93330

발간사 《

2000년대 이후 대두된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그동안 돌봄 정책 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자녀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양육 지원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 중심에는 영유아 전 계층 무 상보육, 양육수당, 아동수당 도입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은 전반적으로 미취학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취학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현실적으로 영유아기보다 자녀의 초등 입학 시기에 즈음하여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재 맞벌이 가구에 대한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지원 체계에 비해 초등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지원 체계가 열악하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수요를 기반으로 공급된다기보 다는 가용 예산 범위 안에서 공급되고 그에 따라 수요가 정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격차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 공적 돌봄 서 비스 이용 대상자가 되지 못할 경우 사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녀 돌봄 공 백을 해소해야 하나, 사적 자원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다면 아동은 돌봄 공백을 경험하게 된다. 취약가구를 우선하여 공적 돌봄 공급 체계가 설계 되어 있으나, 양적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취약가구는 사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해 돌봄 공백에 내몰릴 위험이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초등돌봄의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주축으로 이해되며 이 밖에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서비스 간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자 2017년 범정부 자문·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온종일 돌봄 체계'를 시도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 체계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학교돌봄과지역사회돌봄을 각각 10만 명씩 확대하여 총 53만 명의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을 통하여 정부는 학교와 지역사회 및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적 돌봄 체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돌봄 서비스 공급 구조의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현황을 학교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수요자의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 등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장수정 교수님, 정영모 박사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의 개별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차

٠1
. 3
. 7
. 9
11
13
15
23
29
01
31
33
37
56
59
61
76
93
23

제5장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욕구127
제1절 초등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
제2절 돌봄 서비스 정책 인지 및 요구도
제3절 소결 176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179
제1절 결론181
제2절 정책 제언184
참고문헌197
부 록203
[부 록 1] 부표 및 부그림203
[부 록 2] 조사표229

표 목차

/파 2 1) 도법 최양 이도 서저 사도 가증
〈표 3-1〉 돌봄 취약 아동 선정 소득 기준38
〈표 3-2〉 돌봄 취약 아동 선정 가구 특성 기준 ······39
(표 3-3) 지역아동센터 기본 프로그램 ······42
(표 3-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 기준 ······44
(표 3-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 기준······44
(표 3-6) 다함께돌봄센터 입소 우선순위 예시 ······47
〈표 3-7〉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 ······48
(표 3-8)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자격 기준 ······50
〈표 3-9〉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편성 예시54
〈표 3-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자격 기준55
(표 4-1) 지역아동센터 추진 체계 ·····64
〈표 4-2〉 기본 운영비 예산 지원 ·····65
(표 4-3) 지역아동센터 수입 구조(2018년 말 기준)······66
〈표 4-4〉 다함께돌봄센터 추진 체계 ·····68
〈표 4-5〉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재정 지원 및 운영 비교71
(표 4-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곳당 연간 운영비(국비 및 지방비 포함)73
(표 4-7) 정부 부처의 초등돌봄 정책 예산 ······79
(표 4-8) 초등돌봄교실 수익자 부담 현황······82
(표 4-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비율·····83
(표 4-10)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 예산 추이 ······87
〈표 4-11〉 시도별 돌봄교실 운영 학교 현황(2019년) ······94
〈표 4-12〉 시도별 돌봄학교 운영 현황 및 평균 돌봄교실 수(2019년) ······96
〈표 4-13〉 시도별 돌봄교실 참여 학생 현황(2019년) ······98
〈표 4-14〉 시도별 돌봄교실당 참여 학생 현황(2019년) ·····99
⟨표 4-15⟩ 시도별 초등돌봄교실 이용 현황(오후돌봄, 방과후 연계형, 저녁돌봄)101
/표 4-16) 시도 단위 지역별 고용 맞법이 가구 비육102

〈표 4-17〉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2018년) ······104
〈표 4-18〉 지역아동센터 운영 주체105
〈표 4-19〉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2004~2018년) ······106
〈표 4-20〉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간(2018년) 107
〈표 4-21〉 연도별·시도별 신고 정원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2012, 2014년) \cdots 108
$\langle \pm 4-22 \rangle$ 연도별·시도별 신고 정원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2016, 2018년) \cdots 109
〈표 4-23〉 연도별·학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110
$\langle \pm 4-24 \rangle$ 연도별·가정 형태별·양육자 경제활동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112
〈표 4-2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타 기관 이용 현황(2017~2018년) ·······113
〈표 4-26〉 시도별 다함께돌봄센터 수(2019년 6월 말 기준) ······114
〈표 4-27〉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116
(표 4-28)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현황······117
〈표 4-29〉 지역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2018년 8월 말 기준) ······119
⟨표 4-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120
〈표 4-31〉 지역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현황(2018년 8월 말 기준) ······121
〈표 4-3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도별 이용 및 지원 현황 ······122
(표 5-1) 가구 일반 사항·······131
〈표 5-2〉 돌봄 서비스 경험과 만족도(총괄표) 132
(표 5-3)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133
〈표 5-4〉 공적 돌봄 서비스별 만족도 135
(표 5-5) 전체 만족도: 청소년 ·······136
(표 5-6) 거주지 크기에 따른 만족도 차이: 청소년 ······137
〈표 5-7〉 현재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138
〈표 5-8〉 현재 공적 돌봄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이용 현황······141
(표 5-9) 자녀가 혼자 있는 정도142
〈표 5-10〉 평일 방과 후 집에서 맞이해 주는 사람(6~17세)······144
〈표 5-11〉 평일 방과 후 함께 지내는 사람(6~17세)······145
$\langle \pm 5-12 \rangle$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cdots 146$

⟨₩	5-13>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1	48
⟨∄	5-14>	학교 돌봄 서비스 유형별 현재 이용 시간(이용자에 한함)1	50
⟨∄	5-15>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유형별 현재 이용 시간(이용자에 한함)1	52
⟨∄	5-16>	시기별 돌봄 공백의 어려움 정도(4점 척도)1	53
⟨丑	5-17〉	시기별 돌봄 공백의 어려움 비율(다소 어려움 + 매우 어려움)1	55
⟨₩	5-18>	돌봄 공백 해소가 어려운 시간대(학기 중과 방학 기간 평일 오전)1	56
⟨₩	5-19>	돌봄 공백 해소가 어려운 시간대(학기 중과 방학 기간 평일 오후)1	57
⟨₩	5-20>	돌봄 서비스 인지 정도1	58
⟨₩	5-21>	돌봄 서비스별 인지 비율(잘 알고 있음 + 조금 알고 있음)1	59
⟨₩	5-22>	바람직한 학교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 학년1	61
⟨₩	5-23>	희망하는 주된 돌봄 유형1	62
⟨∄	5-24>	희망하는 주된 돌봄 유형(1순위)1	63
⟨₩	5-25>	초등학생 자녀의 학년별 희망 주간 돌봄 유형(아동 기준)1	65
⟨₩	5-26>	학교에서 제공되는 초등돌봄교실 공급 확대를 위한 이용료 지불 의사1	66
⟨丑	5-27>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이용료 지불 의사 \cdots 1	68
⟨丑	5-28>	초등학생 시기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 정도1	69
⟨₩	5-29>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에 대한 생각1	71
⟨丑	5-30>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충분한 편 + 매우 충분함) \cdots 1	71
⟨₩	5-31>	초등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학기 중 \cdots 1	73
⟨丑	5-32>	학기 중 초등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관련 가장 필요한 사항(1순위) \cdots 1	73
⟨₩	5-33>	초등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방학 중 \cdots 1	75
⟨丑	5-34>	방학 중 초등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관련 가장 필요한 사항(1순위) \cdots 1	75
⟨₩	6-1>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에 따른 소요 예산 추정1	88
⟨丑	6-2> 7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의 특성 비교1	93

〈부표 1〉 지역아동센터 주간 운영 일수 및 하루 운영 시간 ·······203
〈부표 2〉 지역아동센터 운영 시간(2018년)204
〈부표 3〉 지역아동센터 연도별 토요일, 공휴일 및 야간 보호 운영 여부205
〈부표 4〉 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① 초등돌봄교실206
〈부표 5〉 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② 지역아동센터207
〈부표 6〉 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③ 다함께돌봄센터 ······208
〈부표 7〉 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④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209
〈부표 8〉 희망하는 주된 돌봄 유형(2순위)210
〈부표 9〉 희망하는 주된 돌봄 유형(1순위 + 2순위, 중복 응답)211
〈부표 10〉 돌봄 서비스 인지 정도 ① 초등돌봄교실212
〈부표 11〉 돌봄 서비스 인지 정도 ② 방과후학교 연계형 초등돌봄교실213
〈부표 12〉 돌봄 서비스 인지 정도 ③ 지역아동센터214
〈부표 13〉 돌봄 서비스 인지 정도 ④ 다함께돌봄센터216
〈부표 14〉 돌봄 서비스 인지 정도 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217
〈부표 15〉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생각218
〈부표 16〉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생각219
〈부표 17〉 학기 중 초등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관련 가장 필요한 사항(2순위) \cdots 220
〈부표 18〉 학기 중 초등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관련 가장 필요한 사항
(1순위 + 2순위, 중복 응답)221
〈부표 19〉 방학 중 초등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관련 가장 필요한 사항223
〈부표 20〉 방학 중 초등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관련 가장 필요한 사항(2순위) \cdots 223
〈부표 21〉 방학 중 초등이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관련 가장 필요한 사항
(1순위 + 2순위, 중복 응답)224
〈부표 22〉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2004~2018년)226

그림 목차

[그림 4-1] 다함께돌봄 사업 수행 체계69
[그림 4-2] 다함께돌봄을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 체계72
[그림 4-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 체계75
[그림 4-4] 우리나라 재정 흐름77
[그림 4-5] 초등돌봄 정책 관련 예산 흐름
[그림 4-6]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변화80
[그림 4-7] 10년간 초등돌봄교실 운영 추이103
[그림 6-1] 범정부 돌봄 서비스 협력 및 전달 체계190
/ㅂㄱ리 1\ 저ㅂ ㅂ둬이 아도 처人녀 도보 서비스 헤게ㄷ

Abstract <<

An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s of public care supply system for primary school children

Project Head: Kim, Eun-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public care supply system and use by primary school children. The findings show that parents prefer schoolbased services to community-based services. In addition, the potential demand for public care service is high and so is the willingness to pay for more of it. In our survey, 30.7% of the respondents as a whole and 39.7% of dual-income parents found it difficult to care for children during weekday afternoons. Also 21.7% of the children were found to spend time alone after school. In most cases, care problem was at its most acute after 5pm. and widely perceived in families with primary school children of all grades. 'Together care center' differed from other community-based services in that they provided general child care services and temporary care services for families of all income levels. In addition, there is a big gap in the supply of care services by region.

In conclusion, the current structure of child care supply system has many limitations in terms of target selection, service hours and regional gap. The main direction for the policy on the supply of care services for primary school children is to build a universal care system whereby appropriate services are provided to all children in need of care. This requires minimizing restrictions on user qualifications and expanding service provision. In order to expand the supply of services,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s in financial support and operation system.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xpand care services during vacations.

*Key words: children without parental care, community-based care, school-based car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대 이후 정부는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 전 계층 무상보육, 가정 양육수당, 아동수당 도입 등 지속적으로 양육 지원 정책을 확대해 왔다. 반면 초등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서비스 지원은 매우 미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2014년에서야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등 초등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서비스 확대는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부는 2017년 범정부추진단을 구성하여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학교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재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적 돌봄 서비스 지원 체계의 한계와 쟁점을 분석하고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실태와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서비스 공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이론적 검토 결과 초등아동 시기의 돌봄 공백은 아동 복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조사 결과에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개인의 책임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지역사회 기반보다는 학교 돌봄을 통한 지원을 더 바라고 있었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대기 수요(이용하고 싶으나 자격이 되지 않음, 신청했으나 떨어짐, 시간대가 맞지 않음 등)가 많으며

향후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할 의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국내 초등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공급 주체가 다원화되어 있 으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일정 자격 요건을 두어 제한하고 있는 구조이 다. 이 때문에 양적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수요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7%가 평일 오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고 하였으며, 맞벌이 가구는 이 비율이 3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돌봄 공백을 경험하는 아동의 비율도 높았다. 방과 후 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존재하는 아동이 21.7%에 달하며 대도시 아동.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 아동, 맞벌이 가구 아동의 돌봄 공백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특히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 아동의 돌봄 공백 경 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학교 오후 돌봄이 끝나는 오후 5시 이후의 돌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의 경우에도 돌봄 공백 해소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오후돌봄 이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저녁돌봄을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저녁 돌봄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돌봄 서비스 미이 용 이유를 살펴보면, 저학년은 서비스 질에 대한 염려로 이용을 하지 않 는 비율이 높고 고학년은 서비스 제공 시간과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 이 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 미는 취약계층 아동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시 돌봄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할과 기능에 큰 차이가 있다. 지역아동센터이용 경험은 주로 가구 소득이 낮은 경우, 농어촌 지역인 경우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이용자 특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과 지역 단위 관리 체계 및 운영의 관점에서 한계를 살펴보면, 공급 주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등의 문제로 서비스 확대가 어려우며 새롭게 시도되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지자체의 예산 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일시 돌봄 기능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학교 돌봄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초등아동에 대한 일시 돌봄 및 응급 돌봄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며, 학기 중과 방학 기간에 돌봄 서비스 수요의 차이가 극명함에도 불구하고 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서비스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결론적으로 현재의 공급 구조는 대상과 공급 시간 측면에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아동을 위한 돌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보편적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용 자격 제한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초등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등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재정 지원, 서비스 제공효율화를 위한 운용 체계 개선, 서비스 유형의 질 관리 및 정체성 확립, 오후돌봄과 방학돌봄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 주요 용어: 초등돌봄 서비스,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 _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동 돌봄 정책은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 지원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저출산 현상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돌봄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그 대 상은 전반적으로 미취학 영유아가 중심이었다. 미취학 영유아의 경우 전계층 무상보육,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돌봄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도 기준 영유아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68.3% 였다(교육부, 2018a).

반면 초등아동의 공적 돌봄 서비스는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이용자는 매우 제한적이다. 2016년 기준 초등학생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12.5%였다(교육부, 2018a).

영유아 돌봄 및 양육 지원 서비스가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현재 초등돌봄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취약계층과 실수요층을 우선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기에 제공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초등 입학 시기에 접어들면서 단절되고 이러한 현상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공급 체계하에서 서비스 이용자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당수의 아동들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거나 민간 영역에서 고비용의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전 취약계층 위주의 돌봄 서비스 공급 기조에서 현재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초등돌봄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의 공급 구조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초등아동의 돌봄 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중심으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각각의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효율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온종일 돌봄 체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2017년 범정부 자문단추진단을 구성하고 2019년 일부 시범 지역을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초등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학교와 지역 사회 및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대상을 늘리고 돌봄 사 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으나 현재의 계획 또한 기존에 부처별로 제 공되는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2019년 '온종일 돌봄 체계 현장 지원단'을 출범시켜 부처 간 정책 연계와 지원이 적절히 이루 어지고 있는지 서비스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시도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과 향후 초등교실 및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등과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등아동 대상의 돌봄 서비스는 총량이 부족하고 지역과 계층에 따른 서비스 제공 환경의 편차가 존재하며 아동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접근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공급 정책이 서비스 제공 기관별로 수요 아동에게 접근하기보다는 서비스 지역별 수요에 따른 적절한 공급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요자 특성에 따른 돌봄 서비스 욕구(needs)와 아동 복리에 기반한 적절한 공급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분절적이고 단편적 사

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이 주요 정책 과제였으나 오늘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일반 가정 아동의 돌봄 공백이 주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돌봄 수요에 대한 적절한 공급 환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조영희, 2012).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현황을 보편적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 봄 서비스를 학교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서비스 공 급 및 이용 현황, 서비스 유형별 제공 체계의 한계 및 쟁점, 수요자의 초 등아동 돌봄 실태 및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 등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초등아동 돌봄 서비스 관련 기존 연구 및 이론적 검토를 통해 초등아동 돌봄 공백과 아동 발달 및 아동 복지의 관계를 살펴보고 초등돌봄의 필요성, 자기 보호 아동의 문제, 초등아동 공적 돌봄 서비스의 쟁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내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정책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정책의 사업 설명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이용 대상, 서비스 내용, 종사자 기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학교 돌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운

영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및 역할을 재정 운용 관점에서 살펴보고, 서비스 공급 및 이용 현황을 시도 단위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4장의 경우 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급자 및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한 논의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초등 자녀를 둔 15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책 욕구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조사는 맞벌이 가구, 홑벌이가구와 초등 저학년, 고학년 가구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해당 조사를 통하여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시간대,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향후 요구되는 서비스 지원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초등아동 돌봄 서비스의 공급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보편적 돌봄 서비스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제 🚣 🎖 이론적 배경 및 문헌 고찰

제1절 초등아동기의 돌봄 공백과 아동 발달 제2절 초등돌봄 관련 연구 및 해외 사례 제3절 시사점

이론적 배경 및 문헌 고찰 〈〈

제1절 초등아동기의 돌봄 공백과 아동 발달

1. 초등아동기의 아동 발달

초등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유아 시기를 지나 아동기에 접어드는데, 아동기란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7~8세부터 12세에 이르는 시기이다. 아동생활의 중심지가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가 학령기라고도 한다. 따라서 아동들은 부모의 영향뿐만 아니라 친구, 교사 등과의 관계를 통해 발전하고 자신의 세계와 타인과의 관계가 더 확장된다. 그 과정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배우고 자신의 성격이 형성된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배움뿐만 아니라 보다 넓어지고 다양해진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심리·정서·사회적인 배움이 필요한 시기이다(최옥채, 박미은, 서미경, 전석균, 2015).

피아제(Piaget)에 따르면, 초등아동의 경우 사고 능력이 구체적 수준에서 논리적 수준으로 발전해 가는 구체적 조작기(6~11세)에 해당한다. 12세가 되면서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추론을 통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할 수 있는 형식적 조작기에 이른다. 10세를 전후해서는 규칙이란 것이 상호 합의를 통해 변화할 수 있는 것임을 아는 자율적 도덕관이 형성된다(Piaget & Inhelder, 1969; 김재은 역, 1983). 도덕적 발달 단계를 더 깊게 연구한 콜버그(Kohlberg)는 전인습적 수준(규칙을 내면화하고 벌을 피하거나 보상을 받기 위해 규칙을 따르는 것)은 4~10세, 인습적 수준(다른 사람의 승인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해 규칙과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것)은

10~13세에 발달한다고 보았다(Kohlberg, 1981; 김민남, 김봉소, 전미숙역, 2000). 아동의 발달이 자동 발생적이며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사회적 상황과 개인 간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있지만 두 이론 모두 이 시기가 아동의 인지적 발달과 도덕적 발달이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설명한 점을 고려할 때 초등 시기는 인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도덕적 발달이 점층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아동 정신 분석가인 에릭슨(Erickson)은 6세에서 12세에 이르는 시기를 학령기라고 하여 이 시기는 근면성을 발달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에릭슨에 따르면 근면성이란 자신에게 닥친 외부의 도전을 자기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이다. 근면성이 높은 아이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획득하고 그렇지 않은 아동은 열등감을 형성한다(Erickson, 1993; 윤진, 김인경 역, 1997). 이런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부모의 태도, 아동의 능력, 교사의 태도 등이 있다. 현대 아동들은 부모와 학교 교사 외에 학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과후 기관과 돌봄 기관에서 다양한 교사들을 만나며 그들과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 최근 아이들은 방과 후에학교나 집 또는 그 이외 기관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초등아동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누구와 보내느냐 역시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비거스트(Havighurst)의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에 따르면, 아동기에는 신체와 지능의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과업이중요하다(Lee Manning, 2002). 아동기에는 운동 기술이나 근육의 협응, 정교화가 이루어져 몸을 이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운동에 흥미를 갖는다. 또한 개인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환경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인 지능도 직선적으로 발달한다. 이 시기 아동은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이 발달한다. 초등학 교 고학년이 되면 관심 영역도 점점 확대된다.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다양 한 정서를 경험한다. 따라서 아동이 느끼는 두려움, 공포, 질투, 애정, 분 노 등 다양한 정서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 의 사회적 발달을 위한 환경적 요소는 학교, 또래 관계의 경험, 대중매체 등이기 때문에 환경적 요소와의 상호 작용 역시 중요하다. 특히 아동들은 놀이를 통해 규칙을 지키는 것과 서로 간의 팀워크 및 역할에 대해 배우 고 승리와 실패를 경험하며 성장한다. 다른 한편 환경적 요소를 통해 습 득한 정보와 역할에 의해 고정관념이 생기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의사소통이 중 요하다(최옥채 외, 2015). 요컨대 아동기 때 지능 발달,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사회 발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달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 발달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 이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거나 부모나 보호자(교사, 돌봄교사, 돌봄자 등) 가 아동과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동의 발달에 주의 깊은 관심뿐만 아니라 민감한 반응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인본주의자인 로저스(Rogers)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그 개인의 내적 준거 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Rogers, 1995; 오제은 역, 2007). 특히 어린 시절의 긍정적인 관심에 관한 욕구는 중요한 사람이 자신에게 갖는 기대와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때 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은 자신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현실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 자기 경험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발달하기 위해서 또한 스스로 자기 행동의 통제자가 되어 건강한 성격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중요하다고 본다.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수용하고 존경하는 것이며 그 존재 자체로서 귀중한 사람이라고 평가받

고 사랑받는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칭찬받을 만할 경우만이 아니라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받을 때 자신의 욕구와 자아 개념에 따라 최대한으로 성장할 수 있다(최옥채 외, 2015). 따라서 돌봄과 관심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것도 아동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인본주의 학자로 동기화 이론을 제시한 매슬로(Maslow)에 따르면, 인간은 낮은 단계의 욕구가 만족되어야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의식하거나 동기가 부여된다(Maslow, 1967). 따라서 안전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낮은 단계의 욕구가 만족되고, 기본적인 위협을 받지 않은 아동일수록 높은 욕구에 대한 동기를 가지며 자존감이나 자아실현과 같은 더 높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지적한다(최옥채 외, 2015).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 실질적인 양육 역할을 하는 보호자, 교사, 돌봄교사 등에 의한 적절한보호와 돌봄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이후 삶의 방식과 태도뿐만 아니라 학습 태도에도 영향을 끼친다. 선생님이나 부모는 아동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생활 양식과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매 단계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 유지, 발전해 가느냐가 아동의 심리적 스키마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스키마는 이전의 경험과 어떤 시간의지식이 반영되어 나타난다(Schunk, 2016). 따라서 돌봄 기관과 초등돌봄 기관과 같은 곳에서 점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동들이 기관에서만나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론들이 아동의 발달 과정에 대한 것이었다면 아동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학습적인 환경 요소는 아동의 발달에 중요하다. 뇌

에 적합한 환경과 분위기는 학생들의 상태(감정적, 정신적, 신체적)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세로토닌(행복), 아드레날린(행동), 도파민(찬양), 코르티솔(건강한 관심)과 같은 화학 반응이 나오는 것을 돕는다. 반면 위협적이고 처벌적이며 당황스럽게 하는 등, 이 외에 다른 부정적인 요소들은 두뇌에 적대적이다. 이러한 환경은 아미르달레(공격 또는 도주 센터)가경계 상태가 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학습을 더디게 하고 방해하는원인이 되기도 한다(Jensen, 2005). 이런 맥락에서 방과 후 학습 기관이나 돌봄 환경도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체계적 관점에서 중간 체계란 상호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개의 미시 체계를 말한다. 예컨대 초등아동은 가족, 학교, 또래, 방과후, 돌봄교실 등 여러 개의 미시 체계로 구성될 수 있다. 미시 체계 간 상호 작용이 원활하고 그 체계 안에서 상호 작용의 질이 좋으면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 외에도 부모의 통제권을 벗어난 외체계(예: 부모의 직업 환경) 역시 아동 발달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최옥채 외, 2015). 이러한 환경은 직간접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아동 발달의 자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아동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 부모의 조건(계층성), 성별, 아동의 연령, 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른 발달적 욕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요컨대 초등아동의 단계에 따른 적절한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돌봄(교육과 돌봄의 통합)이 필요하고 그러한 돌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점점 많은 아이들이 초등돌봄 기관에서 방과 후를 보내기 때문에 돌봄 기관의 환경과 돌봄의 질은 아동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초등 방과 후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들이 방과 후 아이들 을 어디에서 지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는 각 가족의 자원, 부모의 가치 관,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기대되는 학습에 대한 환경 및 사회적인 문화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끼친다. 신호정(2016)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들은 방과 후 학습을 위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거나 안전을 위해 주로 실내에 있게 한다. 특히 맞벌이는 돌봄을 위해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신호정, 2016; 이재희, 김근진, 엄지원, 2017). 신호정(2016)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 아이들은 아동의 발달 측면에서보다는 부모들의 교육관과 가치, 엄마의 취업 여부 등에 따라 방과 후에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가가 결정되다.

2. 초등아동기 돌봄 공백

최근 돌봄 공백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한 임혜정(2017a, 2017b) 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2116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방과 후돌봄 공백의 영향 요인 분석에서 맞벌이 가정, 부모가 4년제 대졸 이상 가족, 형제자매가 있는 가족이 돌봄 공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돌봄 공백이 학교 학습 활동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초등돌봄 공백으로 인해 나홀로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송다영, 장수정, 백경흔, 2017; 장혜경 외, 2015; 임혜정, 2017a, 2017b).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37%가 평균 한 시간 이상 홀로 지낸다. 한부모 자녀의 경우 장시간(4시간) 혼자 보내는 아동이 많다(장혜경 등, 2015).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10명 중 1명은 성인 보호자의 적절한 돌봄 없이 주당 9시간을 보낸다. 맞벌이 가구일수록, 형제자매가 있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돌봄 공백이 증가한다(임혜정, 2017b).

현 초등돌봄 정책의 경우 방과 후 충분한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문

제도 있지만, 수업 전(pre-care) 돌봄 서비스가 부재하고 방학 중 돌봄 서비스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침 시간대 돌봄 서비스 이용 의향이 31.4%이고, 맞벌이의 경우 39.4%로 나타났다. 방학 중 평일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평균 212.5 분으로 학기 중 평균 146분보다 훨씬 긴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영란 외, 2018). 결과적으로 부모의 일하는 시간과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 및 방학기간이 충돌하여 여전히 돌봄의 사각 시간대가 하루 중 여러 번, 여러 차례 있음을 알 수 있다. 1년 단위로 보았을 때도 단기 방학이나 계절 방학의 경우 공백 현상이 심화되어 연중 여러 차례 공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7년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있는 맞벌이 127명은 아침 시간 충돌이 가장 많았고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시간충돌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송다영 외, 2017).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맞벌이 가구는 조부모나 베이비시터 등의 도움을 받는다.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 아이들은 학원에서 학원으로 이어지는 스케줄을 구성하기도 하고, 홀로 또는 형제자매끼리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조부모나 베이비시터 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가구는 수업 전 시간과 방학 때 돌봄 공백이 더욱 심화된다. 이런 기간에 초등 아이들은 더 많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는 현행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보육 및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중심의 돌봄 지원 체계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방과 후 돌봄 서비스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초등 학교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집중되어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현상이 나타 난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일반 맞벌이 가정 아동의 경우 공적 돌봄 서 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결국 높은 비용의 돌봄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교육비를 부담해야만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아동이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아동을 어떻게 보살피느냐는 아동 발달과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아동에 대한 돌봄 정책에서 아동의 권리가 담론화되지 못하였다(백경흔, 2015). 돌봄에 있어 아동권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권에 기초하여 아동 발달을 고려한 돌봄 환경과 돌봄의질 담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초등돌봄 공백은 일하는 부모 특히 모의 경력 단절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여성들의 주당 노동 시간이 4시간 줄고, 상용직 취업률이 2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재희, 2018). 조부모의 돌봄 부담 증가 등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백경흔, 송다영, 장수정, 2018). 요컨대 초등돌봄 공백은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와도 연결된다.

이봉주(2012)는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돌봄 영역을 방과 후 보호, 아동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지역사회 내 예방적 보호, 가정 외 보호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아동들의 돌봄권 보장 차원에서 방과 후 보호는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다. 방과 후 돌봄 공백과 관련한 이봉주, 조아라(2011)의 연구에 따르면, 방과 후 방치가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초등학교 고학년 기간의 방치의 영향을 분석한 이연구에 따르면, 방과 후에 아동들을 방치하면 학업 성취도가 감소하고 내재화 문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과 후 돌봄이 단순 보호나 돌봄보다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고 정책적 지원 역시 발달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초등 시기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생애주기와 아동권의 관점에서 적절한 교육과 돌봄이수반될 필요가 있다(김선혜, 2015).

제2절 초등돌봄 관련 연구 및 해외 사례

1. 국내 관련 연구

국내의 초등돌봄 관련 연구는 주로 초등돌봄교실의 운영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한 논의와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들로 영역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관련 연구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돌봄전담사의 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 반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체계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공급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은 주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강지원, 이세미(2015)의 연구는 지역사회 기반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를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은 대상이 특정 연령에 편중되어 있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서비스 간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학습 지도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서비스별 전달 체계의 유사·중복 문제와 분절적인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기반 아동·청소년 돌봄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후 초등돌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심정미, 채현 탁(2015)의 연구는 학교 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기준 강화 등 서비스 질 개선과 돌봄교실 확대 운영에 따른 규정 마련 등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한 다. 이와 함께 아동 돌봄 서비스의 보편화를 기반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낙인감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은 조영희(2014)의 연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다만 조영희(2014)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경우 기존의 폐쇄적인 서비스 운영 체계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2014년 초등돌봄교실 서비스가 무상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지역아동센터 등의 이용자가 감소하여 관련 기관의위기의식이 한동안 증대된 바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서비스 간 효율적연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럼에도 서비스 관련 부처마다입장이 달라 실질적인 연계 협력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조은경(2014)의 연구는 지역사회 돌봄협의체가 지역아동센터장 및 학교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서비스를 직접 담당, 운용하는 초등돌봄전담사의 의견이 배제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돌봄협의체는 서비스 직접 제공자가 참여하지 못해 현장에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비스 간의 연계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 어젠다이다. 이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 서비스들 간의 적극적인 연계 모형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김진석, 백선희, 정영모, 김소영, 조은하(2018)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방과 후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3가지 모형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방과 후 돌봄 기관 기능 특화형으로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이용 대상, 시간 등에서 특화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돌봄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담당하는 모형이다. 두 번째 모형은 방과후 돌봄 기관 기능 통합 및 지역 분화형으로 기존 서비스 기능을 통합하고 지역의 돌봄 욕구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역을 세분화하여 해당 지역안에서 수요에 따른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형이다. 세 번째

모형은 방과 후 돌봄 기관 융합형으로 기존 서비스가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서로 협업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오후돌봄 시간 이후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 및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각의 서비스 기관이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은 관리·감독 및 예산 운용의 문제 등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조은경, 2014).

서비스 간의 연계 활성화를 바탕으로 현 정부는 초등아동 돌봄을 위해 '온종일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 정책의 주요 사항은 학 교 돌봄과 마을 돌봄을 각각 10만 명씩 확대하여 2022년까지 53만 명에 게 초등아동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 로 공공 서비스 인프라 확충(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마을과 학 교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최영, 2019). 이는 서비스 공 급의 양적 확대와 함께 학교와 마을의 연계·협력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지자체 중심의 돌봄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 회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의 연계·협력을 활 성화하고자 함이다. 이 밖에 서울시에서는 '온마을 돌봄'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우리동네키움센터'로 명명하여 이를 신설·확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마을 단위의 돌봄 자원으로 기존 지역 돌봄 자원이 부재한 지역을 중심으 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와 자치구 온마을 아이돌봄협의회를 통한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다(서울특별시, 서울시여 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우리동네키움센터, 2019).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일반적으로 마을 단위 지역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 이외에 기존 지 역아동센터와의 협력 모델인 융합형, 다양한 문화·예술·창의 체험형 놀

이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권역별 거점형 등 다양한 모형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최영, 2019).

2. 해외 사례1)

가. 핀란드

핀란드는 방과 전과 방과 후 돌봄이 교육부에 명시되어 지자체의 계획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김미진, 홍후조, 2019). 방과 전·후 교육 활동은 책임감, 공동체 의식 및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모든 아동들에게 각자의 수준에 맞는 지원과 개발을 강조한다(Fin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7).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각 학교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방과 후 돌봄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과 전 돌봄은 56%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소규모의 경우 3~5명, 대규모는 20~30명 등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20명을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돌봄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며 누구나 필요하면 적은 비용으로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아침 식사도 원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학교에서 식사를 할수 있다. 보편적으로 욕구에 맞춰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를 학교에서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이 동원되기도 한다(장수정, 송다영, 백경흔, 2019).

¹⁾ 이희현, 윤종혁, 황준성, 김혜진, 김병찬, 김수동, ... 길성용. (2019). 해외 방과후돌봄정책 사례 분석.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각 지자체는 연간 570~760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시간에 따라 120유로, 160유로 등 최소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방과 전·후 교육 활동은 주당 7~17시간 제공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월 60~80유로의 지원금을 준다. 최근 핀란드의 생활 및 근로 환경 변화로 대도시 근로자의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는 게 핀란드 정부의 주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Fin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7).

나. 스웨덴

스웨덴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으며 공적서비스는 아동에 대한 복지를 특히 강조한다. 모든 아동은 국가와 사회, 가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일하는 부모를 지원함으로써 공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12세 이하 아동은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으며 학업 또는 직장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원하에 2018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81.2%에 달한다(OECD, 2019). 방과 후 돌봄은 1990년 이전에는 학교 밖 시설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학교 내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교육법을 적용받는다.

스웨덴은 공보육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재정도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책임진다. 다만 중앙정부 보조금, 세금, 부모부담금을 활용하여 운영된다. 중앙정부 보조금은 주로 인건비와 시설비에 활용되며 부모 부담금은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된다. 부모 부담금은 실제 비용의 평균 10~15% 내외로 책정되며 자녀 수에 따

라 상한액과 소득에 대한 상한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월 소득의 1% 또는 2%, 금액은 약 5만 5000원에서 11만 원의 상한을 두고 있다.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초등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티즈헴과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티즈클럽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두 가지 모두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직장 또는 학업 등의 이유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가 이용한다. 저학년 대상의 프로그램인 프리티즈헴은 오전 6시 30분 또는 7시부터 아침돌봄을 제공하며 오전 간식 또는 아침 식사를 준다. 종료 시간은 오후 5~6시이며 대부분의 부모는 이 시간에 근로를 마치고 가정보육을 할 수 있다. 저학년 돌봄의 경우 매일 야외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1주일에 한 번은 공원과 숲에서 스포츠 게임을 즐기는 등 실외 활동이 제공되고 있다. 고학년 대상의 프리티즈클럽은 학교와 지역사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5시이다. Statistics Seweden(2015)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만 7~9세 아동의 약 82%가 해당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만 10~12세는 약 20%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연 외, 2019). 전반적으로 학령기 아동의약 50%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일본

일본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자녀의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아동교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역아동교실'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지자체 수준의 지역아동교 실 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학교 공간, 지역 회관 등 여러 장소를 활용하여 방과 후 교육 활동을 제공하였다. 일반적으로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주 말과 방학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 아동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안전 보험료(약 5000 원)를 내야 한다. 이후 2007년부터 '방과후아동교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 으며 이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의 여유 교실 등 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실행 주체는 기초 자치 단체이며 중앙정부는 예산을 보조하는 방 식으로 운영된다. 일본의 방과후아동교실은 체험 활동과 교육 격차 해소 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초등학교 1~6학년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중 앙정부의 예산 보조하에 지자체가 시행하며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이후 2014년에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맞벌이 가구의 돌봄을 지원하고 차세대 인재 육성의 관점에서 모든 아동에게 방과 후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방과 후 아동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종합계획은 기존에 문부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과후아동교실과 후생노동성 중심의 돌봄 사업인 방과후아동클럽(부모가 일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모든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과후아동클럽과 방과후아동교실이 동일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일체형' 방식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제3절 시사점

본 장의 이론적 고찰에 따르면 초등 시기의 돌봄 공백이 아동 발달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영유아 시기뿐만 아니라 초등 시기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초등 시기 아동 돌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기존 연구에서 초등 시기 아동 돌봄 공백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정부 정책은 아동 발달을 지원하는 측면보다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양육 부담 감소 측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돌봄 지원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이해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서비스 확대 정책의 방향은 매우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서비스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려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당초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일부 국가 사례를 살펴 보았다. 핀란드, 스웨덴, 일본의 경우 모두 초등 교육에 대한 의무 교육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국 내에서도 향후 재정 조달 방법으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익자 부담 구조 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수요자가 적 절히 분담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 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 3 초등아동 공적 돌봄 지원 정책

제1절 학교 돌봄 제2절 지역사회 돌봄 제3절 소결

3

초등아동 공적 돌봄 지원 정책 〈〈

제1절 학교 돌봄2)

1. 추진 배경 및 목적

초등아동의 학교 돌봄의 대표적 사업에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이 있다. 2004년 초등 저학년 '방과후교실' 도입 정책 발표 및 28개교 시범 운영 후, 2009년에는 300개교를 대상으로 돌봄 시간을 야간까지 확대한 '종일돌봄교실'을 시범 운영하였다. 2010년에는 6200실의 '초등돌봄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확대하였으며, 2011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아침돌봄(6:30~9:00), 오후돌봄(방과 후~17:00), 저녁돌봄(17:00~22:00)의 체계를 확립하였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2011~2013년 시범 운영되었다. 또한 2013년 78개교에서 초등 방과 후 돌봄 강화 모델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6개 지역(서울 노원구, 부산 서구, 울산 울주군, 경기 성남시, 전북 진안군, 전남 나주시)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범정부 통합 지원을 시범 운영하였다. 2014년 초등학교 1~2학년 희망학생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1만 966실까지 확대 운영하기에 이르렀으며 2015년에는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대상 만족도 높은 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1~2학년 중심 돌봄교실 운영, 3학년 이상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였고, 2017년 '온종일 돌봄 체

²⁾ 이하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17개 시·도교육청. (2018). 2019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 잡이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동 자료집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수정·보완한 길라 잡이가 동 자료집보다 우선됨을 밝히고 있음.

계 구축'을 현 정부 국정 과제로 확정하고, 2018년 4월 '온종일 돌봄 정책' 발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이용 대상 및 돌봄 서비스

초등돌봄교실 설치 및 운영의 주된 목적은 학교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과 후·방학 중 돌봄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설치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나 학년에 따라 돌봄교실 종류를 다르게 하고 있다. '오후돌봄'은 초등 1~2학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은 초등 3학년 이상, '저녁돌봄'은 전 학년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의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저학년 중심의 오후돌봄을 점차적으로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고, 학부모 수요와 학교 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운영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은 오후돌봄교실,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유형이 있다. '오후돌봄'은 오후돌봄 전용·겸용 교실을 활용하여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학교 여건 및 수요에 따라 급식 제공 없이 오후 7시까지 연장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단일 학급 내 인원은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교실 공간의 크기, 학년당 학생 수, 퇴실 시간, 학생 발달 단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학급을 편성한다. 오후돌봄은 놀이 위주의 개인 활동과 단체 활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 활동은 돌봄전담사, 돌봄 봉사 인력 등의 지원·관리하에 숙제, 일기 쓰기, 독서, 글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뜻하며, 단체 활동은 외부 강사 및 교원에 의해 운영되는 다양한 예체능,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뜻한다. 특히 단체 활동 프로그램은 매일 1개 이상 또는 주 5회 이내 무상으로 운영하고, 학부모의 수익자 부담 돌봄 프로그램 수요가 있을 경우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전용·겸용교실에서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운영 인력은 교육 기부, 자원봉사, 학부모, 교원 등 학교 여건별로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며 가급적봉사 인력(예: 학부모 도우미)과 지원 인력(교원)의 협조 체계를 권장한다. 오후돌봄과 마찬가지로 단일 학급 내 인원은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오후돌봄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간식 및 급식과 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운영은 방과후학교 활동 시간과 연계하여 학생 입·퇴실 및 안전 관리와 같은 학생 관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에는 과제, 독서 등 개별 활동 수행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 등을 활용하여 틈새 프로그램(예: 전통 놀이) 운영도 가능하다.

'저녁돌봄'은 오후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돌봄 전용·겸용 교실에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한다. 이 역시 단일 학급 내 인원은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참여 인원이 5명이하인 경우에는 지역 돌봄 기관과의 연계 운영을 권장한다. 프로그램은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교육 방송 시청 등의 개인 활동과 학교 여건에 따라 단체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특히 저녁돌봄은 학부모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며(학부모미동반 귀가 시를 대비하여 대리자 사전 지정제 실시), 저녁돌봄에 대한별도의 시설 안전, 귀가 및 응급 상황 대책 등을 안전 관리 계획 수립에 포

함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에도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방학 중 돌봄교실을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한다.

3. 종사자 기준

초등돌봄교실 종사자는 교원의 경우 돌봄 업무와 방과후학교를 별도로 구분하여 업무 분장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돌봄 업무의 주된 인력은 돌봄전담사(오후/저녁돌봄 담당)인데, 이들은 돌봄교실 프로그램 관리와 학생 보호, 교실 관리, 관련 보고, 기타 돌봄교실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이다. 유·초·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시도 교육청 계획에 따라 채용하며, 학기 중에 방과후부터 학생 귀가 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 외에는 대학생, 학부모, 지역 인사, 교육 기부자 등의 자원봉사를 바탕으로 하는 돌봄 봉사인력과 돌봄교실의 단체 활동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단체 활동 지도 강사가 있다.

한편 돌봄교실 규모를 학급당 20명 내외로 한다는 지침은 있으나, 학급별 인원에 대한 정확한 수치 또는 돌봄 인력 대비 학생 수 비율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학급당 교원, 돌봄전담사 등을 각각 1명씩 배정한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는 학교별 학생 수 및 돌봄 수요 등 학교의 개별적·상황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서는 학생의 귀가 시간대별,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별, 학년 구성별 등 여러 상황별 교실 배정 방법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다.

제2절 지역사회 돌봄

지역사회 돌봄은 학교 돌봄과 달리 복수의 돌봄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형태이며, 초등학교와 소속 학생의 제한된 공간과 대상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내 아동의 돌봄을 포괄한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³⁾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아동복지법 제52조 8항). 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운동의 성격으로 생겨난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의 시초이다. 공부방으로 불리던 지역아동센터는 보편적 아동 복지의 추구및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 정책의 관점에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며 2004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아동 복지 전달 체계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법제화 이후 연평균 600개씩 증가하는 등 활발한 확대기를 경험하였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안전한 보호, 급식, 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상담·가족지원 등의 정서적 지원, 체험활동 및 공연 등의 문화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의 사전 예방적 기능과 사후적 연계를 담당한다.

³⁾ 이하 내용은 보건복지부. (2019a).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는 신고 없이 가능하며, 시설의 신고·설치·운영에 대한 세부적 요건들이 있다.

가. 이용 대상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서비스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회의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이 이용 대상 아동을 발굴·추천하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직권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돌봄 취약 아동'과 '일반 아동'으로 구성된다. '돌봄 취약 아동'은 선정 기준에 따른 소득 기준, 가구 특성 기준, 연령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을 뜻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를 뜻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의료급여 수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제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또는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 가구 등에 해당할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의 소득 기준 적합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표 3-1〉참조).

〈표 3-1〉 돌봄 취약 아동 선정 소득 기준

구분	내용
기준 ①	-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기준 ② (증명서 대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

구분	내용
1 -	110
	급여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자활 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또는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이서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아동이 등록 장애인인 경우에 한함)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조손 가족인 경우에 한함)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 (2019a).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p. 43.

가구 특성 기준은 소득 기준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의료급여 수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조손 가족 등 특정 가구에 속한 아동인 경우이다. 단,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이외의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족, 맞벌이 가정 등은 소득 기준에서 말하는(증명서로 대체 가능한) 여러 가구 형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표 3-2〉 돌봄 취약 아동 선정 가구 특성 기준

구분	내용
기준 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②	- 차상위 계층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외의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되는 사람의 아동 또는 발급되는 아동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차상위 자활 대상자)의 아동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 난치성 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손)자녀인 아동 또는 경감받는 아동 ⑥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받는사람의 (손)자녀인 아동 또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구분	내용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 ⑦ 「장애인연금법」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과 동거하는 (손)자녀인 아동 ⑧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아동 ⑨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 가족의 아동 ⑩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기준 ③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아동
기준 ④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기준 ⑤	- 조손 가족의 아동: 가구원 수 산정 기준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경우
기준 ⑥	- 한부모가족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이외에 가구 형태가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인 한부모가족
기준 ⑦	-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족의 아동: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기준 ⑧	- 맞벌이 가정의 아동

주: 가구원 수 산정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아동을 기준으로 2촌 이내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사람.

자료: 보건복지부. (2019a).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pp. 44-46.

연령 기준의 경우, 만 18세 미만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주된 대상이나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만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 만 18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역적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등도 연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일반 아동'은 연령 기준을 만족하는 아동을 뜻하며,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80% 이상은 돌봄 취약 아동, 일반 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하다. 단, 지역별 상황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일반 아동 등록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한편 '돌봄 취약 아동'에 포함되는 '돌봄 특례'는 일반 아동에 해당되나 보호자의 질병이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한 경우 등 특정 가구에 한해 시·군·구청장이 돌봄 취약 아동으로 선정하는 것

을 뜻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돌봄 취약 아동의 경우 시간적 측면에서 돌봄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 맞벌이 가정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소득 및 가구 특성 기준, 돌봄 특례 기준 등을 볼 때 경제적으로 취약 또는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을 우선시함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연령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일반 아동과의 관계에서 80 대 20이라는 이용 아동 등록 조건은 이를 더 명확하게 한다. 실제 지침(사업 안내)에서도 동시 입소 신청 시 가구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은 연령 기준만 만족하는 아동보다 이용 순위를 우선시하거나 결원 발생 시 돌봄 취약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시·군·구청장은 돌봄 취약 아동이 이용하는 데어려움이 없도록 지역별 수요 파악 등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나. 돌봄 서비스

지역아동센터는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의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 중에는 오후 2~7시, 방학 중에는 낮 12시~오후 5시를 필수 운영 시간으로 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는 기본 프로그램과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본 프로그램은 생활·안전의 보호 영역, 학습·특기 적성·성장과 권리의 교육 영역, 체험·참여의 문화 영역, 상담·가족 지원의 정서 지원 영역, 홍보·연계의 지역사회 영역으로 나뉘며, 특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및 주요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뜻한다. 〈표 3-3〉은기본 프로그램을 정리한 것으로 각 영역에 맞는 세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돌봄의 시간적 공백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 문화, 정서 지원 등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을 종료한 아동에 대해 사후 관리 차원에서 이용 종료 1개월 이내에 가정 또는 타 시설 등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있는지 확인한 후 최종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이용 대상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등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를 달리한다면 연계 차원에서 중복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지역아동센터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운영위원회와 보호자 사전 동 의를 거쳐 일반 아동에 한해 월 5만 원 내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표 3-3〉 지역아동센터 기본 프로그램

영역 (대분류)	세부 영역 (중분류)	세부 프로그램 (소분류)	프로그램 예시 (시설별 선택 운영)
	ol =1	일상생활 관리	센터 생활 적응 지도, 일상생활 지도, 일상 생활 예절 교육, 부적응 아동 지도 등
	생활	위생·건강 관리	위생 지도, 건강 지도 등
보호		급식 지도	급식 지도, 식사 예절 교육 등
포오		생활 안전 지도	저녁돌봄 등
	아전	안전 귀가 지도	안전 귀가 지도, 생활 안전 지도 등
	ਹੁੰਦਾ	5대 안전 의무 교육	교통안전, 실종·유괴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재난 대비, 성폭력 예방 등
		숙제 지도	숙제 지도, 학교생활 관리 등
	학습	교과 학습 지도	수준별 학습 지도, 온라인 교육, 학습 부진아 특별 지도 등
교육	특기 적성	예체능 활동	미술, 음악, 체육 지도 등
Tr.44	국가 작성	적성 교육	진로 지도, 적성 교육(독서, 요리, 과학 등) 등
		인성·사회성 교육	인성 교육, 사회성 교육 등
	성장과 권리	자치 회의 및 동아리 활동	자치 회의, 동아리 활동 등

영역 (대분류)	세부 영역 (중분류)	세부 프로그램 (소분류)	프로그램 예시 (시설별 선택 운영)
	레싱 하드	관람·견학	공연 및 연극 관람, 박물관 등 견학 등
문화	체험 활동	캠프·여행	체험 활동, 캠프 및 여행 등
도외	참여 활동	공연	공연 등
	심어 될당	행사(문화·체육 등)	전시회, 체육 대회 등
		연고자 상담	부모 및 가족 상담, 연고자 상담 등
정서 지원 -	상담	아동 상담	아동 상담 등
		정서 지원 프로그램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
ME	가족 지워	보호자 교육	보호자 교육 등
기숙 시원		행사·모임	부모 소모임, 가정 방문 등
	홍보	기관 홍보	기관 홍보 등
지역사회 연계		인적 연계	자원봉사 활동, 인적 결연 후원, 후원자 관리 등
	연계	기관 연계	지역 조사와 탐방, 전문 기관 연계, 복지 단체 연계 등

자료: 보건복지부. (2019a).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pp. 54-55.

다. 종사자 기준

지역아동센터는「아동복지법 시행령」제52조에 종사자 배치 기준과 자격 기준을 두고 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아동 10명 이 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용 아동의 규모에 따라 생활복지사, 영양사 등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정신보건 전문요원 자격, 보육교사 1급,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 자격 등 여러 분야 중 특정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학대 아동 보호 사업 관련 기관 종사자 제외), 생활복지사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 자격, 보육교사 1급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면 근로가 가능하다.

/П	3-1/	지역아동센터	조니다	HH구I	기즈
1	3-47	시작이중엔디	\rightarrow VIVI		/ I.T

구분	시설장	생활복지사	영양사
아동 30명 이상	1명	2명 (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1명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
아동 10명 미만	1명	_	_

- 주: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11, 부칙 제4조에 따라 아동 10인 미만 시설 배치 기준이 삭제되면서 기존 시설은 인정되나 2012. 8. 5.부터 10인 미만 시설은 신규 설치 신고를 할 수 없음.
 - 2) 기존(2012. 8. 4. 이전) 10인 미만 시설은 10인 이상으로 변경 가능하나 기존 시설(10인 이상) 에서 10인 미만 시설로 변경 불가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9a).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p. 24.

〈표 3-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 기준

구분	내용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학대 아동 보호 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 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생활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 주: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11, 부칙 제4조에 따라 아동 10인 미만 시설 배치 기준이 삭제되면서 기존 시설은 인정되나 2012. 8. 5.부터 10인 미만 시설은 신규 설치 신고를 할 수 없음.
 - 2) 기존(2012. 8. 4. 이전) 10인 미만 시설은 10인 이상으로 변경 가능하나 기존 시설(10인 이상) 에서 10인 미만 시설로 변경 불가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9a).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p. 24.

한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전문성 강화 및 직무 능력 향상 도모 차원 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종사자 교육은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크게 기존 종사자 교육과 신규 종사자 교육으로 구분된 다. 기존 종사자 교육은 최근 3년 이내 지역아동센터 경력 1년 이상인 자 에 대해 집합 교육(5시간), 선택 교육(20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총 25 시간 중 필수에 해당하는 5시간에는 운영 지침, 보조금 사용 기준, 아동 학대 예방. 아동 안전. 아동 권리 등이 포함되며(재무 회계 및 사회복지시 설 정보 시스템 교육은 반드시 집합 교육에 포함), 20시간의 선택 과정은 프로그램 평가, 아동 발달과 행동 지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 슈퍼바이저 교육 등을 경력 기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신규 종사자 교육 역시 총 2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3년 이내 지역아동센터 경력 1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13시간), 온라인 교육(12시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집합 교육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아동 학대 예방, 아동 안전, 아동 지원 발달 및 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온라 인 교육에서는 운영 실무, 아동 권리 등을 교육한다. 신규 시설장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개소) 집합 교육 15시간, 온라인 교육 45시간, 운영 컨 설팅 35시간의 총 95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등 교육이 매우 강화되었다.

2. 다함께돌봄센터4)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돌봄 인프라로 2017년 7월 10곳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18년 4월 관계 부처 합동 온종일 돌봄 정책 발표 이

⁴⁾ 이하는 보건복지부. (2019b). 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17곳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법 개정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을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직접 적용(2019. 4. 16. 시행)하는 등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그 밖에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사회보장기본법」제5~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마을 공동체와의 연계 활동을 강조하는 사업으로 기존 지역아동센터는 센터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새롭게 시작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내의마을이라는 공간에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장이 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일시·긴급 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발굴·제공에 유리하다.

가. 이용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아동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표 3-6〉참조). 이용 자격에 대한 조건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구 아동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다함께돌봄 서비스 신청서' 내의 가정 환경 기입란을 통해 맞벌이여부, 근로 시간 등을 고려해 입소 우선순위에 활용하고 있다. 5) 단 본 사업은 차상위 계층 중심의 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 아동의 소득

⁵⁾ 가정 환경 기입란: 맞벌이(부부 모두 전일제), 맞벌이(전일제+시간제),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아동, 기타로 구분하고 있음.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보호자는 이용을 희망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 후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며, 센터는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하여 자체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 결정을 통보한다.

〈표 3-6〉 다함께돌봄센터 입소 우선순위 예시

입소 우선순위(예시)

-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혹은 모가 일하는 경우
-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 초등학교 저학년
- 부모의 근로 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 (2019b). 2019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p. 25.

나. 돌봄 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돌봄은 상시 돌봄과 일시 돌봄으로 구분된다. 상시 돌봄은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종일 돌봄, 시간제 돌봄)돌봄을 의미하며, 일시 돌봄은 학교 휴업, 이용자의 긴급 사유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을 의미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학기 중에는 오후 2~7시, 방학(단기 방학 포함)에는 오전 9시~오후 6시를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으로 두고 있다.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은 포함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종일 돌봄은 매일 센터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시간제 돌봄은 정기적인 단시간 혹은 요일별 이용에 해당된다.

돌봄 프로그램은 기본 프로그램, 공통 프로그램, 학습 활동(특기 적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본 프로그램은 출결 및 급·간식에 해당되고, 공통 프로그램은 숙제 지도 및 신체 활동 등, 학습 활동(특기 적성) 프로 그램은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 특기 적성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 는 자율 참여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세부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은 저/ 고학년, 상시/일시 돌봄 대상자, 학기/방학, 놀이/돌봄/학습/놀이+학습 등의 형태로 다양하다.

〈표 3-7〉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

구분	활동 분야	활동 내용	서비스 제공 주체	
一一正	글 중 군	글 등 내 등 - 출석과 결석 관련 사항 확인	시비프 세층 구세	
기본 프로그램	출결 확인	- 물식과 설식 전년 사영 확인 - 입출입이 잦은 학생에 대한 출결 유의	- 돌봄선생님 중심으로 운영 하되. 센터장 및 자워봉사	
	아동 지원	- 일상생활 교육(위생 청결 교육, 화재 및 안전 교육) - 아동 및 학부모 상담	인력 지원	
	급·간식 지원	- 급식 지원(방학) - 간식 지원	- 급·간식 업체 지정 또는 센터 에서 조리 등 센터별로 상 황을 고려하여 운영	
	숙제 지도 - 숙제 지도(알림장 확인, 숙· 확인)	- 숙제 지도(알림장 확인, 숙제 확인)		
- 독서 환동 프로그램 운영 공통 프로그램 - 신체 놀이(줄넘기, 자전 배드민턴, 축구 등)	독서 지도	- 독서 지도(읽기, 말하기, 쓰기 등) - 독서 활동 프로그램 운영	- 돌봄선생님 중심으로 운영 하되, 센터장 및 자원봉사 이력 지워	
	- 또래 놀이(놀이터, 민속놀이,	- 대학생 자원봉사, 퇴직 교사, 학부모 재능 기부 등으로 운영 가능		
	휴식	- 자유 활동 - 휴식 취하기		
학습 활동 (특별 활동)	기초 외국어	- 기초 외국어 지도(읽기, 말하기, 쓰기 등) - 외국어 활동 프로그램 운영	- 분야별 전문 소양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센터장과 돌봄선생님 지원	
	예체능	예체능 활동 지도(음악, 미술, 체육 등)예체능 활동 프로그램 운영	(단, 특별 활동 내용은 「공 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구분	활동 분야	활동 내용	서비스 제공 주체
	과학	과학 지도(드론, 로봇, 과학 상자 등)과학 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	
	체험 활동	- 문화 예술 체험(영화, 난타, 박물관, 시장 등) - 문화 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 (요리, 화훼 등)	에 부합해야 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9b). 2019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p. 30.

한편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수납 한도액이며, 수납 한도 내에서 지역 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에 따라 수납액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용료는 프로그램 활동비, 현장 학습비(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등), 상해보험 등 관련 제반 비용으로 사용된다.

다. 종사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는 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센터장과 아동 돌봄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돌봄선생님으로 구성되며, 종사자별 자격 기준은 〈표 3-8〉과 같다. 특징적인 점은 돌봄선생님 자격 요건 중 해당 지역 내 에서 일정 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한 사람에 한해 향후 관련 자 격증 취득을 전제로 임용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종사자 배치는 센터장 1인과 돌봄선생님 1인을 센터 내 필수 인력으로 하되, 이용 아동 수와 운영 시간 등을 고려하여 돌봄선생님 배치를 탄력 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예: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2인(4시간 기준) 활

⁶⁾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 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가 가능함.

용]. 동 시간대 상시 돌봄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1명의 돌봄선생님을 배 치하여야 하며,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동 안은 가급적 2명이 상주하여야 한다(센터장, 돌봄선생님, 자원봉사자 등).

〈표 3-8〉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자격 기준

구분	내용
센터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 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유아교육법」 및「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를 말함*「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말함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돌봄선생님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단, 개정「아동복지법」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 4. 16.) 3년 후까지 상기 4가지 중 1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인정 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등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 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9b). 2019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pp. 35-36.

한편 2019년부터는 전문 역량 강화 및 서비스 질 관리 도모 차원에서 전국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채용 인력을 대상으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및 내용은 필수 교육(6시간) + 선택 교육(4시간)으로 운영되며, 직무 교육 커리큘럼은 아동 발달, 부모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여성가족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통해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공급 책임을 가지고 있다. 방과 후 종합 지원 계획에는 방과 후 활동의 수요 및 현황 조사, 방과후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방과후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확보, 전문 인력의 선발 및 배치, 방과후 활동 종합 지원 사업의 운영 및평가,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학교와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학습 지원, 체험 활동, 급식 및 건강 관리, 상담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도희, 연규철, 2009). 이러한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있는 역량을 키우며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방과 후 비행 노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 시범 사업으로 46곳을 운영하였으며 2006년 전국 지역별 운영을 도입하면서 100곳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늘려 왔으며, 2009년에는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 중단 제

⁷⁾ 이하는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9).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테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함.

도를 도입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260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온종일 돌봄 체계에서 마을 돌봄을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가. 이용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초등 4학년~중등 3학년을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상 학년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운영 기관이 대상 교급 및 인원수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지자체를 통해 여성가족부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해야 하나 동일 교급 내학년 변경은 지자체에만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지원 우선순위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9% 미만),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 가정·2자녀이상 가정·맞벌이 가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이며 기타 지원 대상은 학교장(교장 및 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 내용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이다. 이들의 경우 기본 지원형·농어촌형에 해당되고 매년 신규 및 지속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의하여 운영하며, 심의 관련 증빙 서류는 신규 참여자만 제출하고, 지속 참여자는 요건 변동 시에만 제출하면 된다. 지속 참여 청소년의 증빙 서류는 신규 참여 시 제출한 서류를 사업 참여 기간 동안 반드시 보관해야한다. 이와 같은 일반적 지원 유형 이외에 장애 및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유형 전형이 있다. 장애 청소년 중 학교장 및 특수교사, 전문가의 추천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 청소년이다. 여기에는 장애 판정은 받지 않았으나 학교 특수교육 대상자(교육지원청에서 발급)인 경우도 포함된다. 다문화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 및 다문화 관련 기관·전문가의 추천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이 해당된

다. 참가자는 운영 기관별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하며 공개 모집, 추천,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외 계층, 저소득층 등 낙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문구는 공식 문서에 사용되 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집 청소년 대상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 록 하고 있다.

나. 돌봄 서비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기본적으로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의 시간 대에 지역사회의 시설 및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1일 4시수, 주 5~6일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 여건에 따라 연간 241일 범위 안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 시수는 주중 활동과 주말 활동으로 구분되며 주중 활동은 1주 20시수 이상 되어야 하며 1시수는 휴식을 포함하여 60분이며 급식은 30분~1시간 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주말 활동은 월 1회 5시수 이상 되어야 한다.

연간 총 16일 이내에서 방학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 1회 1~3일간 집단 캠프를 진행한다. 프로그램 편성 기준은 전문 체험 활동 과정, 학습 지원 활동(보충 학습, 교과 학습 등), 자기 개발 활동 과정, 특별 지원 과정, 생활 지원 과정(급식, 귀가 지도, 면담 등) 5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1일 최소 4시수 이상 편성하되 기관 상황에 따라 자율 편성할 수 있으며, 학기 초청소년(학부모) 수요 조사를 통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수요 조사를 의무 실시해야 한다. 또한 민주 시민 역량, 진로 개발 역량, 제4차 산업 혁명 대비 창의 융합형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월 9시수 이상 의무 편성해야 한다. 〈표 3-9〉는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편성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표 3-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편성 예시

구분		편성 시수		
주중 (20시수 이상)		 프로그램은 주중 운영 시수 내 자율 편성하되, 월 9시수 범위 내 필수 편성 운영 민주 시민 역량·진로 개발 역량·제4차 산업 혁명 대비 창의 융합형 문제 해결 역량 강화 (창의 융합 역량 강화는 월 4시수 필수 편성) ★ 단, 민주 시민 역량, 진로 개발 역량, 창의 융합형 문제 해결 역량 월 9시수 필수 편성은 주말 체험 활동, 주말 자기 개발 활동을 활용할수 있으나 전체 시수(월 9시수)를 주말 프로그램으로 편성 불가・자기 개발 활동 주중 2시수 이상(의무) 생활 지원 과정 5시수 이상(급식, 상담, 건강 관리 등) 		
주말 (토)	월 1회 (주말 체험)	 주말 체험 활동 4시수 민주 시민 역량·진로 개발 역량·창의 융합형 문제 해결 역량 강화 편성 가능 생활 지원 과정 1시수(급식, 상담, 건강 관리 등) 		
	월 1회 (자기 개발)	• 자기 개발 활동 과정 2시수 이상(선택)		

자료: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9).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 뉴얼.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p. 25.

다. 종사자 기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인력은 운영 전담 인력과 강사 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운영 전담 인력은 팀장과 담임으로 구분된다. 운영 인력과 관련한 복무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면서 세부적으로 각 운영 기관의 복무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표 3-10〉은 운영 인력의 기준 및 자격을 나타낸다. 팀장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2급 소지자, 3급 소지자의경우 3급 소지 후 청소년 육성 분야 및 방과 후 지도 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담임은 1개 반에 1명씩 배치되며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팀장이나 담임은 직무 연수 및 교육 등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기본 직무 연수 및 전문 역량 강화 직무 연수는 연 1

회 이상 운영해야 하고 자원봉사자와 전문 강사에 대해서도 직무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온라인 강의도 가능하다.

장애형 및 다문화형 운영 전담 인력 채용 시 사회복지사, 특수 자격 소 지자, 다문화 관련 기관 및 사업 종사 경력자 채용이 가능하다.

〈표 3-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자격 기준

구분	기준 및 자격			
팀장	• 1명 전담 배치 (주요 역할) 방과후아카데미 총괄, 운영 방안 및 프로그램 기획, 수요 조사 및 만족도 조사 분석, 지역 맞춤형 홍보 계획 수립, 모집률 제고 방안 마련, 안전 관리 총괄, 일정 관리, 운영 지원 -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 소지 후 청소년 육성 분야 및 방과 후 지도 분야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 시설의 기존 종사자를 배제하고 공개 채용이 원칙이며, 운영 기관의 기존 인력을 팀장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겸직(중복 업무)을 금지하고 팀장 업무만 전담하도록 함 * 기존 종사자(담임 등)를 팀장으로 바로 배치 또는 특별 채용 지양, 공개 채용 절차를 경유하여 채용의 공정성 확보 * 운영 책임자 교체 시에는 사전 평가 실시 반영, 업무의 지속성 감안 * 신규 채용 시 청소년지도사가 없을 경우(공모 후 결과에 따름)에는 재 공고 절차를 통해 청소년 육성 분야 및 방과 후 지도 분야(지역아동센터, 방과후보육, 방과후교실 등) 3년 이상 전문 인력 선발 * 팀장은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해야 하는 역량이 요구되므로, 실무 경력이 있는 경력자 위주로 채용하도록 함(가급적 경력자 위주로 채용)			
담임	1개 반 1명 (주요 역할) 운영 방안 및 프로그램 기획 지원, ①보충 학습 지원 및 자기 개발 활동, ②상담 및 생활 기록·관리, ③문자메시지·급식 지원 ④문서 작성 및 운영 지원 기운영: 현행 유지 '18년 신규 채용 또는 교체 시: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 소지자 '시설의 기존 종사자를 배제하고 공개 채용이 원칙이며, 운영 기관의 기존 인력을 담임으로 재배치할 경우에는 겸직(중복 업무)을 금지하고 담임 업무만 전담하도록 함 '신규 채용 시 청소년지도사가 없을 경우(공모 후 결과에 따름)에는 재 공고 절차를 통해 지역 내에서 청소년 육성 분야 및 방과 후 지도 분야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보육, 방과후교실 등)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관련 분야 전공자(청소년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로 선발			

자료: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9).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 뉴얼.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p. 29.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현재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기반으로 제공되는 각 돌봄 서비스의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시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는 오후돌봄, 방과후 연계형 돌봄, 저녁돌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과 후 오후 10시까지 저녁돌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서비스만으로도 부모의 근로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서비스가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급과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가지 서비스는 이용 대상과 운영 방법에서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 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취약계층 아동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과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달리 일시 돌봄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각 서비스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기준 및 서비스 내용에 비추어볼 때 각 서비스는 매우 다른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 대상의 돌봄 서비스 제공 기능은 없다.

학교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공급 내용을 살펴보면, 보편적 서비 스로의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용 대상자에 대한 제 약으로 원하는 아동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은 현재로서 한계가 있다. 초등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을 우선하여 제공되고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소득,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한 돌봄 취약 아동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에도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맞벌이, 다자녀 가구 중심(소득 수준 무관)의 입소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점에서 보편적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정부가 초등돌봄교실과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용 대상자의자격 제한을 특별히 두지 않고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체계는 대상자에 따라 차별적 돌봄 서비스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가 도입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자선별 기능은 긍정적 의미에서는 부정적 의미에서는 매우 강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의 주요 요소는 모든 대상을 포괄하는 기본적 서비스로서의 기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대상을 계층화하는 공급 구조를 보편적 서비스 공급 구조로 전환하고 보편적 공급 구조 내에서 이용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서비스의 기능을 가질 때 모든 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계층에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송혜림, 2012).

현재의 서비스 제공 구조에서는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에 대한 공백이 우려된다. 2011년 온종일 돌봄교실이 도입될 당시 오전 6시 30분부터 아침돌봄이 제공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아침돌봄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오후돌봄 이후의 돌봄 공백은 오롯이 저녁돌봄을 이용하거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타 기관 서비스와의 연계 문제와 서비스 연계 이

용에 필요한 이동의 문제 등이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이마저도 각 서비스의 이용 자격 요건이 달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대해 제4장에서 이용 실태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각 돌봄 서비스 내용 및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응급 및 일시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가 가장 짧은 다함께 돌봄센터만이 일시 돌봄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초등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응급 및 일시 돌봄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이용 시간대를 달리할 경우 서비스 중복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서비스이용을 위한 이동 등의 문제로 서비스 간에 적절한 연계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등<u>돌</u>봄 서비스 공급 체계 전 장 분석

제1절 중앙과 지역의 관리 체계 제2절 중앙과 지역 단위 관리 체계의 쟁점 제3절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현황 제4절 소결

초등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 분석

제1절 중앙과 지역의 관리 체계

1.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기본적으로 단위 학교별로 사업이 추진된다. 지역 단위에서 상위 관리 주체는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다. 시도 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시설·대상·운영 시간 확대계획에서도 교육청별 단계적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 학교 단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목적·방침·운영 방법·인력 채용등 세부 운영 및 전반적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 연간 운영 계획안을 작성·심의하며, 여기에는 돌봄 인력 선정, 돌봄교실 운영 유형(오후/저녁/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별 프로그램 내용, 시간, 지역사회 연계 및 민간서비스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7개 시도 교육청, 2018).

초등돌봄교실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방과후학교 사업비 내에 편성되어 있다. 돌봄교실 예산의 편성·운영은 크게돌봄전담사 인건비(급여, 출장, 시간 외 근무 수당 등), 운영비(물품, 교구, 프로그램, 간식 및 급식, 안전, 수용비 등), 시설비(돌봄교실 구축 및 환경 개선 비용)인데, 상세 사항은 시도 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비, 간식 및 급식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편성·집행이 가능하다.

재원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데 배부 목적에 따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금은 국세인 내국 세의 20.27%의 97%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며 2018년도 기준으로 총 48조 1569억 원 규모이다(교육부, 2018b). 특별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 분야의 국가 시책 사업, 지역 현안 사업, 재해 대책 및 복구 등특별한 재정 수요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세 내국세의 20.27%의 3%를 재원으로 하며 2018년도 기준으로 총 1조 3838억 원 규모이다(교육부, 2018b).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시도 교육 청에 교부된 예산은 2018년 기준으로 3011억 원이다. 이 예산은 오후돌 봄교실 운영비 2834억 원, 저녁돌봄교실 운영비 55억 원, 돌봄교실 시설 비 122억 원 등의 소요 예산이 반영된 것이다. 그 밖에 특별교부금이 편 성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지원으로 85억 5000 만 원이 책정되었다(지방교육재정알리미, 2019. 10. 10. 검색).

초등돌봄교실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 정교부금이지만, 수익자 부담금도 존재한다. 이는 학부모들이 보다 질 높 은 돌봄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오후 또는 저녁 돌봄을 위해 간식을 제공해 야 할 경우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수익자 부담 경비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위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한국 교육개발원, 17개 시도 교육청, 2018).

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이 교육 기관(유, 초·중·고등학교 등) 및 교육 행정 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을 의미함.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웹사이트]. (2019. 10. 10.). URL: http://www.eduinfo.go.kr/portal/main.do)

2.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중앙정부 부처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시도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시·군·구청, 지역아동센터 의 추진 체계를 가진다(〈표 4-1〉참조).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법령·제도 개선부터 국고 보조금 지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추진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사업의 추진·관리·평가 등 사업 전체의 총괄을 담당하고, 각 시도청은 관할 지역의 사업 계획 검토·조정 및 국고 보조금 예산 집행, 사업 지도·점검·평가 등을, 각 시·군·구청은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관리 및 예산 지원, 이용 아동 이용·종결 관리, 아동복지교사 예산 집행 및 운영 관리 등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관리·운영의 역할을 수행한다(보건복지부, 2019a).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과 시도지원단은 센터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종사자 교육, 컨설팅, 아동복지교사 운영 지원, 홍보 및 민간 자원 개발·연계 등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하는데, 중앙지원단은 시도지원단 사업 조정·평가, 연구 개발 및 시설 평가 사업 지원, 중앙 부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 업무 지원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의 기획 및 관리의 역할에보다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시도지원단은 종사자 교육, 시도 특성화 사업개발, 시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 업무 지원 등 관할 지역 내 서비스제공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의 업무를 공통적으로하는데, 이는 각 부처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와 활용을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1〉 지역아동센터 추진 체계

추진 주체	기능 및 역할
보건복지부	-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법령·제도 개선 등 사업 총괄 - 국고 보조금 지원, 아동복지교사 예산 지원·사업 총괄 및 평가 - 사업 운영 지도·점검, 평가 총괄 및 표준화 모델 개발·보급 - 시설 정보 시스템 개편 및 관리 총괄 -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추진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 종사자 교육 기획,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 시설 운영 지원 - 시도지원단 사업 조정·평가 및 아동복지교사 운영 지원 - 시설 정보 시스템 관리 지원 및 중앙지원단 전산 관리 시스템 구축·관리 - 연구 개발 및 시설 평가 사업 지원 - 홍보, 민간 자원 개발·연계 지원 등 유관 기관 네트워크 구축 - 중앙 부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추진 업무 지원 등
시도청	- 사업 계획의 검토·조정 및 국고 보조금 예산 집행 - 관할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 아동복지교사 시도별 사업 총괄 및 지도·점검 - 시도 평가 사업 총괄(시도 평가운영단 구성·운영 및 지원) - 시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추진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 시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컨설팅 등 시설 운영 지원 - 시설 정보 시스템 관리·평가 사업·아동복지교사 교육 등 지원 - 시도 특성화 사업 개발 - 홍보, 정보 관리, 민간 자원 개발·연계 지원 등으로 네트워크 구축 - 시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추진 업무 지원 등
시·군·구청	-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관리, 예산 지원 등 운영 -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이용·종결 관리 - 아동복지교사 예산 집행, 운영 관리(채용·계약·배정·노무, DB 관리 등) -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후원금 내역 관리 - 시·군·구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추진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추진 기관 및 지자체 협조 등

자료: 보건복지부. (2019a).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p. 6.

지역아동센터는 국고 보조금 지원 시설에 해당되며 현재 기준으로 초기 24개월은 자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향후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사업 안내를 준수해야 한다.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 시설의 경우 심화 평가 결과 및 지자체 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선정하고 신규 지원은 24개월 운영 신규 시설 중 진입 평가를 반영하여 선정한다(보건복지부, 2019a). 지원 내역은 기본 운영비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

원, 특성별 운영비(지자체 선정)로 구성되는데, 기본 운영비는 신고 정원, 지역별 특성 및 법정 종사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평균 이용아동 수(현원)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교부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 2019a, 〈표 4-2〉참조〉). 특성별 운영비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수준에 따른 추가 지원으로 시설의 운영 역량을 향상시키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보건복지부, 2019a). 여기에는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와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이 있는데, 장애·다문화·북한이탈주민 아동과 같은 특수 아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저녁돌봄(오후 8시 초과 운영)·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연장 운영하는 특수 목적형 센터는 월 60만 원(±20만 원 조정 가능)을 지원하며, 이용 아동 중 토요 돌봄 서비스 수요가 있거나 토요일 운영 시설 중 운영 역량 및 서비스 제공 수준이 높은 시설의 경우 월 30만 원(±10만 원 조정 가능)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a).

〈표 4-2〉 기본 운영비 예산 지원

정원 구분		법정 종사자 수 (시설장, 생활복지사)	월 기준액
10~19인 이하	동 지역	213	4,580천 원
10~19한 이야	읍·면 지역	2명	4,730천 원
202001 01=1	동 지역	213	4,840천 원
20~29인 이하	읍·면 지역	2명	4,990천 원
30인	이상	3명	6,700천 원

주: 10인 미만 시설은 2,760천 원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

자료: 보건복지부. (2019a).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p. 131.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재원은 정부 지원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기타 민간 후원금이나 센터 운영자의 자부담 등 재원이 다양하다. 센터 1곳당 평균 연간 총수입은 9928만 원 내외이며 수입 항목 가운데 정부 보조금의 기본 운영비 수입이 6236만 원으로 가장 많고 자부담인법인 전입금이 1192만 원이다. 그 밖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 기업체, 사회복지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공공 기관, 자체 조달 등 통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c).

〈표 4-3〉 지역아동센터 수입 구조(2018년 말 기준)

(단위: 개, 원)

구분			센터 수	센터당 평균 연간 수입
총수입(급식비 제외)		4,132	99,279,438	
	정부	기본 운영비	4,042	62,362,893
	보조금	추가 지원금	3,573	4,887,081
	지자체	별도 지원금	3,541	9,784,681
	기	타 지원금	2,645	4,479,405
	공동도	그금회 지원금	2,449	9,481,559
	기입	체 지원금	1,452	4,829,241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		2,315	6,631,126
	공공 기관 지원금		845	3,470,268
총수입	개	인 후원금	3,509	7,165,096
내역	자부담	법인 전입금	518	11,923,772
		자체 조달금	360	6,044,510
	잡수입		2,830	953,281
		차입금	463	2,837,673
		이월 후원금	2,205	2,611,809
	이월금	이월 자부담	582	1,236,956
		이월 보조금	267	1,143,322
	그 외	수익자 부담	86	2,740,751
	수입	기타	589	2,136,190

자료: 보건복지부. (2019c). 2018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p. 98.

지역아동센터 운영 재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 운영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50% 대 50%의 비율(서울 30% 대 70%)로 분담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 편성 기준에서는 지역아동센터 1곳당 운영비 529만원, 그 밖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1인당 117만원 등을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2019년 기준). 기타 환경 개선비,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지역아동센터 중앙 및 시도 지원단 운영, 지역아동센터 평가 및평가단운영등에 대한 예산도함께 반영되어있다. 지원되는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운영비국고 지원액은센터운영에 필요한인건비,운영관리비,시설비,프로그램비등으로 사용되는데,인건비와운영관리비,시설비를합한금액이기본운영비의95%를초과할수없으며프로그램비는기본운영비의5%이상을반드시사용하도록하고있다(보건복지부, 2019a)

3.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은 지역아동센터와 다르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적 주체가 된다. 지자체가 주체이기 때문에 직 영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보건복지 부, 2019b).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시도청, 시·군·구청, 다함께돌봄센터의 추진 체계를 갖는다. 앞서 살펴본지역아동센터의 추진 체계와 유사한 형태이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업지원단이 중앙과 시도로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이는 아직 사

업 확대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 수립,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제도 개선부터 국고 보조금 지원, 부처 간 사업 연계 및 조정, 평가 및 컨설팅, 현장 지도·점검 등 사업 관리 총괄을 담당하고, 각 시도청은 관할 지역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시·군·구 사업 지도·점검·국고 보조금 예산 집행 등을, 각 시·군·구청은 시·군·구 사업 계획 수립 및 센터 설치·운영, 예산 집행 및 지도·점검 등 센터 운영 관리를 담당한다(보건복지부, 2019b).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은 종사자 교육 등 시설 운영 지원, 전산 시스템 구축·관리, 홍보 및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며, 지역아동센터와 마찬가지로 각 추진 주체는 여러 부처 돌봄 서비스의 연계·조정을 수행한다(보건복지부, 2019b).

〈표 4-4〉다함께돌봄센터 추진 체계

추진 주체	기능 및 역할
보건복지부	- 기본계획 수립,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제도 개선 - 평가 및 컨설팅, 현장 지도·점검 등 사업 관리 총괄 - 국고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자원 연계를 위한 부처 간 연계 및 조정 등
다함께돌봄 사업지원단	- 평가 및 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 시설 운영 지원 - 다함께돌봄 사업 전산 시스템 구축·관리 - 다함께돌봄 사업 홍보 및 연구·조사 등
시도	- 시도별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시·군·구 사업 지도·점검 및 국고 보조금 예산 집행 - 광역 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 서비스의 연계·조정 등
시·군·구	- 시·군·구 사업 계획 수립 및 센터 설치·운영 - 예산 집행 및 지도·점검 등 센터 운영 관리 - 기초 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 서비스의 연계·조정 등
다함께돌봄센터	-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방학 중 돌봄 서비스 제공 - 마을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 서비스의 연계·조정 등

자료: 보건복지부. (2019b). 2019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p. 10.

[그림 4-1]은 다함께돌봄 사업 수행 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지역 자원 활용, 각종 지원 기구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특징적이며 이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 부처별 돌봄 사업들 간의 연계·조정과 관련된 공통된 수행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돌봄센터 운영위원회(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해당 위원(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시설 운영 계획의 수립·평가,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후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9b).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지원기구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사업지원] 광역들봄협의회 시·도 시 · 도교육청, 시 · 도, [관리 및 운영지원] 기초돌봄협의회 대표단 등 기초등복현의회 보건복지부 교육지원청, 시·군·구, [관리 및 운영지원] 지역자원 돌봄제공기관 등 공공자원, 마을들봄협의회 민간자원, 학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자위봉사자 [돌봄서비스 제공]

[그림 4-1] 다함께돌봄 사업 수행 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2019b). 2019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p. 11.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 마찬가지로 국고 보조금 형태의 예산이 지원된다. 지원 내역에는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가 있는데, 설치비와 인건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단, 서울은 국비 30%, 지방비 70%), 기자재비는 국비 100%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9b). 설치비는 시설리모델링비 및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부대 경비로 곳당 최대 5000만 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되며, 기자재비는 사무기기, 가전제품, 학습 기자재, 안전 용품 등 시설 운영 필수 비치 기자재·장비 구입비로 곳당 최대 2000만 원(국비 전액)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9b). 인건비는 센터장 1인, 시간제 돌봄선생님(4시간) 2인의 인건비(월 급여,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퇴직 적립금)로 최대 5000만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하되 단, 인건비는 지역 여건 및 종사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 등을 확보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시간제 돌봄선생님(시간) 2인 인건비의 경우 예산 범위 내 전일제 1인 또는 시간제 종사자 채용 및 집행이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9b).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재원을 확보하고 민간단체의 기부금을 받도록 할 수 있게 한 점에서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간에 유사성이 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운영 주체가 민간 법인이나 일반 단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의 활동을 정부가지원하는 형태로 예산이 운영되고 있으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자체에서 직접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재원 운영 시에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는 후원금을 통한 운영 역시 가능한데, 다만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법인 운영비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후원금 지출 금액대비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장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9b). 그리고 센터장은 후원금을 투

명하게 관리하고 후원금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후원금의 수입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b).

다함께돌봄센터 소요 예산은 2018년 9억 원에서 2019년 106억 원으로 증액되었다(보건복지부, 2019d). 국고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진행된다. 시도지사는 시·군·구가 제출한 당해 연도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시·군·구 사업 계획을 포함한 당해 연도 사업 계획서 및 예산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출받은 사업 계획서와 예산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b). 시도 또는 시·군·구는 최소한 연 2회 이상 센터에 예산을 교부해야 하며, 국고 보조금으로 교부된 금액은 해당 회계 연도에 집행을 마쳐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 국고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금액은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추진 현황과 보건복지부의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전년도 말 확정 통보한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표 4-5〉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재정 지원 및 운영 비교

구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근거	- 「아동복지법」제59조 및 시행령 제54조 - 「아동복지법」제52조, 제59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아동복지법」제44조
재정 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서울: 국비 30%, 지방비 70%) ※ 신고 정원, 지역별 특성 및 법정 종 사자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서울: 국비 30%, 지방비 70%) ※ 기자재비는 국비 100%

구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국고 보조금 교부 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3조 준수 - 「아동복지법」에서 제시하는 시설 기준, 종사자 기준 등 준수 의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3조 준수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최소 2회 이상 센터에 예산을 교부해야 함 - 사업 시행 지자체 추진 현황,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전년도 말 확정 내시한 국고 보조금 배정액이 변동될 수 있음 - 국고 보조금 교부액은 해당 회계 연도 내에 집행 완료하여야 함
예산 사용 관련 주요 지침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회계 규칙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

자료: 1) 보건복지부. (2019a).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2) 보건복지부. (2019b). 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다함께돌봄을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 체계

• 다함께돌봄 사업 전산 시스템 구축·관리

보건복지부 시도청 • 시·군·구가 제출한 당해 연도 사업 계획서 검토 • 시·군·구 사업 계획을 포함한 당해 연도 사업 계획서 및 예산 교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 • 기본계획 수립,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도→보건복지부) 제도 개선 • 시·군·구 사업 지도·점검 및 국고 보조금 예산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와 예산 교부 집행(최소 연 2회 이상 센터에 예산 교부) 신청서 검토 • 국고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평가 및 컨설팅, 현장 지도 점검 등 사업 관리 총괄 시·군·구청 • 시·군·구 사업 계획 수립 및 센터 설치·운영 (당해 연도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시·군· 구청→시도청) • 예산 집행 및 지도 점검 등 센터 운영 관리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 평가 및 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 시설 운영 지원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국비 50%, 지방비 50%(단, 서울은 국비 30%, 지방비 70%)의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 1곳당 연간 운영비는 〈표 4-6〉과 같다.

〈표 4-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곳당 연간 운영비(국비 및 지방비 포함)

(단위: 천 원)

구분	1개 반(30명)	2개 반(40명)	3개 반(60명)	비고
기본지원형	106,386	159,502	224,088	
	109,086	163,402	229,188	
장애형	-	135,942	190,098	1개 반 정원 : 10명
다문화형	-	146,972	-	1개 반 정원 : 15명

자료: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9).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 뉴얼.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p. 34.

여성가족부는 기본 운영 계획 및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현장 지도·점 검, 컨설팅 총괄, 사업 운영 평가 계획 수립, 국고 보조금 교부 및 관리, 운 영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중앙 부처 협력 체계 구 축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시도 사업을 총괄하고 사업 계획 수 립·검토·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고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지도·점 검·관리, 관내 방과 후 활동 수요 조사 및 방과후아카데미 확대·홍보 계 획 수립과 함께 관내 돌봄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 한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9). 이 밖에 한국청소년활 동진흥원이 전반적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 고 있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9). 이 밖에 지자체에서는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방과후아카데미의 주요 사안 심의·결정, 지역 연계 및 협력 지원, 자문 및 사업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성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직간접적 지원과 조언을 할 수 있는 지역 관계자 10명 내외로 하도록 하고 있다(여성가족 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9). 여기에는 운영 기관장, 지자체 공무 원, 지역 내 교육(지원)청 담당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은 필수로 포함 되어야 하며 이 밖에 학교 관계자, 보건소장, 지역사회 청소년·사회복지· 돌봄 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의 장, 언론사, 의사, 변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9). 지원협의회가 지역사회 기관장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 실무자 중심의 실무추진위원회를 만들 수 있으며, 지원협의회와 실무추진위원회는 정기적인(분기 1회 이상) 회의 를 개최하여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다양한 네트워크 발굴 노력을 해야 한 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4-3]과 같다.

[그림 4-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 체계

여성가족부 • 기본 운영 계획 및 운영 지침 수립 • 현장 지도·점검, 컨설팅 총괄 • 사업 운영 평가 계획 수립 • 국고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운영 모델 개발·시범 운영 •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중앙 부처 협력 체계 구축 등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 연간 운영 계획 수립 • 운영전담인력교육(신규자교육 및 직무연수등) • 시도 사업 총괄 •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지원 • 사업 계획 수립·검토·조정 • 운영 매뉴얼 제작 및 교육 • 운영 기관 선정 및 지도 감독 등 수행 • 평가 및 우수 사례 발굴 • 국고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지도 점검, 관리 • 홍보. 민간 자원 개발 연계 지원 등 유관 기관 • 관내 방과 후 활동 수요 조사 및 방과후아카데미 네트워크 구축 확대·홍보 계획 수립 • 범부처 공동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운영 지원 등 • 관내 돌봄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조정 등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협조) 운영 기관 • 연간 사업·운영 계획 수립(운영 계획, 운영 지도안 등) • 방과 후 활동 수요 조사 및 지역 맞춤형 홍보 계획 • 대상 청소년 발굴·지원 • 예산 집행 및 정산 결과 보고 • 지역 내 돌봄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 · 협력 등

자료: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9).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 뉴얼.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p. 34. 내용 재구성.

제2절 중앙과 지역 단위 관리 체계의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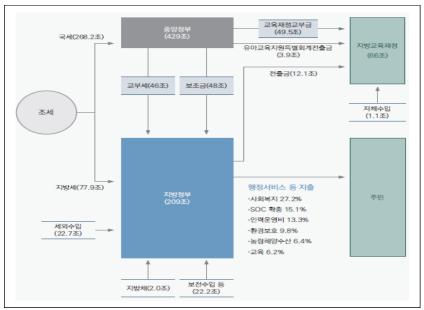
1. 중앙과 지역 단위의 연계·협력 체계

2018년에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운영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부처 간 연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계·협력 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계·협력 활동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적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따른 나홀로 아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연계 노력은 크게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으로 틀 지워질 수 있다. 초등돌봄과 관련한 정부 부처 간 협력 활동은 2013년 무상 돌봄 정책이 추진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김진석 외, 2018). 초등돌봄 정책 사업은 2004년부터 각 부처의 계획에따라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부처간 연계 필요성이 점차 커져 왔다(구슬이, 2014). 각부처 사업 간의 연계 활동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기에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연계가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학교 또는 마을의 유휴 공간을 서로 유기적으로 이용하는 등 서비스 제공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차원까지 발전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각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초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예컨대 초등돌봄교실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해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가능 여부, 위치,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처 간에 예산이나 인력을 공유해 활용하는 차 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계·협력 활동은 예산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함께돌봄 시범 사업' 등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도 협력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 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초등돌봄 관련 사업에 대해 국비와 지방 비를 분담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근거가 되었다. 현행 법률 체제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지방정부는 [그림 4-4]와 같이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4-4] 우리나라 재정 흐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8). 대한민국 재정 2018.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p. 6.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등돌봄 관련 사업의 예산 흐름을 간추려 보면 아래의 [그림 4-5]와 같다. 중앙정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재정교부금 형태로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며,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로 분담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에 소요되는 예산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고 있으며, 초등돌봄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전출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전출금 전입금 지자체

[그림 4-5] 초등돌봄 정책 관련 예산 흐름

이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상호 분담하는 형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정부에서 초등돌봄 정책을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예산뿐 아니라 사업 운영 측면에서도 상호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

2. 예산 운용과 서비스 연계 쟁점

2004년부터 시작된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

센터 사업은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증가와 서비스 이용자의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 점차 확대되었다(정영모, 2019). 여성가족부에서도 2005년부터 운영되어 오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대상을 점차초등학생으로 확대하면서 정부 부처에 의한 초등돌봄 사업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주요 소관 부처가 되었다. 2019년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5500억 원 규모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운영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1조 1053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7) 정부 부처의 초등돌봄 정책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293,546	327,765	340,797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158,700	173,100
	다함께돌봄	0	900	13,800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8,476	19,695	22,402
<u></u> Л		459,222	507,060	550,099

자료: 1) 학교알리미. [웹사이트]. (2019. 10. 30.). URL: www.schoolinf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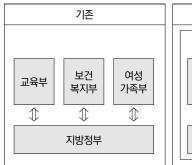
정부 부처 사업은 그동안 각 부처 단위로 지자체와 각각 협력 관계를 맺는 특징을 보여 왔으며, 2013년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은 단순한 예산 지원 차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프로그램 내용에 개입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2018년 이후에는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구축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 되었다. 온종일돌봄체계현장 지원단에서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범부처 연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과 동시에 중앙-지방 간 상시적 돌봄 정책 의견 수렴체계 구축, 지역사회 초등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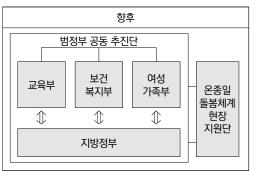
²⁾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³⁾ 여성가족부. (각 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개요. 서울: 여성가족부.

원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보다 긴밀한 협조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이희현 외, 2018).

[그림 4-6]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변화





이와 같은 추진 체계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며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기존의 고유한 성격을 지닐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일원화된 명령 체제에 의해 단시간 내에 강력하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역할이 중앙정부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 지방정부의 사업참여 동기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각부처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교 돌봄 서비스

교육부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며 26만 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교육부, 2019).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교 육재정교부금과 수익자 부담금, 시설 투자를 위한 일부 국비 지원으로 충 당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무상화 정책은 2014년 이후 추진되었다. 사업이 시작된 2004년에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일반 아동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2009년 6월 기준)에 따르면 무료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66.2%, 전액 수익자 부담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24.6%, 일부 수익자 부담을 하는 학생은 9.1% 수준이었다(오범호, 양수경, 박원표, 2009).

2013년 국정 과제에 채택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무상 돌봄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정 과제에 "오후 5시까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하고 저녁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다(제18대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2013). 국정 과제 발표 이후 교육부에서 2014년 '초등 방과 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초등돌봄 무상화가 구체화되었다. 다만 무상 돌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와오후 및 저녁 돌봄을 위한 간식 제공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수익자 부담은 허용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17개 시도 교육청, 2018).

단위 학교에서 정보 공개한 결산 자료를 근거로 파악한 최근 3년간 초등 돌봄교실 수익자 부담금은 2017년 532억 원, 2018년 538억 원, 2019년 592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17~18%를 차지하고 있다(학교알리미, 2019. 10, 30, 검색).

〈표 4-8〉 초등돌봄교실 수익자 부담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이용자 수	254,607	270,616	299,619
	예산(a)	293,546	327,765	340,797
	수익자 부담액(b)	53,164	53,800	59,205
	수익자 부담 외	240,382	273,965	281,592
4	누익자 부담 비율(b/a)	18.11	16.41	17.37

주: 1) 이용자 수는 오후, 저녁,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합산하여 제시함.

자료: 학교알리미. [웹사이트]. (2019. 10. 30.). URL: www.schoolinfo.go.kr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에서는 교육 기관 및 교육 행정 기관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자체에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지방 교육 및 그 행정 운영에 관한 재정 수요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2조) 해당 연도의 내국세총액의 20.46%와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교부금을 결정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문제는 초등돌봄 정책이 교육청의 고유 사무인지, 초등돌봄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선 지방정부는 돌봄 정책을 국가의 사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방사무로 보고 있다(주재복, 김영주, 2016).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이후 무상 돌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초등돌봄 정책을 추진

²⁾ 예산은 단위 학교에서 결산 보고한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예산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하면서 예산 추계를 잘못하고 정작 무상 돌봄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이유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교부한 교부금을 본예산에 100% 반영하지 않고 감액 편성한 사례도 많았다. 반면 교육부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산 편성에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하였다(교육부, 2016).

교육부에서 2014년 "초등 방과 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 계획"을 발표한 이후부터 2017년까지 시도 교육청의 교부금 편성 비율은 운영비를 기준으로 볼 때 2014년 62.18%, 2015년 85.67%, 2016년 79.16%, 2017년 72%이다(지방교육재정알리미, 2019. 10. 10. 검색).

〈표 4-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비율

(단위: 백만 원, %)

	,					
연도	교부액		편성액		편성 비율	
인도	시설비	운영비	시설비	운영비	시설비	운영비
2014	117,632	455,513	76,967	283,217	65.43	62.18
2015	0	351,461	0	301,114	-	85.67
2016	4,190	388,081	2,767	307,209	66.04	79.16
2017	18,308	482,710	10,985	347,545	60.00	72.00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웹사이트]. (2019. 10. 10.). URL: http://www.eduinfo.go.kr/portal/main.do

보통교부금 사용처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갈등도 존재한다. 시도 교육 청은 교육 기관 및 교육 행정 기관 설치·운영을 위한 보통교부금이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보통교부금을 단위 학교의 교육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국가시책 사업에 활용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김승환 교육감 공식 블로그, 2019. 10. 1. 검색). 이에 반해 교육부(중앙정부)는 보통교부금 예산이 교육과 관련된 국가 시책 사업 등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

다고 생각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사업이 이러한 논쟁의 핵심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는 초등돌봄교실의 추진 역사와 관련이 깊다.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 맞벌이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2008년 교육 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이사업이 교육부의 사업인지, 교육청의 사업인지 모호한 상황이 되었다. 교육부에서는 2008년 이후 초등돌봄교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를 명문화한 근거가 빈약하고, 지금까지 교육부가 주도해 왔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지방 사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를 지방에서 호혜적인 입장에서 추진해 왔다는 관점을 취하게 되었다. 실제로 2009년 종일 돌봄 시범 사업, 2011년 엄마품돌봄교실 시범 사업, 2014년 초등돌봄 강화 정책, 2015년 만족도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교육부에서 초등 돌봄 정책을 주도해 왔다.

초등돌봄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은 채 현안에 맞추어 교육부에서 정책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약화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돌봄을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아동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 활동으로까지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이러한 인식들이 정책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정책이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사회의 현안 수요에 맞추어 정권의 요구에 따라 확대되어 왔다는 비판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장기적인 재정 전략 수립을 어렵게 하고, 교육청이 초등돌봄 정책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교육부의 관련 사업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필요성과 서비스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 등으로 초등돌봄교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면서 시도 교육청의 불만도 높아지게 되었다. 2014년 '초등 방과 후돌봄 확대·연계 운영 계획'이 발표된 이후 시도 교육청의 불만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초등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정작 국비 지원이나 내국세 교부율 인상 등 부수적인 조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더구나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청 평가 항목에 초등돌봄 추진 실적을 반영하기도 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중된 것이다.

초등돌봄 정책 추진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14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등 방과 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 계획'은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정책 추진 당시의 유휴 교실, 교육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2만 명(초등학생 272만 명의 약 8.1%, 초등학교 1~2학년의 약 24.1%)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전용 교실 및 예산 확보, 초등돌봄전담사 추가 채용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초등돌봄교실 초과수요에 대한 학부모 민원과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초등돌봄전 담사 확보 문제는 큰 장애 요인이 되었다. 그 밖에도 초등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생긴 유휴 교실의 대부분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초등돌봄 전용실을 추가로 확보하려면 이들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딜레마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

다. 시도 교육청의 가장 큰 고민은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면 필연적으로 돌봄전담사의 수가 증가하고 고정비 성격의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사업 초기 초등돌봄전담사들은 비정규직 신분이었으나 사업이 점차확대되면서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더구나「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초등돌봄전담사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였다. 초등돌봄교실 확대로 인해 고정비 성격이 있는 초등돌봄전담사 인건비를 장기적으로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2018년 12월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내국세 교부율을 20.27%에서 20.46%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2018년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의 중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 분위기가 완화되고 협력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다만 내국세 교부율 인상 이유가 2018년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른 내국세 감소 및 이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국회 본회, 2018. 12. 8.) 초등돌봄 정책사업 확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또한 2022년 이후 초등돌봄교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기 때문에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다함께돌봄' 사업을 추가로 운영하여 초등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의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16년 1428억 원, 2017년 1472억 원, 2018년 158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는 2018년부터 9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9억 원이 편성되었다.

〈표 4-10〉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 예산 추이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수	106,668	108,578	109,610
	예산	1,428	1,472	1,587
다함께돌봄	이용자 수	-	-	-
	예산	-	-	9
<u></u> 계	이용자 수	106,668	108,578	109,610
	예산	1,428	1,472	1,596

자료: 1)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2) 보건복지부. (각 연도).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1)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운영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설립자의 성격에 따라서비스 내용이나 운영 방식이 일원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시설 간에 서비스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개정된「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는데, 다수의 센터들은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되던 사업을 정부 재정 지원 사업으로 흡수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역아동센터들은 기존에 센터를 이용했던 이용자의 특성, 프로그램의 내용, 시설 운영 방법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도 정부 재정 지원, 기관의 자기 부담금, 기부금 등으로 다양하게 충당하는 특징을 보였다.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

산은 대부분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민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2%, 센터 운영자의 자부담 비율이 18%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지침을 발간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 평가를 수행하며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서 비스 확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내재적 한 계로 인해 서비스 확대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아동센 터가 사업 초기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 지원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일 반 아동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경우 사업 운영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예컨대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한 민간의 후원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2449개 센터에 약 232억 원을. 기업체에서는 1452곳에 약 70억 원을 지 원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도 2315개 센터에 약 154억 원에 이르 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러한 예산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 동을 위한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 달을 도모하는 활동을 수행해 왔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 의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를 이유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일반 아동에게까지 무제한으로 확장하는 경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마련된 재원이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사용되기 때문에 취약계층 아 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문제점이 부수적으로 발 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역아동센터 사업 범위를 일반 아동에게 까지 넓히는 문제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아동센

터의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자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 지역아동센터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을 위한 교육 및 보호 서비스를제공해 왔지만, 최근 초등돌봄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확대되면 유치원과 중·고등학생을 위한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2)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 사업은 기존 지역아동센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인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기획된 정책 사업이지만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확대되지 못한 이유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확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협력 관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공간 확보 측면에서는 다음과같은 문제점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9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에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상호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할 책임은 지자체장에게 있으며지자체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시한 구체적인 공간 확보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지침에서는 "관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지역 내 공적 돌봄 서비스 현황 및 각 지원 사업 간 연계를 감안하 여, 다함께돌봄센터가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 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을 근거로 "다함께돌봄센터 설 지 시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 적한 환경'의 장소를 선정", "초등학생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 려가 있는 곳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 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최소 66㎡ 이상의 전용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설치 가능 건축물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 설 등이라고 하였으며 초등학교 시설 활용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러한 규정을 살펴보면 아동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제시된 조건을 종합해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 설 가운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 66㎡를 확보할 수 있고 이곳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이 지원되는 곳을 지자체장이 찾아야 하기 때문에 공간을 확 보하는 업무는 매우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지역사회에 센터를 신축하는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이미 설립된 복지시설 가운데 일부를 할 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존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던 사람들의 서 비스 이용권 제약에 따른 민원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더 구나 단위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이유로 초등학교 유휴 시설을 활 용하는 것은 제외시켰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센터 공간을 확보하는 어 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다음으로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 설정의 문제이다. 초등돌봄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4요소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돌봄 서비스 운영을 위한 예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돌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지자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 써 지자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전반에 대한 활동을 수행하 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자체의 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센터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적용하며, 보건복 지부에서 지자체에 교부하는 국고 보조금은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추진 현황과 보건복지부의 성과 분석 등을 통해 감액 가능하도록 조치하 고 있다. 이러한 운영 체제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권한은 보건복 지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운영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은 지자체 에 있다고 규정한 것과 다름없다. 이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절박 한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지자체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일 수 있다. 참고로 「영유 아보육법,과「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면서 어린이집 보육비를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어 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보건복지부에서 갖고 예산은 시도 교육 청에서 부담하게 한 결과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 의사를 표시한 사례가 있다.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급식, 상담, 건강 관리, 생활 일정 관리 등 생활 지원, 청소년 캠프, 보호자 교육, 초청 인사 특별 강의 등 특별 지원, 전문 강사진의 교과 학습 중심의 학습 지원,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자기 계

발, 다양한 체험 활동 운영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업 성취, 또래 관계 향상,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학교 적응 능력 향 상, 생활 만족도 향상 등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역 량을 높이도록 돕고 있다.

최근에는 돌봄 서비스 수요 확대와 관련한 사업을 늘리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방과후아카데미 중등반을 142개까지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의 방과 후 학습과 돌봄 및 초·중등 돌봄 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수립된 범정부 '온종일 돌봄 구축 체계 실행 계획'에 맞추어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초등학생 1만 명을 추가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설치된 곳은 2019년 현재 서울 25개, 지방 225개이며, 이들 기관에 국비 219억 3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 등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관리·지원하며, 컨설팅·평가, 연수·교육, 기타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기준 예산은 1곳(40명 기준)당 1억 5950만 원이며, 재원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마련된 국비(국고 보조율은 지방 50%, 서울 30%)와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대상은 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범정부 온종일 돌봄 구축 체계 실행 계획에 맞추어 초등학생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며,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재편하여 학령기 이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활동들이 아직 가시화되지 못한 점이 한계점으로 남아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9. 11. 30. 검색).

제3절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현황

1. 초등돌봄교실

가. 공급 현황

2019년 전국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266개 초등학교의 97.6%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후돌봄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의 95.5%, 저녁돌봄, 방과후 연계형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각각 10.5%, 28.4%로 나타났다. 돌봄교실이 있는 학교가 97.6%인 데 반해 오후돌봄을 제공하는 학교가 95.5%라는 것은 일부학교에서는 오후돌봄교실 없이 저녁돌봄이나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만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오후돌봄이 초등돌봄교실의 주요 돌봄 서비스로 이해되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오후돌봄을 무조건 제공한다고 여길 수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음을 알수 있다. 특히 강원의 경우 378개교 중 366곳에 돌봄교실이 있지만 오후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271개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지역은 오후돌봄교실 운영 비율이 전체 학교의 71.7%로 전국에서가장 낮았다. 이 밖에 제주, 전남 지역 오후돌봄 운영 학교 비율이 각각 90.7%, 91.2%로 타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녁돌봄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660개교(10.5%)의 초등학교에서만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중 299개교가 서울 지역이었다. 제주 지역에서는 저녁돌봄을 제공하는 초등학교가 전무하며 경남, 경북, 대구 지역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이외에 인천(33.5%), 세종(20.8%), 부산(16.1%)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녁돌봄 운영 비율이 높았을 뿐 경기지역도 6.2%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과후 연계형 교실은 전체 초등학교의 28.4%가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79.6%), 대구(52.4%), 강원(50.8%) 지역의 운영 비율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인천과 대구의 경우 오후돌봄교실과 함께 방과후 연계형 교실이 운영되는 것으로보이나 강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후돌봄교실 운영 비율이 현저히 낮아 상당수의 학교에서 오후돌봄교실 없이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4-11〉 시도별 돌봄교실 운영 학교 현황(2019년)

(단위: 개, %)

					(= 11 - 11, 70)
		돌봄교실 운영		돌봄교실 유형	
구분	학교 수	학교	오후돌봄 운영	방과후 연계형 운영	저녁돌봄 운영
전체	6,266	6,113	5,983	1,782	660
	(100.0)	(97.6)	(95.5)	(28.4)	(10.5)
서울	600	574	573	276	299
	(100.0)	(95.7)	(95.5)	(46.0)	(49.8)
부산	304	299	299	114	49
	(100.0)	(98.4)	(98.4)	(37.5)	(16.1)
대구	229 (100.0)	225 (98.3)	225 (98.3)	120 (52.4)	1 (0.4)
인천	260	253	252	207	87
	(100.0)	(97.3)	(96.9)	(79.6)	(33.5)
광주	156	153	153	8	4
	(100.0)	(98.1)	(98.1)	(5.1)	(2.6)
대전	150 (100.0)	149 (99.3)	149 (99.3)	72 (48.0)	9 (6.0)
울산	122	122	120	45	12
	(100.0)	(100.0)	(98.4)	(36.9)	(9.8)
세종	48	48	47	21	10
	(100.0)	(100.0)	(97.9)	(43.8)	(20.8)

구분	학교 수	돌봄교실 운영 학교	돌봄교실 유형			
			오후돌봄 운영	방과후 연계형 운영	저녁돌봄 운영	
경기	1,298	1,288	1,285	181	81	
	(100.0)	(99.2)	(99.0)	(13.9)	(6.2)	
강원	378	366	271	192	5	
	(100.0)	(96.8)	(71.7)	(50.8)	(1.3)	
충북	268	262	260	27	12	
	(100.0)	(97.8)	(97.0)	(10.1)	(4.5)	
충남	420	419	406	115	8	
	(100.0)	(99.8)	(96.7)	(27.4)	(1.9)	
전북	423	420	415	50	23	
	(100.0)	(99.3)	(98.1)	(11.8)	(5.4)	
전남	465	426	424	59	52	
	(100.0)	(91.6)	(91.2)	(12.7)	(11.2)	
경북	508	492	489	197	4	
	(100.0)	(96.9)	(96.3)	(38.8)	(0.8)	
경남	519	510	508	96	4	
	(100.0)	(98.3)	(97.9)	(18.5)	(0.8)	
제주	118	107	107	2	0	
	(100.0)	(90.7)	(90.7)	(1.7)	(0.0)	

주: 1) 상기 수치는 '2019년 초등학교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공시 자료(2019년 4월 1일 기준)와 '2019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공시 자료(2019년 4월 30일 기준)를 학교 별로 매칭하여 산출한 것임.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은 평균 2.48개로 나타났다. 돌봄 교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오후돌봄 1.98개, 저녁돌봄 1.16개,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1.41개로 오후돌봄 교실이 다소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에서 세종이 평균 4.38개로 가장 많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뒤이어 서울(4.13개), 인천(3.65개), 대전(3.37개)이 운영 교실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돌봄교실도 유사한 상황이다. 저녁돌봄교실의 경우 광주가 평균 2.25개로 운영 교실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해당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의 평균 교실 수로 평균 운영 교실 수가 많다고 해서 돌봄교실 공급이 많다고 할 수 없다. 전체 공급

²⁾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수는 돌봄 유형 중 1개라도 운영 중이면 수치에 포함.

자료: 학교알리미 [웹사이트]. (2019. 9. 11.). URL: https://www.schoolinfo.go.kr/ei/ss/Pneiss _ a02_s0.do

현황은 앞서 제시된 〈표 4-11〉의 돌봄교실 운영 학교 현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광주 지역의 경우 저녁돌봄을 제공하는 학교는 4개교에 불과하다. 방과후 연계형 교실은 해당 학교에서 대부분 1~2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평균 운영 교실 수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2〉 시도별 돌봄학교 운영 현황 및 평균 돌봄교실 수(2019년)

(단위: 개, 평균)

구분	돌봄교실 운영 학교 수	돌봄교실 수	유형별 돌봄교실 수			
			오후돌봄	방과후 연계형	저녁돌봄	
전체	6,113	15,153	11,869	2,517	767	
		(2.48)	(1.98)	(1.41)	(1.16)	
서울	574	2,373	1,734	320	319	
		(4.13)	(3.03)	(1.16)	(1.07)	
부산	299	702	522	125	55	
		(2.35)	(1.75)	(1.10)	(1.12)	
대구	225	589	467	121	1	
		(2.62)	(2.08)	(1.01)	(1.00)	
인천	253	923	581	211	131	
		(3.65)	(2.31)	(1.02)	(1.51)	
광주	153	305	287	9	9	
		(1.99)	(1.88)	(1.13)	(2.25)	
대전	149	502	411	77	14	
		(3.37)	(2.76)	(1.07)	(1.56)	
울산	122	323	244	60	19	
		(2.65)	(2.03)	(1.33)	(1.58)	
세종	48	210	166	34	10	
		(4.38)	(3.53)	(1.62)	(1.00)	
경기	1,288	3,306	2,921	293	92	
		(2.57)	(2.27)	(1.62)	(1.14)	
강원	366	810	368	435	7	
		(2.21)	(1.36)	(2.27)	(1.40)	
충북	262	495	437	45	13	
		(1.89)	(1.68)	(1.67)	(1.08)	
충남	419	961	640	313	8	
		(2.29)	(1.58)	(2.72)	(1.00)	
전북	420	808	727	53	28	
		(1.92)	(1.75)	(1.06)	(1.22)	
전남	426	759	625	81	53	
		(1.78)	(1.47)	(1.37)	(1.02)	

구분	돌봄교실	돌봄교실 수	유형별 돌봄교실 수					
十正	운영 학교 수		오후돌봄	방과후 연계형	저녁 돌 봄			
경북	492	898	656	238	4			
경국	492	(1.83)	(1.34)	(1.21)	(1.00)			
711.1-	510	974	870	100	4			
경남		(1.91)	(1.71)	(1.04)	(1.00)			
	107	215	213	2				
제주	107	(2.01)	(1.99)	(1.00)	_			

주: 1) 상기 수치는 '2019년 초등학교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공시 자료(2019년 4월 1일 기준)와 '2019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공시 자료(2019년 4월 30일 기준)를 학교 별로 매칭하여 산출한 것임.

나. 이용 현황

초등돌봄교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초등학생들 중에 약 10.9%, 27만여 명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향후 34만 명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돌봄교실 유형에 따른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아동의 약 9.3%가 오후돌봄을 이용하고 1.3%가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며, 저녁돌봄을 이용하는 학생은 전국적으로 약 6000명에 못 미치는 수치로 이는 전체 초등학생의 0.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저녁돌봄을 이용하는 상당수가 서울, 경기권학생이며 부산, 인천, 전남 이외 지역의 이용 학생 수는 매우 적었다. 특히 제주 지역은 저녁돌봄 이용 학생 수가 0명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저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돌봄교실 이용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이나 오후 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이었다. 강원 지역의 경우 방 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이용 비율이 전체 초등학생의 8.4%로 전국 평균 1.3%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²⁾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수는 돌봄 유형 중 1개라도 운영 중이면 수치에 포함.

자료: 학교알리미 [웹사이트]. (2019. 9. 11.). URL: https://www.schoolinfo.go.kr/ei/ss/Pneiss _ a02 s0.do

〈표 4-13〉 시도별 돌봄교실 참여 학생 현황(2019년)

(단위: 명, %)

74	-11U A	EH FIO		돌봄교실 유형	
구분	학생 수	돌봄 참여	오후돌봄	방과후 연계형	저녁돌봄
T4+11	2,747,219	299,619	256,825	36,902	5,892
전체	(100.0)	(10.9)	(9.3)	(1.3)	(0.2)
	422,293	46,049	39,391	4,555	2,103
서울	(100.0)	(10.9)	(9.3)	(1.1)	(0.5)
부산	155,589	14,702	11,988	2,298	416
구건	(100.0)	(9.4)	(7.7)	(1.5)	(0.3)
대구	126,122	11,890	10,263	1,622	5
	(100.0)	(9.4)	(8.1)	(1.3)	(0.0)
인천	160,853	16,136	13,092	2,357	687
	(100.0)	(10.0)	(8.1)	(1.5)	(0.4)
광주	88,990	6,333	6,115	201	17
	(100.0)	(7.1)	(6.9)	(0.2)	(0.0)
대전	82,743	9,536	8,563	919	54
	(100.0)	(11.5)	(10.3)	(1.1)	(0.1)
울산	68,512	6,295	5,607	646	42
	(100.0)	(9.2)	(8.2)	(0.9)	(0.1)
세종	27,892	3,976	3,434	397	145
	(100.0)	(14.3)	(12.3)	(1.4)	(0.5)
경기	769,744	65,038	59,642	4,289	1,107
	(100.0)	(8.4)	(7.7)	(0.6)	(0.1)
강원	75,617	13,598	7,160	6,356	82
	(100.0)	(18.0)	(9.5)	(8.4)	(0.1)
충북	86,709	10,380	9,350	879	151
	(100.0)	(12.0)	(10.8)	(1.0)	(0.2)
충남	122,424	17,803	13,410	4,315	78 (0.1)
	(100.0)	(14.5)	(11.0)	(3.5)	, ,
전북	97,731 (100.0)	17,081 (17.5)	15,526 (15.9)	1,242	313
	<u>'</u>	, ,		(1.3)	(0.3)
전남	94,952 (100.0)	15,894 (16.7)	14,041 (14.8)	1,222 (1.3)	631 (0.7)
	131,374	17,745		3,715	35
경북	(100.0)	(13.5)	13,995 (10.7)	(2.8)	(0.0)
	194,606	21,954	20,073	1,855	26
경남	(100.0)	(11.3)	(10.3)	(1.0)	(0.0)
	41,068	5,209	5,175	34	(0.0)
제주	(100.0)	(12.7)	(12.6)	(0.1)	-
	(0.001)				1

주: 1) 상기 수치는 '2019년 초등학교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공시 자료와 '2019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공시 자료를 학교별로 매칭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학교알리미 [웹사이트]. (2019. 9. 11.). URL: https://www.schoolinfo.go.kr/ei/ss/Pneiss_a02_s0.do

²⁾ 전체 학생 수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포함되어 있으며, 돌봄 유형별 학생 수에는 미포함됨.

³⁾ 돌봄교실 이용 전체 학생 수는 중복이 포함될 수 있음(예: 오후돌봄 + 저녁돌봄 이용).

⁴⁾ 초등학생 수 현황은 2019년 4월 1일 기준 공시 자료 기준, 돌봄 유형별 이용 학생 수는 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일부 시차가 존재함.

《표 4-12〉와 〈표 4-13〉을 이용하여 돌봄교실당 참여 학생 수를 살펴 본 결과는 〈표 4-14〉와 같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돌봄교실 당 학생 수는 20명 내외이지만 돌봄교실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녁돌봄의 경우 교실당 이용 학생 수가 1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광주는 9개의 저녁돌봄교실이 운영되는 반 면 반당 이용 학생 수는 1.9명에 불과하였고 울산도 2.2명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저녁돌봄의 효율적 운영에 대 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저녁 시간대에 돌봄 공백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학교도 이용자 수도 저조한 저녁돌 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4-14〉 시도별 돌봄교실당 참여 학생 현황(2019년)

(단위: 명)

78	도비 저테		돌봄교실 유형						
구분	돌봄 전체	오후돌봄	방과후 연계형	저녁돌봄					
전체	19.8	21.6	14.7	7.7					
서울	19.4	22.7	14.2	6.6					
부산	20.9	23.0	18.4	7.6					
대구	20.2	22.0	13.4	5.0					
인천	17.5	22.5	11.2	5.2					
광주	20.8	21.3	22.3	1.9					
대전	19.0	20.8	11.9	3.9					
울산	19.5	23.0	10.8	2.2					
세종	18.9	20.7	11.7	14.5					
경기	19.7	20.4	14.6	12.0					
강원	16.8	19.5	14.6	11.7					
충북	21.0	21.4	19.5	11.6					
충남	18.5	21.0	13.8	9.8					
전북	21.1	21.4	23.4	11.2					
전남	20.9	22.5	15.1	11.9					
경북	19.8	21.3	15.6	8.8					
경남	22.5	23.1	18.6	6.5					
제주	24.2	24.3	17.0	0.0					

일반적으로 오후돌봄을 제공하는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1~2학년을 중 심으로,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은 3~6학년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 을 고려하여 각각 1~2학년과 3~6학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당 돌봄교 실 이용 학생 비율을 산출해 보았다. 저녁돌봄교실은 일반적으로 오후돌 봄 또는 방과후 연계형 돌봄을 이용하는 학생이 추가로 이용하는 형태이 기 때문에 저녁돌봄 이용 학생 비율은 돌봄 서비스 이용 학생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표에 따르면, 오후돌봄교실은 전국적으로 전 체 1~2학년 학생의 약 27.8%의 수만큼 이용하고 있으며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은 3~6학년의 약 2.1%의 수만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 녁돌봄은 전국적으로 돌봄 서비스(오후돌봄 또는 방과후 연계형 돌봄) 이 용 학생의 약 2%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후돌봄의 경우 전북 지역은 1~2학년 학생의 약 48.3%에 해당하는 수만큼 돌봄 서비스를 이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북, 전남, 제주, 세종 지역이 오후돌봄을 이용하는 학생 비율이 높고 부산, 광주, 경기 지역이 상대적 으로 낮았다. 방과후 연계형의 경우 강원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 밖에 충남, 경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저녁돌 봄 이용 비율은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 미만인 지역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시도별 초등돌봄교실 이용 현황(오후돌봄, 방과후 연계형, 저녁돌봄)

(단위: 명, %)

	학생	수	오후돌봄	방과후 연계형	저녁돌봄
구분	1~2학년	3~6학년	1~2학년 학생 대비	3~6학년 학생 대비	돌봄 이용 학생 대비
전체	922,551	1,797,254	27.8	2.1	2.0
서울	140,011	278,630	28.1	1.6	4.6
부산	53,370	100,609	22.5	2.3	2.8
대구	42,299	82,816	24.3	2.0	0.0
인천	54,032	104,876	24.2	2.2	4.3
광주	29,456	58,786	20.8	0.3	0.3
대전	27,426	54,353	31.2	1.7	0.6
울산	23,333	44,514	24.0	1.5	0.7
세종	9,702	18,021	35.4	2.2	3.6
경기	260,128	502,721	22.9	0.9	1.7
강원	24,766	49,970	28.9	12.7	0.6
충북	28,885	56,797	32.4	1.5	1.5
충남	41,172	79,526	32.6	5.4	0.4
전북	32,136	64,623	48.3	1.9	1.8
전남	31,653	62,000	44.4	2.0	4.0
경북	44,570	85,391	31.4	4.4	0.2
경남	65,654	126,890	30.6	1.5	0.1
제주	13,958	26,731	37.1	0.1	-

주: 1) 상기 수치는 '2019년 초등학교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공시 자료와 '2019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공시 자료를 학교별로 매칭하여 산출한 것임.

(표 4-16)은 시도 단위로 지역별 맞벌이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2018 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46.3%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기준 전국에서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유배우 가구의 61.5%가 맞벌이 가구였다. 뒤이어 전남(57.5%), 충남(55.5%), 강원(53.5%) 등이 맞벌이 가구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38.1%), 부산(39.8%), 서

²⁾ 전체 학생 수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포함되어 있으며, 1~2학년 학생 수에는 미포함됨.

³⁾ 초등학생 수 현황은 2019년 4월 1일 기준 공시 자료 기준, 오후돌봄 이용 학생 수는 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일부 시차가 존재함.

자료: 학교알리미 [웹사이트]. (2019. 9. 11.). URL: https://www.schoolinfo.go.kr/ei/ss/Pneiss_a02_s0.do

울(40.4%) 지역은 상대적으로 맞벌이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맞벌이 비율과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비율이 다소 관련이 있어 보이나, 현재의 이용 아동 비율이 실수요에 기반한 수치인지 공급량에 기반한 수치인지 명확하지 않다.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광주 지역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서비스의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초등돌봄 서비스에서 정확한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적절한 통계 관리가 요구된다. 당초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활용 및 공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4-16〉 시도 단위 지역별 고용 맞벌이 가구 비율

(단위: 천 가구, %, %p)

		2017년			2018년			증감	
구분	유배우	맞벌이		유배우	맞벌이		유배우	맞벌이	
			비율			비율			비율
전체	12,224	5,456	44.6	12,245	5,675	46.3	21	219	1.7
서울	2,188	879	40.2	2,164	875	40.4	-24	-5	0.2
부산	818	302	36.9	816	325	39.8	-2	23	2.9
대구	589	241	40.9	587	251	42.7	-2	10	1.8
인천	680	298	43.8	682	311	45.6	2	13	1.8
광주	348	159	45.5	348	166	47.7	-1	7	2.2
대전	364	158	43.4	365	172	47.1	0	14	3.7
울산	291	107	36.8	291	111	38.1	0	4	1.3
세종	70	35	50.4	80	42	52.6	10	7	2.2
경기	3,004	1,273	42.4	3,027	1,349	44.6	23	75	2.2
강원	382	192	50.3	383	205	53.5	1	13	3.2
충북	394	207	52.5	397	208	52.3	3	0	-0.2
충남	523	285	54.5	527	293	55.5	4	8	1.0
전북	451	226	50.2	450	236	52.4	-1	10	2.2
전남	462	255	55.3	461	265	57.5	-1	10	2.2
경북	685	356	52.1	685	367	53.5	0	10	1.4
경남	828	390	47.1	831	409	49.1	3	18	2.0
제주	148	91	61.7	152	93	61.5	4	2	-0.2

주: 비율 = (맞벌이 가구/유배우 가구)×100

자료: 통계청. (2019).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통계청 보도자료(2019. 6. 25.). 최근 10년간 초등돌봄교실 운영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4-7]과 같다. 지난 10년간 운영 학교 수는 더디게 증가하였으나 운영 교실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운영 학교 수가 둔화한 것은 대부분의 학교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 여지가 크게 없기 때문이다. 운영 교실 수의 경우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큰 폭으로 늘었으나그 이후 오히려 감소하다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의 증가는 감소하는 학생 수 등 미래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적극적인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 수요자가 많은 상황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7] 10년간 초등돌봄교실 운영 추이

자료: 교육부. (2019).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미리 챙겨 돌봄공백 해소. 교육부 보도자료(2019. 1. 8.).

2. 지역아동센터

가. 공급 현황

지역아동센터는 2018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421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 단위로 살펴볼 때 경기 지역에 789개로 가장 많은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뒤를 이어 서울, 전남, 광주 지역에 300~400개 내외로 분포되어 있다. 경기 지역은 신규 신고 시설도 24개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세종 지역은 13개로 전국적으로 수가 가장 적었으며 이러한 지역적 분포의 차이는 지역 특성에 따른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며 세종시의 경우 새롭게 생겨난 도시 특성상 시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4-17〉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2018년)

(단위: 개, %)

				(211 11,75)
ᄀᆸ	지역아동센터	네 신고 현황	신규 신	고 현황
구분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전체	4,211	100.0	98	100.0
서울	454	10.8	16	16.3
부산	212	5.0	7	7.1
대구	200	4.8	3	3.1
인천	178	4.2	1	1.0
광주	308	7.3	8	8.2
대전	144	3.4	-	-
울산	56	1.3	1	1.0
세종	13	0.3	1	1.0
경기	789	18.7	24	24.5
강원	172	4.1	6	6.1
충북	184	4.4	1	1.0
충남	238	5.7	4	4.1
전북	285	6.8	4	4.1
전남	378	9.0	5	5.1
경북	271	6.4	9	9.2
경남	263	6.2	8	8.2
제주	66	1.6	-	-

자료: 보건복지부. (2019c). 2018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세터 통계조사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p. 5.

지역아동센터 운영 주체는 2018년을 기준으로 개인이 70%로 가장 많고, 법인(재단, 사단, 사회복지 법인) 21.3%, 일반 단체(시민 단체, 종교단체) 6.8%, 지자체(직영형, 위탁형) 1.8% 순으로 매우 다양하다.

〈표 4-18〉 지역아동센터 운영 주체

(단위: 개,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체	4,059	4,102	4,107	4,189	4,211
건 	시 시	(100.0)	(100.0)	(100.0)	(100.0)	(100.0)
71	개인		669 2,796 2,860 2,934		2,934	2,951
· · · · · · · · · · · · · · · · · · ·		(65.7)	(68.2)	(69.6)	(70.0)	(70.1)
	재단	431	300	300	904	896
	AIL	(10.6)	(7.3)	(7.3)	(21.6)	(21.3)
법인	사단	225	249	241		
82		(5.5)	(6.1)	(5.9)	_	
	사회복지	332	331	322	_	_
		(8.2)	(8.1)	(7.8)		_
일반 단체	시민 단체	109 (2.7)	67 (1.6)	68 (1.7)	290 (6.9)	288 (6.8)
글린 근세	종교 단체	231 (5.7)	272 (6.6)	183 (4.5)	-	-
 지자체 ¹⁾	직영	-	-	19 (0.5)	17 (0.4)	25 (0.6)
\\\[\]\\\\\\\\\\\\\\\\\\\\\\\\\\\\\\\\	위탁	_	_	22 (0.5)	44 (1.1)	51 (1.2)
7 8	<u></u>	62 (1.6)	87 (2.1)	92 (2.2)	_	_

주: 1) 2016년부터 지자체 직영/위탁 별도 표시함(2015년까지 기타에 지자체 포함됨).

2004년 이후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895 곳에서 2018년 4211곳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역별 증가 동향을 살펴보면 대구가 21개에서 200개로, 광주가 39개에서 308개로, 경북이 34개에서 271개로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 충북, 인천, 경기 등은 전체 시설에서 해당 지역 시설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디게 증가한 것으로

²⁾ 기타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학교 법인, 주민자치위원회 등임(2017년부터 법인 또는 일반 단체에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2019c). 2018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p. 8.

확인되었다. 세종시의 경우 2012년 11곳에서 2018년 현재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11년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 추이가 둔화되었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2곳이 감소하기까지 하였다. 최근 3년간 지역아동센터는 109개 증가에 그쳐 공급 확대가 현저히 둔화되었다. 이는 2012년 이후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없어져 2년 동안 정부지원 없이 운영해야 하는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9〉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2004~2018년)

(단위: 개, %)

구분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체	895	2,029	3,013	3,690	4,036	4,059	4,107	4,211
신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104	210	302	367	404	409	414	454
시골	(11.6)	(10.3)	(10.0)	(9.9)	(10.0)	(10.1)	(10.1)	(10.8)
부산	43	110	155	185	196	200	204	212
구간	(4.8)	(5.4)	(5.1)	(5.0)	(4.9)	(4.9)	(5.0)	(5.0)
대구	21	35	75	147	177	191	199	200
	(2.3)	(1.7)	(2.5)	(4.0)	(4.4)	(4.7)	(4.8)	(4.7)
이처	58	117	157	174	187	181	183	178
인천	(6.5)	(5.8)	(5.2)	(4.7)	(4.6)	(4.5)	(4.5)	(4.2)
광주	39	92	164	218	278	292	301	308
	(4.4)	(4.5)	(5.4)	(5.9)	(6.9)	(7.2)	(7.3)	(7.3)
대전	24	83	133	144	146	147	145	144
41/2	(2.7)	(4.1)	(4.4)	(3.9)	(3.6)	(3.6)	(3.5)	(3.4)
울산	17	41	51	52	57	56	55	56
- 글인	(1.9)	(2.0)	(1.7)	(1.4)	(1.4)	(1.4)	(1.3)	(1.3)
세종	_	_	_	_	11	10	12	13
7110					(0.3)	(0.2)	(0.3)	(0.3)
경기	192	402	601	679	735	751	763	789
0/1	(21.5)	(19.8)	(19.9)	(18.4)	(18.2)	(18.5)	(18.6)	(18.7)
강원	41	102	139	159	164	163	168	172
	(4.6)	(5.0)	(4.6)	(4.3)	(4.1)	(4.0)	(4.1)	(4.1)
충북	56	118	156	185	202	190	184	184
<u> </u>	(6.3)	(5.8)	(5.2)	(5.0)	(5.0)	(4.7)	(4.5)	(4.4)
충남	39	87	151	200	214	224	226	238
	(4.4)	(4.3)	(5.0)	(5.4)	(5.3)	(5.5)	(5.5)	(5.7)
전북	59	147	212	267	288	281	286	285
	(6.6)	(7.2)	(7.0)	(7.2)	(7.1)	(6.9)	(7.0)	(6.8)

구분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남	87	216	307	368	392	383	384	378
선금	(9.7)	(10.6)	(10.2)	(10.0)	(9.7)	(9.4)	(9.3)	(9.0)
 경북	34	108	164	232	256	257	258	271
6 4	(3.8)	(5.3)	(5.4)	(6.3)	(6.3)	(6.3)	(6.3)	(6.4)
건비나	66	128	189	244	257	255	259	263
경남	(7.4)	(6.3)	(6.3)	(6.6)	(6.4)	(6.3)	(6.3)	(6.2)
ᅰᄌ	15	33	57	69	72	69	66	66
제주	(1.7)	(1.6)	(1.9)	(1.9)	(1.8)	(1.7)	(1.6)	(1.6)

주: 2016년 이전 수치는 2016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 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임.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운영 기간에 따른 센터 수를 살펴보면, 전체 시설의 약 82%가 5년 이상 된 시설로 나타났으며 3년 미만 시설 비율은 약 8.7%였다. 증가한 시설 수와 운영 기간을 살펴볼 때 기존 시설이 폐업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는 지역아동센터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기보다는 일정 시간 동안 확대된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질적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로 보인다. 더욱이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와의 협력 및 상생 방안 모색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표 4-20)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간(2018년)

(단위: 개, %)

구분	센터 수	비율		
전체	4,211	100.0		
1년 미만	98	2.3		
1년~2년 미만	101	2.4		
2년~3년 미만	167	4.0		
3년~5년 미만	325	7.7		
5년~10년 미만	1,297	30.8		
10년 이상	2,223	52.8		

주: 지역아동센터 신고 연도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2019c). 2018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p. 10.

나. 이용자 현황

2018년 전체 이용 아동은 10만 9610명으로 2012년 10만 8357명보다 1253명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6년 10만 6668명 대비 2942명 늘어난 수치이다. 신고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2018년 전체 기준으로 92.7%이며 2012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신고 정원 대비 현재 이용 아동 비율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모두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 울산, 충북, 전북, 전남 지역이 94% 내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2012년 99%였으나 2018년 83.5%로 전국에서 정원 대비 이용 아동 수비율이 가장 낮았다. 센터당 평균 이용 아동 수는 2018년 전체 기준으로 26.5명이며 경기, 충북, 충남, 강원 지역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센터당 평균 이용 아동 수가 다소 많았다.

〈표 4-21〉 연도별·시도별 신고 정원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2012, 2014년) (단위: 개, 명, %)

			2012년					2014년		
구분	센터	신고	이용 이	아동 수	정원	센터	센터 신고		는 정	정원
수		정원	전체	센터당 평균	대비 현원	수	정원	전체	센터당 평균	대비 현원
전체	4,036	114,986	108,357	26.8	94.2	4,059	117,617	108,936	26.8	92.6
서울	404	11,499	10,727	26.6	93.3	409	12,072	11,092	27.1	91.9
부산	196	5,419	4,979	25.4	91.9	200	5,453	4,800	24.0	88.0
대구	177	4,711	4,286	24.2	91.0	191	5,220	4,812	25.2	92.2
인천	187	5,082	4,582	24.5	90.2	181	5,035	4,620	25.5	91.8
광주	278	8,306	8,051	29.0	96.9	292	8,497	8,077	27.7	95.1
대전	146	4,771	4,375	30.0	91.7	147	4,640	4,112	28.0	88.6
울산	57	1,474	1,393	24.4	94.5	56	1,435	1,327	23.7	92.5
세종	11	301	298	27.1	99.0	10	291	251	25.1	86.3
경기	735	22,548	20,779	28.3	92.2	751	23,592	21,481	28.6	91.1
강원	164	4,506	4,441	27.1	98.6	163	4,515	4,312	26.5	95.5
충북	202	5,499	5,310	26.3	96.6	190	5,402	5,148	27.1	95.3
충남	214	6,203	5,927	27.7	95.6	224	6,683	6,207	27.7	92.9

			2012년			2014년					
구분	센터	신고 정원	이용 아동 수		정원	센터	신고	이용 0	동 수	정원	
	수		전체	센터당 평균	대비 현원	수	정원	전체	센터당 평균	대비 현원	
전북	288	7,898	7,464	25.9	94.5	281	7,885	7,354	26.2	93.3	
전남	392	11,044	10,938	27.9	99.0	383	10,803	10,467	27.3	96.9	
경북	256	6,969	6,485	25.3	93.1	257	7,042	6,440	25.1	91.5	
경남	257	6,712	6,294	24.5	93.8	255	7,059	6,533	25.6	92.5	
제주	72	2,044	2,028	28.2	99.2	69	1,993	1,903	27.6	95.5	

주: 2016/2018년: 분석 불가능 시설은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표 4-22〉 연도별·시도별 신고 정원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2016, 2018년) (단위: 개, 명, %)

			001011			201013									
			2016년					2018년							
78	HILL		이용 여	아동 수	정원	ысі		이용 0	수 광	정원					
구분	센터 수	신고 정원	저를	센터당	대비	센터 수	신고 정원	T4-FII	센터당	대비					
		' ' ' ' ' '	전체	평균	현원		'6면	전체	평균	현원					
전체	4,104	118,441	106,668	26.0	90.1	4,138	118,192	109,610	26.5	92.7					
서울	414	12,283	11,058	26.7	90.0	430	12,786	11,774	27.4	92.1					
부산	204	5,390	4,653	22.8	86.3	207	5,307	4,916	23.7	92.6					
대구	199	5,516	4,905	24.7	88.9	198	5,430	5,029	25.4	92.6					
인천	183	5,055	4,498	24.6	89.0	178	4,828	4,397	24.7	91.1					
광주	301	8,560	7,970	26.5	93.1	305	8,435	7,901	25.9	93.7					
대전	145	4,459	3,872	26.7	86.8	142	4,194	3,822	26.9	91.1					
울산	55	1,424	1,271	23.1	89.3	56	1,383	1,300	23.2	94.0					
세종	12	354	323	26.9	91.2	13	400	334	25.7	83.5					
경기	761	23,903	21,111	27.7	88.3	771	23,901	21,790	28.3	91.2					
강원	168	4,736	4,350	25.9	91.8	171	4,850	4,535	26.5	93.5					
충북	184	5,258	4,959	27.0	94.3	182	5,252	4,966	27.3	94.6					
충남	226	6,997	6,098	27.0	87.2	235	6,929	6,378	27.1	92.0					
전북	286	7,779	7,125	24.9	91.6	280	7,655	7,247	25.9	94.7					
전남	384	10,629	9,944	25.9	93.6	375	10,381	9,946	26.5	95.8					
경북	258	7,111	6,417	24.9	90.2	269	7,403	6,830	25.4	92.3					
경남	258	7,066	6,396	24.7	90.5	260	7,156	6,678	25.7	93.3					
제주	66	1,921	1,718	26.0	89.4	66	1,902	1,767	26.8	92.9					

주: 2016/2018년: 분석 불가능 시설은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학년별 이용 아동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이용 아동 수의 큰 변화는 없으나, 미취학 아동, 중학생이 현저히 감소한 반면 초등학생은 전반

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전년 대비 미취학 아동이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2018년 제도 개정으로 형제자매 이용 시 미취학 아동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 다. 또한 초등학생 수 증가는 2017년부터 일반 아동의 이용 기준을 확대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취학 아동의 감소는 이용 조건 에 따른 변화에 기인한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따라 음·면과 일부 동 단위 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이용을 허용하였으나 현재 형제자매가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취학 아동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무상보육・유아 교육 등으로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센터를 이용하 면 중복 지원이 된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 체 이용 아동의 약 80%가 초등학생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초등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현장 조사 결과 서비스 대상 연령 범위가 넓어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이 동일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때 긍정적 영향 이외에 부정적 영향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지역아동센터만 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돌 봄센터도 동일한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23〉 연도별·학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단위: 명)

=	P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7	전체	108,357	109,066	108,936	109,661	106,668	108,578	109,610
미취학 아동		4,028	3,714	3,533	3,133	1,872	1,111	1,798
	전체	80,426	80,318	81,087	82,380	82,140	84,706	87,501
	1학년	10,614	11,484	12,263	11,877	10,662	11,591	12,246
초	2학년	13,040	12,977	13,767	15,019	14,494	14,049	14,955
등 학	3학년	14,376	14,832	14,395	15,371	16,594	16,330	16,237
생	4학년	14,316	14,651	15,051	14,426	15,352	16,578	16,281
	5학년	14,433	13,745	13,635	13,880	13,156	14,583	15,374
	6학년	13,647	12,629	11,976	11,807	11,882	11,575	12,408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중학생	20,017	20,817	20,121	19,566	18,156	17,563	16,321
고등학생	3,663	4,006	4,035	4,418	4,377	4,185	3,902
학교 밖	223	211	160	164	123	117	88
기타	-	-	-	-	-	896	-

주: 1) 각 연도 기준 조사 분석 불가능 시설 제외됨(2017년은 기타에 포함).

이용자 특성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 아동 비율이 다소 증가한 반면 외벌이 가정 아동 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 벌이 가구의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일반 아동에 대한 이용 비율 기준 변 경에 따른 영향으로 이해된다. 당초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 형태로 저소 득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났으나 2004년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 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던 초기에는 보편적 아동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센터 이용에 제한을 두어 차별적 복지 정책으로 선회하였으며 2013년에는 100% 취약계층 아동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일반 아동의 이용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현재는 20% 내에서 일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8년 맞벌이 가구 아동 비율이 49%에 달하는 상황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 에 기여하는 부분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이용 자격 기준인 소득 기준이 과거보다 상향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손 가정. 소년·소녀 가장의 이용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나 이들에 대한 돌봄 공백 문제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일반 아동이 입 소 후 주변 아동의 환경 및 주변의 낙인감 문제로 이용을 중단하는 사례

^{2) 2017}년 기타 아동 수는 조사 대상에 포함된 시설이나 조사 당시 폐업 등의 이유로 운영을 하지 않은 시설 이용 아동 수로 조사 실시 이전에 파악된 수치(합계)임.

자료: 보건복지부. (2019c). 2018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pp. 44, 48. 재구성.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함께돌봄센터가 함께 운영되는 시점에 일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며 두 서비스 간의 계층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표 4-24〉 연도별·가정 형태별·양육자 경제활동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전체	108,357(100.0)	108,936(100.0)	106,668(100.0)	109,568(100.0)	
	소계	68,192(62.9)	72,668(66.8)	72,120(67.6)	73,992(67.5)	
014.0	맞벌이 가정	38,066(35.1)	44,501(40.8)	48,948(45.9)	53,708(49.0)	
양부모 가정	아버지만 경제활동	21,938(20.2)	20,935(19.2)	17,532(16.4)	15,563(14.2)	
118	어머니만 경제활동	5,961(5.5)	5,254(4.9)	4,199(3.9)	3,366(3.1)	
	경제활동 안 함	2,227(2.1)	1,978(1.9)	1,441(1.4)	1,355(1.2)	
D.T.	소계	19,416(17.9)	17,592(16.2)	17,672(16.6)	18,579(16.9)	
모자 가정	경제활동 함	16,315(15.1)	15,134(13.9)	15,256(14.3)	15,798(14.4)	
-10	경제활동 안 함	3,101(2.9)	2,458(2.3)	2,416(2.3)	2,781(2.5)	
нт	소계	13,046(12.1)	12,652(11.5)	12,473(11.7)	12,769(11.7)	
부자 가정	경제활동 함	11,465(10.6)	11,332(10.3)	11,212(10.5)	11,573(10.6)	
-10	경제활동 안 함	1,581(1.5)	1,320(1.2)	1,261(1.2)	1,196(1.1)	
T.A.	소계	5,787(5.3)	4,460(4.1)	3,323(3.1)	3,162(2.9)	
조손 가정	경제활동 함	2,384(2.2)	1,979(1.8)	1,620(1.5)	1,530(1.4)	
	경제활동 안 함	3,403(3.1)	2,481(2.3)	1,703(1.6)	1,632(1.5)	
소	년·소녀 가장	543(0.5)	404(0.3)	217(0.2)	193(0.2)	
フ E	l(친척 및 시설)	1,373(1.3)	1,160(1.1)	863(0.8)	873(0.8)	

주: 분석 불가능 시설 및 항목별 응답 오류 시설 제외됨.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타 기관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약 49%가 지역아동센터 이외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이용과 함께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초등돌봄교실과 함께 이용하는 비율은 3.5% 내외로 낮았다. 이는 방과후학교는 대부분 수익자부담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중복 이용이 가능하지만 초등돌봄교실은 정부지원 돌봄 서비스로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중복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대부분 오후 5시에 종료하며 이후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은 서비스 중복 이용 제한으로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 간의 이용 연계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에 최소 이용 시간 3시간 기준이 삭제되어 돌봄 서비스 간연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 측면이 있다.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협의체는 시도별로 상황은 다르나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초등학생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접근성으로 학교 근처 센터가 아닌 경우 센터까지의 이동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다수의 센터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각 학교에서 아동들을 센터로 데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차량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학교내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고 이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하는 것은 어렵다. 일부 학생의 경우 차량 시간을 맞추기위해 방과 후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타 기관 이용 현황(2017~2018년)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전체	107,682(100.0)	109,568(100.0)
지역아동센터만 이용하는 아동	54,971(51.0)	56,351(51.4)
지역아동센터 + 방과후학교 이용 아동	31,613(29.4)	30,529(27.9)
지역아동센터 + 학원 등 민간 기관 이용 아동	17,118(15.9)	18,004(16.5)
지역아동센터 +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3,591(3.4)	4,091(3.7)
지역아동센터 + 방과후보육 이용 아동	240(0.2)	439(0.4)
지역아동센터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아동	149(0.1)	154(0.1)

주: 분석 불가능 시설 및 항목별 응답 오류 시설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3. 다함께돌봄센터

가. 시설 현황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55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13곳이 서울에 설치되어 있다. 제주, 대전 지역에는 현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수는 당초 계획했던 수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복지부는 2018년 17개에서 2019년 223개로 늘리고 2022년까지 1817개로 확대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2022년까지 당초 계획에 따라 1817곳으로 확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6〉 시도별 다함께돌봄센터 수(2019년 6월 말 기준)

(단위: 개, %)

구분	센터 수	비율	해당 시·군·구
전체	55	100.0	-
서울	13	23.6	-강남구(1), 노원구(6), 도봉구(1), 마포구(1), 서대문구(1), 서초구(1), 성동구(1), 성북구(1)
부산	5	9.1	-금정구(1), 연제구(1), 북구(1), 사상구(1), 사하구(1)
대구	1	1.8	-남구(1)
인천	2	3.6	-계양구(1), 부평구(1)
광주	2	3.6	-동구(1), 북구(1)
대전	-	-	-
울산	2	3.6	-북구(2)
세종	3	5.5	-세종시(3)
경기	5	9.1	-성남시(1), 시흥시(1), 오산시(1), 용인시(1), 화성시(1)
강원	7	12.7	-동해시(1), 속초시(2), 원주시(1), 정선군(1), 철원군(1), 춘천시(1)
충북	1	1.8	-진천군(1)
충남	4	7.3	-보령시(1), 서천군(2), 홍성군(1)
전북	1	1.8	-익산시(1)
전남	3	5.5	-광양시(1), 여수시(2)
경북	2	3.6	-영주시(1), 포항시(1)
경남	4	7.3	-진주시(1), 창녕군(2), 창원시(1)
제주	-	-	-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웹사이트]. (2019. 9. 10.). URL: https://www.kcpi.or.kr/

다함께돌봄센터는 운영 역사가 짧아 관련 통계가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2019년 1분기 센터 운영 현황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표 4-27〉과 같다. 당시 조사는 32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32곳 중 19개가 위탁 운영, 12개가 직영, 1개가 공동 운영으로 나타났다. 공동 운영이란 지자체에서 종사자 및 회계 관리를 담당하고, 돌봄 프로그램 및 돌봄서비스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서울시의 00구가 공동 운영하고 있었다. 32곳 중 19곳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식을 제공하는 센터는 25개, 중식을 제공하는 센터는 2개, 저녁을 제공하는 센터는 5개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이용료는 무료이나급·간식 등은 수익자 부담으로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1~7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오후 6시가 의무이나 각 센터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센터가 학기 중에는 6시간 이상, 방학 중에는 9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초 방학 중 기본 운영 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로 일하는 부모의 근무 시간을 모두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센터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지원 예산 등의 문제로 운영 시간 자체를 늘리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장애 아동 돌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일반 아동과 동일한 조건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 아동 돌봄으로 인한 돌봄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가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7〉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

구분	센터 수	구분	센터 수
운영 방식		급·간식 실시 여부	
- 위탁	19	- 간식	25
- 직영	12	- 중식	2
- 공동 운영	1	- 석식	5
이용료 실시 여부			
- 미실시	19		
- 실시	13		
운영 시간(학기 중)		운영 시간(방학 중)	
· 4시간	1	· 6시간	1
· 5시간	2	· 7시간	1
· 6시간	7	· 8시간	2
• 7시간	6	· 9시간	16
· 8시간	1	· 10시간	6
· 9시간	9	· 11시간	2
· 11시간	1	· 12시간	1
· 기타	5	· 13시간	1
		· 기타	2

주: 1) 2019년 1분기 보건복지부 센터 운영 현황 조사 시점 기준으로 전국의 총 32곳에 대한 수치임.

나. 이용자 현황

2019년 1분기 보건복지부 센터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상시 돌봄 이용 아동은 539명, 일시 돌봄 이용 아동은 465명이었다. 다만 상시 돌봄 아동은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이나 일시 돌봄 아동은 유동적인 상황으로 일시 돌봄 아동은 중복으로 집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센터 정원의 10% 내외를 상시 돌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 00센터의 경우 20명 정원에 18명은 상시 돌봄으로, 2명은 일시 돌봄

²⁾ 공동 운영(운영 방식): 지자체에서 종사자 및 회계 관리를 담당하고, 돌봄 프로그램 및 돌봄 서비스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형태

³⁾ 기타(운영 시간): 1시간 단위가 아닌 30분 단위 등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를 뜻함(예: 9시간 30분)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웹사이트]. (2019. 9. 10.) URL: https://www.kcpi.or.kr/

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아동 성별이나 학년별 이용 아동 현황 자료도 일시 돌봄 아동이 중복으로 집계된 결과이기 때문에 전체 이용 아동의 성비나 학년에 따른 비율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상시 돌봄 아동만을 기준으로 할 때 32개 센터의 경우 센터당 평균 16.8 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월 15일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상시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운영 기준 등은 지자체와 협의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현황

(단위: 명)

구분	내용
전체	1,004
유형별 이용 아동	
- 상시 돌봄	539
- 일시 돌봄	465
이용 아동 성별	
- 남자	419
- 여자	585
학년별 이용 아동	
- 저학년	779
- 고학년	225

주: 2019년 1분기 보건복지부 센터 운영 현황 조사 시점 기준으로 전국의 총 32곳에 대한 수치임.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웹사이트]. (2019. 9. 10.) URL: https://www.kcpi.or.kr/

센터 운영 관계자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이용 자격에 제한 이 없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때 염려되는 낙인 효과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고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사교육을 위한 퇴실과 재입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자의 만족도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용 자격 제한은 없으나 맞벌이, 저학년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5월 이전까지 지자체 매뉴얼은 저학년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맞벌이 가구를 우

선순위에 두는 경향을 보였다. 한번 등록한 학생이 계속 등록을 유지하여 신규 학생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기 중보다는 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방학 동안의 이용을 위해 학기 중에도 이용을 신청하여 등록을 지속시키는 사례도 다 수 있었다. 또한 학기 중에는 정원 내에서도 아이들이 사설 학원 등을 이 용하며 적절히 분산되었으나 방학 기간에는 한 공간에 다수의 아동이 함 께 활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운영 측면에서는 정원 규모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으며, 이용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정상으로 어려움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가. 시설 현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18년 8월 기준으로 전국 260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119개이며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98개,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은 43개로 조사되었다. 상당수 시설들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시설을 개방하기보다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이용 시설을 분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경기 지역에 가장 많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었다.

〈표 4-29〉 지역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2018년 8월 말 기준)

(단위: 개)

ue.		운영	-	
시도	계	초	중	초+중
계	260	119	98	43
서울	24	15	5	4
부산	16	9	6	1
대구	14	10	3	1
인천	9	4	5	-
 광주	5	2	2	1
대전	7	5	2	-
울산	6	-	6	-
세종	3	1	2	-
 경기	44	18	16	10
강원	17	8	8	1
충북	12	8	1	3
충남	18	6	11	1
전북	17	5	8	4
 전남	27	7	16	4
 경북	13	7	3	3
경남	19	10	3	6
제주	9	4	1	4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2011년 이후 운영 현황의 변화를 살펴보면, 총시설이 200개에서 2018 년 260개로 증가하였으며 전남이 17개에서 27개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 밖에 서울이 19개에서 24개로, 경기가 38개에서 44개로 증가하였다. 2011년에 200곳 중 초등생과 중등생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22개로 전체의 약 11%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에는 전체의 약 16.5%가 혼합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대상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혼합 운영 시 초등학생과 중학생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표 4-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단위: 개)

		201	1년			201	2년			201	3년			201	4년			201	5년			201	6년			201	7년			201	8년	
구분	소계	초등	중등	혼합																												
서울	19	17	0	2	20	18	0	2	20	18	2	0	19	15	0	4	24	17	5	2	25	15	5	5	23	13	4	6	24	15	5	4
부산	11	8	3	0	11	8	3	0	11	8	3	0	11	9	2	0	15	9	6	0	15	9	6	0	15	9	6	0	16	9	6	1
대구	9	9	0	0	9	9	0	0	9	9	0	0	10	10	0	0	12	9	2	1	12	9	2	1	13	9	3	1	14	10	3	1
인천	6	2	1	3	6	3	3	0	6	3	3	0	7	4	3	0	8	4	4	0	9	4	5	0	9	4	5	0	9	4	5	0
광주	5	4	1	0	5	4	1	0	6	4	2	0	5	3	2	0	7	3	3	1	7	2	3	2	6	2	2	2	5	2	2	1
대전	5	5	0	0	5	5	0	0	5	5	0	0	5	5	0	0	5	5	0	0	6	5	1	0	6	5	1	0	7	5	2	0
울산	4	2	2	0	5	2	3	0	5	2	3	0	5	0	5	0	6	0	6	0	6	0	6	0	6	0	6	0	6	0	6	0
경기	38	25	6	7	36	25	6	5	37	24	6	7	36	21	10	5	41	22	14	5	43	17	15	11	43	17	14	12	44	18	16	10
강원	11	9	2	0	10	6	2	2	10	6	3	1	10	6	4	0	16	9	7	0	16	8	7	1	16	8	7	1	17	8	8	1
충북	10	10	0	0	10	10	0	0	9	9	0	0	10	10	0	0	11	10	1	0	12	9	2	1	12	9	2	1	12	8	1	3
충남	12	9	3	0	13	9	4	0	11	8	3	0	12	8	4	0	16	8	8	0	16	6	10	0	17	4	12	1	18	6	11	1
전북	16	9	7	0	17	10	6	1	15	7	7	1	15	7	7	1	17	8	7	2	15	6	7	2	16	6	8	2	17	5	8	4
전남	17	10	5	2	17	10	6	1	17	10	6	1	18	8	6	4	23	11	10	2	24	7	12	5	24	7	13	4	27	7	16	4
경북	11	8	1	2	11	7	2	2	12	7	3	2	10	7	2	1	14	10	3	1	13	7	3	3	13	7	3	3	13	7	3	3
경남	18	11	2	5	17	11	2	4	17	10	3	4	17	10	3	4	19	10	5	4	19	11	3	5	19	10	4	5	19	10	3	6
제주	8	5	2	1	8	6	1	1	8	6	1	1	8	6	1	1	8	6	1	1	9	5	1	3	9	5	1	3	9	4	1	4
세종	0	0	0	0	0	0	0	0	2	1	1	0	2	1	1	0	2	1	1	0	3	1	2	0	3	1	2	0	3	1	2	0
계	200	143	35	22	200	143	39	18	200	137	46	17	200	130	50	20	244	142	83	19	250	121	90	39	250	116	93	41	260	119	98	43

자료: e-나라지표 국정모니터링지표. [웹사이트]. (2019. 11. 26.). URL: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505

나. 이용자 현황

2018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260곳에서 총 1만 265명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였으며 이 중 초등생은 약 55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할 뿐만 아니라 초등아동에 대한 돌봄 기능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초등 고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학년 돌봄 공백 해소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표 4-31〉 지역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현황(2018년 8월 말 기준)

(단위: 명)

ПС		이용 대상	
시도	계	초	중
계	10,265	5,530	4,735
서울	940	670	270
부산	640	380	260
대구	530	400	130
인천	360	160	200
광주	180	90	90
대전	250	180	70
울산	240	-	240
세종	120	40	80
경기	1,780	905	875
강원	635	315	320
충북	500	400	100
충남	720	240	480
전북	670	280	390
전남	1,040	350	690
경북	550	350	200
경남	750	510	240
제주	360	260	100

주: 2018년 계획 인원 기준임.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당초 2006년 4200명이 참여하였으며 이에 국고 예산이 77억 원 소요되었으나 2019년 현재 1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 으며 약 224억 원의 국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도별 이용 및 지원 현황

(단위: 개, 명, 억 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원	100	151	185	178	161	200	200
참여 인원	4,200	6,300	7,980	7,560	6,672	8,200	8,060
국고 예산	77	120	150	129	121	155	155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	200						
	200	200	244	250	250	260	280
참여 인원	8,200	8,043	9,490	9,745	9,773	10,742	280 1만 여

주: 인원수(연인원 포함)는 초4~중3에 해당함.

자료: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9). 2019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 매뉴얼.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p. 17.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각 서비스에 대해 중앙과 지역 단위 관리 및 운영 체계와 그에 따른 쟁점을 살펴보고, 시도 단위의 서비스 공급과 이용 현황을 분 석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중앙과 지역 단위 관리 체계 및 운영의 관점에서 서비스 공급의 주체가 교육부인지 교육청인지. 운영의 주체가 교육청인 지 지자체인지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운영에 따른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갈등 구조하에서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학교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시도 단위 공급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지역별 편차가 다소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북, 전남, 제주, 세종 지역이 오후돌봄 서비 스 공급 비율이 높고 부산, 광주, 경기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방과후 연계형의 경우 강원 지역이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이 밖에 충남, 경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돌봄은 전반 적으로 공급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5장에서 돌봄 공백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시간대가 평일 오후 5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시간대 공적 돌봄 서비스의 부재는 돌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초등돌봄 서비스의 적절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돌봄교실의 정책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이고 구 체적인 재정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각 서비스의 정체성 정립과 상생 방안 모색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현재 운용 방식을 지속할 것인지, 다함께돌봄센터와의 공존은 어떠한 방향으로 시도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아

동센터의 경우 지역별로 서비스 질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예산 지원과 집행 등의 구조적 문제로 지 역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지역아동센터를 늘리기 어려운 환경에 다함께돌봄센터 확충도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 는 확대 가능성이 낮아진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기능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여 초등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 투입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고유한 목적성 을 유지하면서도 보편적 복지 이행을 위한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선별적 복지관에 입각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에게 안정적인 교육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 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초등돌봄 정책이 강화되면서 서비스를 일 반 아동에까지 확대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을 차별화할 것인지, 동일한 서비스 제공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일 시 돌봄 및 응급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함께돌봄 센터만이 해당 기능을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학기 중과 방학 기간 중 돌봄 서비스 수요 차이가 극명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는 기간에 따라 공급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부모의 선호와 아동의 선호가 상충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모 의 선호도는 높으나 이는 자율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아동의 선호에 배 치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율적 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마다 대상 연령을 세분화하는 방안, 장애 아동 돌봄 규정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운영 시간 측면에서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방학 기간 운영 시간이 부모의 근로 시간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방학 중 운영 시간 조정 등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밖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초등학생은 5500여 명에 불과하여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서비스로의 기능이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범정부 차원의 온종일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초등아동 대상의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좀 더 적극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늘릴 필요가 있다.

지 5 장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욕구

제1절 초등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 제2절 돌봄 서비스 정책 인지 및 요구도 제3절 소결

5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욕구 〈〈

제1절 초등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

1. 일반 특성

초등학생 자녀를 둔 15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돌봄 실태 및 정책 욕구에 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공적 초등돌봄 서비스의 인지·이용 경험·만족도, 현재 돌봄 실태 및 돌봄 공백의 어려움, 자녀의 희망 돌봄 유형, 공적 초등돌봄 서비스 공급 및 필요 정책에 관한 의견등을 담고 있다.

조사는 전문 조사 업체 등록 패널을 활용하여 2019년 10월 29일~11월 7일약 10일간 실시되었으며, IRB 승인 절차를 사전에 진행하였다. 이조사는 기본적으로 지역 유형(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맞벌이/홑벌이), 초등학생 자녀의 학년[저학년(1~3학년)/고학년(4~6학년)]에 따라 쿼터를 할당하여 진행하였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표를 발송하여 쿼터별 선별 질문을 통해 조사에 부합하는 응답자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대도시는 17개 시도 중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7개 지역을 뜻하며, 중소도시 및 농어촌은 대도시를 제외한 10개 지역(세종특별자치시 포함)의상세 지역인 읍·면·동에 따라 구분하였다. 또한 자녀 학년의 경우, 저학년과 고학년을 중심으로 구분하되 최대한 1~6학년이 고르게 조사될 수있게 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이 가구 내 여러 명일 경우 어린 자녀를 기

준으로 하여 1가구당 1명의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다.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5-1〉과 같다. 전체 표본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가구 비율은 각각 34.4%, 36.9%, 28.7%로 나타났다. 초등아동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령은 35세 이상~49세 이하에 집중되어 있었다. 교육 수준은 88%가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 수에 따른 가구 분포는 1명인 경우, 2명인 경우, 3명 이상인 경우 각각 34.5%, 55.2%, 10.2%로 나타났으며 평균 자녀 수는 대도시 1.72명, 중소도시 1.76명, 농어촌 1.82명이었다.

⁹⁾ 조사 결과, 초등 학년별 인원 범주는 232~282명임.

(표 5-1) 가구 일반 사항

(단위: %)

				(UTI· 70)
구분	대도시 (N=516)	중소도시 (N=554)	농어촌 (N=430)	계 (N=1,5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성별				
여성	46.3	52.7	57.2	777
남성	53.7	47.3	42.8	723
연령				
25~34세	8.3	3.4	5.1	84
35~39세	26.9	24.9	35.3	429
40~44세	35.5	42.1	37.0	575
45~49세	25.4	24.4	18.4	345
50세 이상	3.9	5.2	4.2	67
학력				
고졸 이하	7.6	12.6	16.5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78.7	76.0	74.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13.8	11.4	9.5	175
맞벌이 여부				
맞벌이	53.7	51.6	43.5	750
홑벌이	46.3	48.4	56.5	75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2	8.3	5.6	102
200만~300만 원 미만	8.7	7.4	11.4	135
300만~400만 원 미만	17.6	22.2	24.2	318
400만~500만 원 미만	22.7	21.3	29.1	360
500만~600만 원 미만	19.0	16.8	12.8	246
600만 원 이상	25.8	24.0	17.0	339
총자녀 수				
1명	36.0	33.9	33.5	518
2명	55.6	56.7	52.8	828
3명 이상	8.3	9.4	13.7	154
평균 자녀 수	1.72	1.76	1.82	1,500
학년(응답 대상 자녀)				
초1	17.2	15.3	23.3	274
초2	17.8	15.2	13.0	232
초3	16.5	19.0	12.6	244
초4	15.1	17.0	14.7	235
초5	14.0	14.8	18.4	233
초6	19.4	18.8	18.1	282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2.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가. 서비스 이용 유형

현재 제공되고 있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표 5-2〉에 따르면 제시된 서비스 유형 중 이용 경험이 가장 많은 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로 나타났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아 이용 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점 척도로 조사된 만족도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이 만족(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비율이 가장 높으며,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낮았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매우 불만족 비율이 7%, 대체로 불만족 비율이 18.1%로 불만족 비율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만족 비율은 초등돌봄교실이 가장 낮았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표 5-2〉 돌봄 서비스 경험과 만족도(총괄표)

(단위: %, 명)

	만족도						
구분	이용 경험 있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명)
초등돌봄교실	50.7	2.1	11.8	73.2	12.9	100.0	761
지역아동센터	15.1	7.0	18.1	58.1	16.7	100.0	227
다함께돌봄센터	9.8	6.8	14.3	61.9	17.0	100.0	14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8.3	4.4	11.3	69.5	14.9	100.0	275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앞서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용 여부와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5-3〉과 같다. 대도시 지역일수록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보다 이용 경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연령 특성에 따라서는 40~44세 응답자가 각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았고, 부모가 젊은 경우 이용 경험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학력이 높을수록 이용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는 모든서비스 유형에서 홑벌이 가구보다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초등돌봄교실과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다.

〈표 5-3〉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	
구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전체	50.7	15.1	9.8	18.3
성별				
여성	50.5	16.1	11.8	16.6
남성	51.0	14.1	7.6	20.2
지역				
대도시	53.5	17.8	14.5	25.2
중소도시	47.5	9.9	6.1	14.1
농어촌	51.6	18.6	8.8	15.6
연령				
25~34세	59.5	28.6	22.6	31.0
35~39세	59.2	20.0	12.6	19.3
40~44세	45.4	9.6	7.1	13.9
45~49세	48.1	15.1	7.8	20.6
50세 이상	44.8	14.9	9.0	22.4
학력				
고졸 이하	48.9	16.1	9.4	18.3
대학교 졸(4년제 이하)	50.4	14.6	8.8	16.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54.9	17.7	16.6	30.3
맞벌이 여부				
맞벌이	65.7	18.1	13.7	20.7
홑벌이	35.7	12.1	5.9	16.0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	
구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월평균 가구 소득				_
200만 원 미만	54.9	22.5	7.8	15.7
200만~300만 원 미만	47.4	19.3	4.4	16.3
300만~400만 원 미만	45.6	15.7	8.8	14.8
400만~500만 원 미만	52.5	13.1	10.3	18.6
500만~600만 원 미만	57.7	13.0	9.8	18.7
600만 원 이상	48.7	14.5	13.0	22.7
총자녀 수				
1명	53.5	17.0	11.8	17.2
2명	48.6	14.4	8.1	18.6
3명 이상	53.2	13.0	12.3	20.8
학년(응답 대상 자녀)				
초1	51.1	10.2	6.6	11.7
초2	59.9	18.5	12.1	16.4
초3	48.0	16.0	13.1	20.9
초4	53.2	15.7	8.5	18.3
초5	46.4	19.3	9.9	21.5
_초6	46.8	12.4	9.2	21.6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각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4점 척도로 조사된 만족도의 평균값을 제시하고 있다.10) 이용자 특성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25~34세 연령 부모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4}점 척도에 따른 분석표는 부록에 별도로 제시하고 있음(〈부표 4〉~〈부표 7〉 참조).

〈표 5-4〉 공적 돌봄 서비스별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초등돌봄교실 (N=761)	지역아동센터 (N=227)	다함께돌봄센터 (N=14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N=275)
전체	2.97	2.85	2.89	2.95
성별				
여성	2.96	2.85	2.90	2.98
남성	2.98	2.84	2.87	2.92
지역				
대도시	2.96	2.83	3.01	2.96
중소도시	3.00	2.85	2.88	2.94
농어촌	2.94	2.86	2.66	2.94
연령				
25~34세	3.12	3.00	3.42	3.19
35~39세	2.95	2.77	2.83	2.83
40~44세	2.96	2.93	2.78	2.96
45~49세	2.96	2.88	2.81	2.96
50세 이상	2.93	2.50	2.83	3.07
학력				
고졸 이하	2.99	2.97	2.88	3.06
대학교 졸(4년제 이하)	2.97	2.85	2.88	2.94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2.94	2.71	2.93	2.92
맞벌이 여부				
맞벌이	2.97	2.88	2.83	2.97
홑벌이	2.96	2.79	3.02	2.93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2.98	2.91	2.87	2.88
200만~300만 원 미만	2.89	2.69	2.67	2.86
300만~400만 원 미만	2.98	2.86	2.86	2.83
400만~500만 원 미만	2.97	2.85	3.03	2.88
500만~600만 원 미만	2.94	2.97	2.96	3.07
600만 원 이상	3.00	2.80	2.80	3.05
총자녀 수				
1명	2.94	2.77	2.88	2.91
2명	2.97	2.91	2.88	2.92
3명 이상	3.10	2.80	3.21	3.19
학년(응답 대상 자녀)				
초1	3.07	2.93	3.00	3.06
초2	3.01	2.74	2.96	2.95
초3	2.88	2.87	2.84	2.90
초4	2.97	3.05	2.95	2.98
초5	2.92	2.73	2.87	3.02
초6	2.94	2.80	2.77	2.85

주: 1) 해당 수치는 돌봄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대한 내용임.

²⁾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만족도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중 가장 높게 조사됨에 따라, 기존 자료에서 분석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표 5-5〉, 〈표 5-6〉 참조〉. 기존 분석에 따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중체험 강사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프로그램과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초등학생이 더 높고, 지도자와 시설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중학생이 더 높아 이용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전체 만족도: 청소년

(단위: 점)

만족도 영역	평균(표준 편차)	100점 만점 환산 점수	초등학생	중학생	T
프로그램 만족도	4.26(.59)	85.3	4.31(.58)	4.20(.61)	2.14*
지도자(PM, SM) 만족도	4.32(.58)	86.3	4.28(.58)	4.38(.59)	-2.12*
교과목 강사 만족도	4.34(.55)	86.8	4.36(.54)	4.31(.57)	.89
주중 체험 강사 만족도	4.50(.52)	89.9	4.49(.51)	4.51(.54)	40
시설 환경 만족도	4.38(.57)	87.6	4.34(.57)	4.45(.56)	-2.30*
급식 만족도	3.72(.84)	74.4	3.79(.82)	3.61(.87)	2.48*
전체	4.25(.40)	85.1	-	-	-

주: 1) 평균은 5점 만점 기준.

이어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만족도를 거주지에 따라 살펴본 결과, 교과목, 주중 체험 강사, 시설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중소도시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2) **}p<.01 ***p<.001, Duncan: a>b

자료: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도 및 만족도 조사연구. p.31, p.32. 표 재구성.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표 5-6〉 거주지 크기에 따른 만족도 차이: 청소년

(단위: 점)

만족도 영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F
프로그램 만족도	4.29(.64)	4.25(.57)	4.24(.56)	.44
지도자 만족도	4.28(.61)	4.26(.58)	4.40(.51)	2.84
교과목 강사 만족도	나목 강사 만족도 4.41(.52)a		4.37(.52) _a	7.31***
주중 체험 강사 만족도	4.50(.51) _a	4.39(.54) _b	4.58(.51) _a	5.47**
시설 환경 만족도	시설 환경 만족도 4.38(.58) _a		4.48(.53) _a	6.99***
급식 만족도	3.75(.85)	3.70(.84)	3.70(.83)	.29

주: **p<.01 ***p<.001, Duncan: a>b

자료: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도 및 만족도 조사연구. p.32.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표 5-7》은 현재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공적 돌봄 서비스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만 포함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민간 베이비시터와 함께 개인 돌봄 서비스로 분류하였다. 해당 조사 문항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약 6.7%가 아침돌봄을 이용하고 있고 초등학교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비율은 31.8%로 나타났다. 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 중 하나라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37.5%로 조사되었다. 다함께돌봄 서비스의 경우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현재 공급 숫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이용자 비율은 매우낮았다. 부모 연령이 25~34세인 집단이 유난히 아침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돌봄 이용 비율은 농어촌 지역 거주자, 부모 연령이 낮은 집단,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가 타 집단에 비해 다소 높았다. 저녁돌봄의 경우 대도시 거주 가구, 25~34세 연령의 부모, 맞벌이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가 타 집단에 비해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는 앞서 살펴본

이용 경험 비율과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 아동의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대도시 거주 가구, 맞벌이 가구, 저학년의 경우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녁돌봄은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7〉 현재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구분	아침 돌봄	오후 돌봄	저녁 돌봄	지역 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 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 미	지자체 공적 돌봄 서비스	(명)
이용 인원(명)	100	477	80	95	46	130	18	1,500
전체	6.7	31.8	5.3	6.3	3.1	8.7	1.2	1,500
성별								
여성	6.6	29.3	6.4	6.8	4.1	7.6	1.7	777
남성	6.8	34.4	4.1	5.8	1.9	9.8	0.7	723
지역								
대도시	10.9	30.4	7.6	6.4	5.4	11.2	2.5	516
중소도시	3.2	30.5	2.5	4.5	1.6	7.8	0.2	554
농어촌	6.0	35.1	6.3	8.6	2.1	6.7	0.9	430
연령								
25~34세	25.0	33.3	9.5	13.1	11.9	14.3	8.3	84
35~39세	5.8	38.7	7.0	6.8	4.7	8.2	1.4	429
40~44세	4.5	28.5	3.0	3.8	1.4	7.0	0.2	575
45~49세	7.2	29.0	6.4	8.1	1.4	10.7	1.2	345
50세 이상	4.5	28.4	4.5	7.5	4.5	9.0	0.0	67
학력								
고졸 이하	6.1	25.6	4.4	8.9	2.2	6.7	1.7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6.3	32.0	5.6	5.7	2.6	7.9	1.2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9.7	37.1	4.6	8.0	6.9	15.4	0.6	175
맞벌이 여부		,. <u>-</u>						
맞벌이	8.7	41.5	6.8	6.1	3.1	9.6	1.1	750
홑벌이	4.7	22.1	3.9	6.5	3.1	7.7	1.3	750
월평균 가구 소득	, -							
200만 원 미만	4.9	35.3	7.8	9.8	2.0	8.8	1.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8.1	28.9	6.7	8.9	3.7	5.9	2.2	135
300만~400만 원 미만	5.0	30.2	4.1	9.7	4.1	6.9	1.9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2	35.6	5.3	5.6	2.5	7.8	1.1	360
500만~600만 원 미만	8.9	34.1	4.9	3.3	1.2	7.7	0.8	246
600만 원 이상	9.1	27.7	5.6	4.1	4.1	13.0	0.6	339

구분	아침 돌봄	오후 돌봄	저녁 돌봄	지역 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 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 미	지자체 공적 돌봄 서비스	(명)
총자녀 수								
1명	9.1	29.2	5.8	6.6	2.1	7.1	1.4	518
2명	5.0	32.9	5.7	5.9	2.8	8.7	0.8	828
3명 이상	7.8	35.1	1.9	7.8	7.8	13.6	2.6	154
학년(응답 대상 자녀)								
초1	6.2	39.4	3.6	3.6	2.6	5.8	2.2	274
초2	10.8	43.1	4.7	6.0	4.3	6.9	0.4	232
초3	9.8	30.7	5.3	4.9	4.9	8.6	0.4	244
초4	4.3	30.6	5.1	9.4	1.7	7.7	0.9	235
초5	4.7	27.0	6.9	10.7	3.9	10.7	2.1	233
초6	4.6	20.9	6.4	4.3	1.4	12.1	1.1	282

주: 중복 응답으로 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음.

《표 5-8》은 앞서 분석된 공적 돌봄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약 35.4%가 조부모 등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사설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 도 43.1%로 조사되어 사설 학원을 활용한 돌봄 공백 해소가 매우 일상적 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년, 맞벌이 가구, 고소득 가구의 경우 아이돌보미 등 민간 도우미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저학년, 젊은 부모, 대도시 거주, 고소득 가구는 상대 적으로 조부모 등 친인척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아동 혼자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도시 거주, 젊은 부모, 학력이 낮은 부모, 맞벌이 가구, 소득 200 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아동 혼자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이는 오후돌봄 시간 전부 아동 혼자 있다기보다는 다른 서비스를 이 용함에도 일정 시간 아동 혼자 보내야 하는 시간이 존재하는 경우로 이해 해야 한다. 방과 후에 아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형제자매도 없이 온전히 혼자 있는 아동은 30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마다 혼자 있는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시간과 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초등아동들 중 방과 후에 혼자 지내는 시간 이 존재하는 아동이 21.7%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 돌봄에 대한 공백 문제가 간과할 수준이 아님을 보여 준다. 혼자 있는 아동의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현재 공적 돌봄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이용 현황

7H	아이돌보미/	조부모 등	사설	형제자매	혼자	זורו	(DH)
분	민간 도우미	친인척	학원	같이 있음	있음	기타	(명)
이용 인원(명)	133	531	647	314	326	10	1,500
전체	8.9	35.4	43.1	20.9	21.7	0.7	1,500
성별							
여성	10.3	34.1	39.9	22.4	24.1	0.6	777
남성	7.3	36.8	46.6	19.4	19.2	0.7	723
지역							
대도시	13.6	41.1	48.6	21.3	26.6	0.4	516
중소도시	7.6	31.0	44.8	21.7	22.7	0.5	554
농어촌	4.9	34.2	34.4	19.5	14.7	1.2	430
연령							
25~34세	21.4	45.2	38.1	26.2	28.6	0.0	84
35~39세	9.8	38.5	40.1	19.1	21.7	0.7	429
40~44세	7.3	33.0	47.7	21.6	20.5	0.5	575
45~49세	7.5	35.1	42.9	21.4	22.3	1.2	345
50세 이상	7.5	25.4	31.3	17.9	20.9	0.0	67
학력							
고졸 이하	5.0	22.2	29.4	26.1	25.0	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8.6	36.5	45.1	20.5	21.5	0.8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14.3	41.7	44.6	18.3	20.0	0.6	17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3	43.7	53.1	27.6	28.5	0.7	750
홑벌이	5.5	27.1	33.2	14.3	14.9	0.7	75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7.8	32.4	35.3	17.6	26.5	1.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5.2	29.6	34.8	13.3	20.7	0.7	135
300만~400만 원 미만	6.6	28.0	36.5	20.8	22.0	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7.5	35.8	45.0	19.7	16.7	0.8	360
500만~600만 원 미만	7.7	35.8	43.9	23.2	20.3	1.2	246
600만 원 이상	15.0	44.8	52.5	24.8	26.8	0.6	339
총자녀 수							
1명	9.3	37.8	39.0	8.3	22.6	0.6	518
2명	8.0	35.3	46.4	27.5	21.6	0.7	828
3명 이상	12.3	27.9	39.6	27.9	19.5	0.6	154
학년(응답 대상 자녀)							
초1	11.3	40.5	43.4	13.9	10.6	0.4	274
초2	9.9	38.8	41.8	19.4	18.1	0.9	232
초3	10.7	35.7	48.8	26.6	22.5	1.6	244
초4	8.1	31.9	44.3	20.4	23.0	0.4	235
초5	7.7	37.3	42.5	23.2	26.6	0.0	233
초6	5.7	28.7	38.7	22.7	29.8	0.7	282

주: 중복 응답으로 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음.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표 5-9》는 혼자 있는 아동에 대하여 1주일에 혼자 있는 빈도와 시간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1주일에 혼자 있는 횟수는 3.29회로 조사되었으며 1주일 평균 6.37시간, 1회당 1.94시간으로 2시간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 소득 구간 응답자와 최상위 소득 구간 응답자의 경우 혼자 있는 횟수가 다소 많았으며 부모 학력이 낮은 경우, 농어촌 지역, 맞벌이 가구 아동은 혼자 있는 횟수가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혼자 있는 시간을 살펴보면 대도시,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 맞벌이 가구 아동의 돌봄 공백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아동의 경우 평균 2.78시간 동안 혼자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돌봄 공백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자녀가 혼자 있는 정도

(단위: 일, 시간, %, 명)

구분	주 횟수(일)	전체 시간	1회당 평균 시간	계	(명)
전체	3.29	6.37	1.94	100.0	326
성별(T=1.283)					
여성	3.41	5.62	1.65	100.0	187
남성	3.14	7.37	2.35	100.0	139
지역(F=0.926)					
대도시	3.26	7.03	2.16	100.0	137
중소도시	3.20	6.22	1.94	100.0	126
농어촌	3.57	5.20	1.46	100.0	63
연령(F=0.815)					
25~34세	3.08	6.52	2.12	100.0	24
35~39세	3.48	6.27	1.80	100.0	93
40~44세	3.35	6.14	1.83	100.0	118
45~49세	3.16	6.62	2.09	100.0	77
50세 이상	2.71	7.16	2.64	100.0	14
학력(F=0.456)					
고졸 이하	3.40	5.64	1.66	100.0	45
대학교 졸(4년제 이하)	3.31	6.58	1.99	100.0	246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3.03	5.80	1.91	100.0	35
맞벌이 여부(T=4.388***)					
맞벌이	3.61	7.10	1.97	100.0	214
홑벌이	2.70	4.97	1.84	100.0	112

7.11	エ さん(01)	TJ-11 1171	1-1CF H2 1171	ᅰ	/IH)
구분	주 횟수(일)	전체 시간	1회당 평균 시간	계	(명)
월평균 가구 소득(F=1.280)					
200만 원 미만	3.37	9.36	2.78	100.0	27
200만~300만 원 미만	2.57	4.27	1.66	100.0	28
300만~400만 원 미만	3.21	5.65	1.76	100.0	70
400만~500만 원 미만	3.58	7.10	1.98	100.0	60
500만~600만 원 미만	3.24	6.31	1.95	100.0	50
600만 원 이상	3.40	6.22	1.83	100.0	91
총자녀 수(F=2.774)					
1명	3.09	7.26	2.35	100.0	117
2명	3.50	6.05	1.73	100.0	179
3명 이상	2.87	4.79	1.67	100.0	30
학년(응답 대상 자녀) (F=0.431)					
초1	3.14	4.66	1.48	100.0	29
초2	3.05	6.66	2.18	100.0	42
초3	3.35	7.37	2.20	100.0	55
초4	3.56	6.56	1.84	100.0	54
초5	3.24	6.30	1.94	100.0	62
초6	3.31	6.07	1.83	100.0	84

주: 1) *p<0.05, **p<0.01, ***p<0.001

방과 후 홀로 지내는 아동의 상황을 기존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표 5-10〉, 〈표 5-11〉과 같다. 2018 아동 종합 실태 조사 자료¹¹⁾에서는 방과 후 집에서 맞이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방과 후에 함께 지내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방과 후 집에서 맞이해 주는 사람이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전체 조사 아동의 약 16.7%가 혼자라고 응답하였으며, 만 6~8세, 9~11세의 경우 집에서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각각 7.8%, 10.2%로 조사되었다.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는 비율은 일반가구의 아동보다 수급 가구의 아동, 맞벌이 가구, 한부모·조손 가구의 아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조손 가구의 경우 해당 비율이 약 30.3%에 달해 돌봄 공백이 매우 큰 상황으로 이해되었다.

²⁾ T/F값은 주 횟수(일)에 대한 수치임.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¹¹⁾ 현재 원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KOSIS에 제한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통계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표 5-10〉 평일 방과 후 집에서 맞이해 주는 사람(6~17세)

(단위: %, 명)

											· - · ·	. 70, 07
Ξ	구분	혼자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친척 친지	친구	도우미	방과후 기관	학원 선생님	기타	계
?	<u>던</u> 체	16.7	58.9	11.1	4.8	0.1	1.1	0.1	1.3	5.7	0.2	(2,797)
아동	남자	17.2	57.7	12.1	4.4	0.1	1.4	0.0	1.4	5.4	0.1	(1,449)
성별	여자	16.2	60.2	10.1	5.1	0.2	0.7	0.1	1.1	6.0	0.3	(1,348)
	6~8	7.8	73.5	4.0	9.3	0.6	0.1	0.3	1.4	3.0	0.0	(579)
아동 연령	9~11	10.2	65.5	10.7	4.9	0.0	0.8	0.0	2.6	5.2	0.0	(743)
20	12~17	23.5	49.9	14.2	2.9	0.0	1.6	0.0	0.6	7.0	0.4	(1,476)
- пн	일반	16.4	59.8	10.8	4.5	0.1	1.0	0.1	1.0	6.0	0.2	(2,644)
표본	수급	21.5	43.6	17.4	8.4	0.3	2.0	0.0	5.2	1.2	0.4	(153)
	50% 미만	18.1	53.9	13.4	6.6	0.0	1.8	0.0	2.3	3.4	0.4	(267)
소득	50~100% 미만	14.3	62.3	10.8	5.0	0.1	1.5	0.0	1.3	4.6	0.0	(942)
계층 (중위 소득)	100~150% 미만	16.8	62.3	8.9	3.0	0.0	0.3	0.0	1.3	7.1	0.2	(1,146)
± =)	150% 이상	22.3	45.8	15.2	7.5	0.2	2.0	0.4	0.5	6.1	0.0	(409)
	무응답	3.5	48.3	27.5	8.3	5.3	0.2	0.0	0.0	0.0	7.0	(33)
	대도시	18.9	57.1	11.4	3.2	0.0	1.1	0.1	1.5	6.7	0.0	(1,199)
지역	중소도시	15.4	61.5	9.8	5.4	0.3	1.1	0.0	1.1	5.0	0.4	(1,426)
	농어촌	12.6	50.2	20.7	10.3	0.0	0.9	0.0	0.9	4.1	0.2	(172)
가구	양부모	15.7	61.7	10.9	3.4	0.0	1.0	0.1	1.0	5.9	0.2	(2,599)
유형	한부모· 조손	30.3	21.9	14.3	22.4	1.5	1.9	0.0	4.8	2.4	0.6	(198)
맞벌이	외벌이	8.0	77.3	6.0	2.2	0.2	0.6	0.0	1.3	4.4	0.1	(1,362)
멎힐이 여부	맞벌이	25.3	41.6	16.6	6.1	0.1	1.6	0.1	1.2	7.1	0.3	(1,380)
~11-	기타	17.4	39.7	2.3	33.8	0.2	1.9	0.0	0.8	3.4	0.5	(55)

주: 보호자 응답 기준.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아동종합실태조사(2018년). [웹사이트]. (2019. 11. 29.). URL: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_A081& conn_path=13

2018 아동 종합 실태 조사에서 방과 후 함께 지내는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한 결과 혼자 지낸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10.6%로 집에서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교 후 집에서 맞아 주는 사람은 없으나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부모나 형제자매와 함께 지내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방과 후 온전히 혼자 지낸다고 응답한 비율은 만 6~8세, 만 9~11세의 경우 각각 3.4%, 5.8%로 조사되었다. 이는 본 조사의 연구 결과보다 혼자 있는 아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1500명 중 온전히 혼자 있는 아동은 3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혼자 지내는 아동의 비율은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대도시, 맞벌이 가구, 한부모·조손 가구의 경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 한부모·조손 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5-11〉 평일 방과 후 함께 지내는 사람(6~17세)

(단위: %, 명)

=	구분	혼자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친척 친지	친구	도우미	방과후 기관	학원 선생님	기타	계
7	전체	10.6	51.5	12.5	4.5	0.1	4.6	0.0	1.1	14.2	0.8	(2,797)
아동	남자	10.9	51.9	13.3	3.9	0.1	4.6	0.0	1.0	13.3	0.9	(1,449)
성별	여자	10.3	51.0	11.6	5.1	0.2	4.6	0.0	1.1	15.2	0.8	(1,348)
아동	6~8	3.4	72.5	5.4	9.4	0.6	0.8	0.1	1.4	6.5	0.0	(579)
연령	9~11	5.8	54.7	14.5	4.4	0.0	3.9	0.0	1.5	15.3	0.0	(743)
	12~17	15.9	41.6	14.3	2.6	0.0	6.5	0.0	0.8	16.8	1.6	(1,476)
표본	일반	10.3	52.1	12.1	4.3	0.1	4.5	0.0	0.8	14.9	0.9	(2,644)
——	수급	15.8	41.0	19.3	7.5	0.4	7.2	0.0	6.0	2.5	0.4	(153)
	50% 미만	12.3	50.6	14.7	7.5	0.1	5.8	0.0	2.4	6.2	0.3	(267)
소득	50~100% 미만	9.7	59.1	10.8	5.2	0.1	4.0	0.1	1.2	9.6	0.2	(942)
계층 (중위 소득)	100~150% 미만	10.9	49.2	13.3	2.7	0.0	4.3	0.0	0.5	18.3	0.8	(1,146)
エーノ	150% 이상	11.7	40.7	11.4	5.6	0.2	6.1	0.0	1.7	19.9	2.8	(409)
	무응답	0.0	55.2	27.5	8.3	5.3	3.7	0.0	0.0	0.0	0.0	(33)
	대도시	12.5	53.0	12.8	2.9	0.0	3.2	0.1	0.6	14.6	0.3	(1,199)
지역	중소도시	9.3	50.8	11.3	5.0	0.3	5.8	0.0	1.4	14.8	1.3	(1,426)
	농어촌	8.2	46.7	19.7	11.3	0.0	4.3	0.0	1.6	7.1	1.2	(172)
가구	양부모	9.5	53.7	12.3	3.2	0.0	4.5	0.0	0.7	15.0	0.9	(2,599)
유형	한부모· 조손	24.7	21.8	14.9	21.3	1.6	5.9	0.3	5.7	3.5	0.1	(198)
맞벌이	외벌이	5.6	66.3	8.2	1.9	0.2	4.2	0.0	1.5	11.9	0.0	(1,362)
멎힐이 여부	맞벌이	15.4	37.6	17.0	5.8	0.1	4.9	0.0	0.7	16.9	1.6	(1,380)
~~~	기타	12.8	33.3	4.0	35.6	0.2	8.4	0.0	0.9	4.4	0.5	(55)

주: 보호자 응답 기준.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아동종합실태조사(2018년). [웹사이트]. (2019. 11. 29.). URL: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_A081&conn_path=13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능한 한 집에서 돌보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함', '서비스 제공 시간과 원하는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6.2%, 15.3%였다(〈표 5-12〉참조). 이 밖에 '신청했는데 떨어져서 이용하지 못함'이라고 응답한 경우 등을 고려하면 현재 미이용자의 약 35.1%가 이용 의사가 있음에도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년별 특성을 살펴보면 저학년의 경우 고학년보다 서비스 질에 대한 염려로 이용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반면 고학년은 저학년에 비해 서비스 제공 시간과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 —	, -,
구분	1	2	3	4	(5)	6	7	8	계	(명)
전체	46.2	3.7	16.2	8.1	3.3	15.3	4.4	2.7	100.0	813
성별(x ² =17.778*)										
여성	44.3	3.2	20.9	8.4	2.5	13.9	4.3	2.5	100.0	440
남성	48.5	4.3	10.7	7.8	4.3	16.9	4.6	2.9	100.0	373
지역(x ² =15.722)										
대도시	46.8	3.7	14.2	9.0	3.7	17.6	3.7	1.1	100.0	267
중소도시	46.3	3.1	16.4	9.0	3.1	12.3	5.2	4.6	100.0	324
농어촌	45.5	4.5	18.5	5.9	3.2	16.7	4.1	1.8	100.0	222
연령(x ² =37.537)										
25~34세	28.2	0.0	38.5	15.4	2.6	10.3	2.6	2.6	100.0	39
35~39세	50.0	4.8	14.3	9.0	3.8	12.9	3.8	1.4	100.0	210
40~44세	44.7	4.0	16.4	8.2	2.7	15.2	5.2	3.6	100.0	329
45~49세	48.7	3.1	14.0	7.3	3.1	17.1	3.6	3.1	100.0	193
50세 이상	45.2	2.4	14.3	0.0	7.1	23.8	7.1	0.0	100.0	42
학력(x ² =38.595***)										
고졸 이하	42.9	1.8	27.7	4.5	2.7	13.4	5.4	1.8	100.0	112
대학교 졸(4년제 이하)	47.2	4.2	14.7	9.0	3.3	15.8	4.1	1.8	100.0	614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43.7	2.3	12.6	6.9	4.6	13.8	5.7	10.3	100.0	87

구분	1	2	3	4	(5)	6	7	8	계	(명)
맞벌이 여부(x ² =51.916***)										
맞벌이	35.0	4.2	13.2	11.7	4.2	21.0	6.6	4.2	100.0	334
홑벌이	54.1	3.3	18.4	5.6	2.7	11.3	2.9	1.7	100.0	479
월평균 가구 소득										
$(x^2=46.928)$										
200만 원 미만	32.7	8.2	20.4	10.2	4.1	10.2	12.2	2.0	100.0	49
200만~300만 원 미만	46.9	6.2	19.8	4.9	3.7	14.8	1.2	2.5	100.0	81
300만~400만 원 미만	44.7	1.7	20.1	7.3	5.6	11.2	5.6	3.9	100.0	179
400만~500만 원 미만	48.1	1.1	13.7	8.2	3.3	19.7	4.4	1.6	100.0	183
500만~600만 원 미만	50.4	4.0	16.8	7.2	0.8	14.4	4.8	1.6	100.0	125
600만 원 이상	46.4	5.6	12.2	10.2	2.6	16.8	2.6	3.6	100.0	196
총자녀 수(x ² =19.280)										
1명	45.2	3.9	15.2	9.9	5.7	13.4	4.6	2.1	100.0	283
2명	47.4	3.6	16.5	8.0	1.6	15.1	4.7	3.1	100.0	449
3명 이상	43.2	3.7	18.5	2.5	4.9	22.2	2.5	2.5	100.0	81
학년(응답 대상 자녀)										
(x ² =64.148**)										
초1	48.1	8.5	18.6	7.0	0.8	9.3	5.4	2.3	100.0	129
초2	52.6	5.2	17.5	12.4	3.1	5.2	1.0	3.1	100.0	97
초3	38.9	4.8	14.3	10.3	3.2	23.8	3.2	1.6	100.0	126
초4	39.3	1.4	17.9	7.9	6.4	17.1	7.1	2.9	100.0	140
초5	56.2	1.5	16.8	4.4	2.9	13.9	3.6	0.7	100.0	137
조6	44.6	2.2	13.6	8.2	3.3	18.5	4.9	4.9	100.0	184

주: 1) *p〈0.05, **p〈0.01, ***p〈0.001

2) 상기 표의 각 항목(번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가능한 한 집에서 돌보고 싶어서(부모, 아이돌보미, 민간 도우미, 조부모 등 친인척 등)
- ② 신청했는데 떨어져서 이용하지 못함
- ③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함
- ④ 서비스 내용과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를 이용하기 위해서
- ⑥ 학교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과 원하는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학원 이용, 퇴근 후 픽업 시간 등)
- ⑦ 현재 학교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 ⑧ 기타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학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집에서 돌보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5-13〉 참조). 뒤이어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서비스 제공 시간과

원하는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2.5%, 12.9%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1.3%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미이용자의 약 36.6%는 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공 기관까지의 이동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까지 고려하면 이용의사가 있는 비율은 44.1%까지 높아진다.

학년별 특성을 살펴보면, 저학년의 경우 서비스 질과 이동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고학년보다 높은 반면, 고학년은 학교 돌봄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 시간과 원하는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저학년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처럼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음에도 다양한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서비스 수요 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저학년의 경우 학교 돌봄은 서비스 질, 지역사회 돌봄은 서비스 질과 함께 이동에 따른 문제, 고학년의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표 5-13〉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구분	1	2	3	4	(5)	6	7	8	9	10	계	(명)
전체	37.1	12.5	11.3	4.8	7.6	7.5	12.9	1.2	3.9	1.3	100.0	1,277
성별(x ² =18.137*)												
여성	36.8	10.5	14.3	5.0	7.4	8.1	11.6	1.2	3.9	1.2	100.0	665
남성	37.4	14.5	8.0	4.6	7.8	6.9	14.4	1.1	3.9	1.3	100.0	612
지역(x ² =31.065*)												
대도시	37.4	13.0	9.7	5.0	9.7	5.7	14.5	0.9	3.3	0.7	100.0	422
중소도시	39.5	10.0	13.3	3.9	7.4	6.1	12.5	1.4	4.5	1.2	100.0	488
농어촌	33.5	15.0	10.4	5.7	5.4	11.4	11.7	1.1	3.8	1.9	100.0	367
연령(x ² =59.831**)												
25~34세	29.0	9.7	14.5	9.7	11.3	12.9	8.1	0.0	3.2	1.6	100.0	62
35~39세	34.7	11.6	12.7	5.8	9.1	11.0	9.1	1.7	4.1	0.3	100.0	363
40~44세	36.9	14.3	11.1	4.3	7.4	5.1	13.5	1.0	4.5	2.0	100.0	512

구분	1	2	3	4	(5)	6	7	8	9	10	계	(명)
45~49세	42.2	12.5	10.1	3.1	5.9	5.6	15.3	1.0	2.8	1.4	100.0	287
50세 이상	37.7	3.8	5.7	5.7	3.8	11.3	26.4	1.9	3.8	0.0	100.0	53
학력(x ² =28.201)												
고졸 이하	42.0	14.0	12.7	5.1	5.1	4.5	8.9	3.2	2.5	1.9	100.0	157
대학교 졸(4년제 이하)	36.7	11.8	11.7	4.5	8.1	7.4	13.7	0.9	4.2	0.9	100.0	982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34.8	15.2	6.5	6.5	6.5	11.6	11.6	0.7	3.6	2.9	100.0	138
맞벌이 여부(x ² =91.958***)												
맞벌이	26.4	15.1	9.1	5.7	9.3	10.2	17.3	0.9	4.7	1.3	100.0	636
홑벌이	47.7	9.8	13.4	3.9	5.9	4.8	8.6	1.4	3.1	1.2	100.0	641
월평균 가구 소득												
(x ² =106.803***)												
200만 원 미만				-			13.4	_	7.3	1.2	100.0	82
200만~300만 원 미만	39.5	14.0	11.4	8.8	5.3	3.5	10.5	3.5	1.8	1.8	100.0	114
300만~400만 원 미만	33.3	10.1	16.9	3.7	6.4	7.5	12.7	1.5	6.4	1.5	100.0	267
400만~500만 원 미만	37.5	18.4	9.7	4.2	8.1		11.0		3.2	0.3	100.0	309
500만~600만 원 미만			-		9.6		12.8		4.6	0.9	100.0	219
600만 원 이상	39.5	8.7	8.0	5.6	8.0	10.1	16.1	0.0	1.7	2.1	100.0	286
총자녀 수(x ² =36.541**)												
1명	-	_				7.3	12.2	2.4	3.8	0.7	100.0	450
2명	36.6	12.1	12.6	4.1	6.8		13.6		4.2	1.7	100.0	708
3명 이상	42.9	18.5	10.9	5.0	0.8	6.7	11.8	0.0	2.5	0.8	100.0	119
학년(응답 대상 자녀)												
(x ² =98.477***)												
초1							6.8	2.4	4.4	0.4	100.0	249
초2	34.8	15.4	11.9	2.5	10.0	11.4	7.0	0.5	6.0	0.5	100.0	201
초3	30.8	13.5	7.7	9.1	8.2	7.2	17.8	1.0	3.4	1.4	100.0	208
초4	0.	-	15.5		9.8		13.4	0.5	3.6	0.5	100.0	194
초5		10.7		2.7	4.8		16.6	1.1	3.2	0.5	100.0	187
조6	40.3		10.5	4.2	6.3	5.9	16.8	1.3	2.9	3.8	100.0	238

주: 1) *p<0.05, **p<0.01, ***p<0.001

2) 상기 표의 각 항목(번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가능한 한 집에서 돌보고 싶어서(부모, 아이돌보미, 민간 도우미, 조부모 등 친인척 등)
- ②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③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함
- ④ 신청했는데 떨어져서 이용하지 못함
- ⑤ 서비스 내용과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⑥ 서비스 제공 기관까지의 이동이 어려워서
- ⑦ 서비스 제공 시간과 원하는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학원 이용, 퇴근 후 픽업 등)
- ⑧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 ⑨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취약계층 등)
- ⑩ 기타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 나. 서비스 이용 시간

다음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시간을 분석하였다. 학교 돌봄 서비스의 경우 아침돌봄은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돌봄과 저녁돌봄은 종료 시간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아침돌봄 이용자의 약65%는 맞벌이, 35%는 홑벌이였고 맞벌이의 경우 약30%는 8시 이전에 아침돌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자의 약52%가 8시 이전에 아침돌봄을 이용하고 있으며 48%는 8시 이후부터 아침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후돌봄의 경우 이용자의 65.1%는 맞벌이로, 나머지는 홑벌이로 나타 났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오후 5시 또는 그 이후까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 는 비율은 약 44.7%였으며 홑벌이도 37.4%가 오후 5시 또는 그 이후까지 오후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돌봄의 경우 이용 자가 80명으로 많지 않았으며 이들 중 63.7%는 맞벌이 가구 아동으로 조사 되었다. 저녁돌봄은 대부분 오후 6시 이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가구는 오후 9시 이후까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표 5-14〉학교 돌봄 서비스 유형별 현재 이용 시간(이용자에 한함)

	구분			벌이	홑	벌이	계
		전체	100.0	(65)	100.0	(35)	100
	아침 시작 돌봄 시간	7:00 이전	9.2	(6)	51.4	(18)	24
		7:01~7:30	3.1	(2)	5.7	(2)	4
20		7:31~8:00	29.2	(19)	14.3	(5)	24
		8:01 이후	58.5	(38)	28.6	(10)	48
		전체	100.0	(311)	100.0	(166)	477
오후 돌봄		15:00 이전	30.2	(94)	43.4	(72)	166
		15:01~15:30	4.2	(13)	4.8	(8)	21

	구	분	맞벌	<u> </u>	홑빎	널이	계
		15:31~16:00	15.4	(48)	9.0	(15)	63
		16:01~16:30	5.5	(17)	5.4	(9)	26
		16:31~17:00	20.6	(64)	15.1	(25)	89
		17:01 이후	24.1	(75)	22.3	(37)	112
		전체	100.0	(51)	100.0	(29)	80
	18:00 이전	45.1	(23)	62.1	(18)	41	
		18:01~18:30	5.9	(3)	-	-	3
		18:31~19:00	13.7	(7)	13.8	(4)	11
저녁 <u>돌</u> 봄	종료 시간	19:01~19:30	5.9	(3)	-	-	3
	'-	19:31~20:00	19.6	(10)	13.8	(4)	14
		20:01~20:30	-	-	6.9	(2)	2
		20:31~21:00	5.9	(3)	-	-	3
		21:01 이후	3.9	(2)	3.4	(1)	3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이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초등학교의 오후돌봄 이후 시간보다는 방과 후에 바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은 대부분 오후 7시 이전이었으며 늦어도 오후 8시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이용자가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나 대부분 오후 3시 이전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이한 점은 맞벌이 가구보다 홑벌이 가구 아동의 이용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오후 7시 이전에 대부분의 아동이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는 반면 홑벌이 가구 아동은 오후 6시 이전에 대부분이 서비스 이용을 마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서비스 이용 시간대 분포를 살펴본바 대부분의 가구에서 오후 7시 이전에 돌봄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일부 가구의 경우 늦은 시간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5-15〉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유형별 현재 이용 시간(이용자에 한함)

(단위: 명)

						종료	시간				
	7	분	18:00 이전	18:01~ 18:30	18:31~ 19:00	19:01~ 19:30	19:31~ 20:00	20:01~ 20:30	20:31~ 21:00	21:01 이후	소계
		15:00 이전	29	1	1						(31)
		15:01~15:30	1								(1)
		15:31~16:00	3		2						(5)
	맞	16:01~16:30		1							(1)
	맞 벌 이	16:31~17:00	3		1		1		1		(6)
	0	17:01~17:30									(0)
		17:31~18:00									(0)
지역 아동		18:01 이후					1			1	(2)
이동 센터		소계 (명)	(36)	(2)	(4)	-	(2)	-	(1)	(1)	(46)
		15:00 이전	26	1	3		2	1			(33)
시작 시간		15:01~15:30	2								(2)
		15:31~16:00	1				2				(3)
	호	16:01~16:30	1	2							(3)
	홑 벌 이	16:31~17:00	1				4				(5)
	0	17:01~17:30									-
		17:31~18:00					1				(1)
		18:01 이후					1		1		(2)
		소계 (명)	(31)	(3)	(3)	-	(10)	(1)	(1)	-	(49)
		15:00 이전	6		2						(8)
		15:01~15:30	1								(1)
		15:31~16:00	3								(3)
	막	16:01~16:30		3							(3)
	맞 벌 이	16:31~17:00	2								(2)
	0	17:01~17:30				3					(3)
뎌		17:31~18:00			1						(1)
5점 돌봄 센터		18:01 이후					1	1			(2)
센터		소계 (명)	(12)	(3)	(3)	(3)	(1)	(1)	-	-	(23)
		15:00 이전	16	1		1					(18)
시작 시간		15:01~15:30	1								(1)
시간		15:31~16:00		1							(1)
	혿	16:01~16:30									-
	홑벌	16:31~17:00									-
	0	17:01~17:30									-
		17:31~18:00									-
		18:01 이후				1	1		1		(3)
		소계 (명)	(17)	(2)	-	(2)	(1)	-	(1)	-	(23)
가근 0	1 01 7		1 ' > = c	1===	1 21-11 -	וובני וו	0ユビ 2	z 11'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 다. 돌봄 공백

학기 중과 방학 기간에 대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돌봄 공백 해소의 어려움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어려울수록 점수가 높으며 이에 대한 평균값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학기 중 오후, 방학 중 오후, 방학 중 오전, 학기 중 오전 순으로 돌봄 공백 해소의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년과 맞벌이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돌봄 공백 해소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 방학 오전 시간에 돌봄 공백 어려움이 고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6〉 시기별 돌봄 공백의 어려움 정도(4점 척도)

(단위: 점, %, 명)

	학기	중	방호	<b>부</b> 중		
구분	 평	일	평	일	계	(명)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전체	1.71	2.07	1.99	2.02	100.0	1,500
성별						
여성	1.66	2.01	1.97	2.03	100.0	777
남성	1.77	2.13	2.02	2.01	100.0	723
지역						
대도시	1.73	2.07	1.95	1.94	100.0	516
중소도시	1.68	2.07	1.99	2.03	100.0	554
농어촌	1.72	2.07	2.05	2.11	100.0	430
연령						
25~34세	1.75	2.01	1.98	1.96	100.0	84
35~39세	1.72	2.17	2.03	2.09	100.0	429
40~44세	1.70	2.04	2.00	2.05	100.0	575
45~49세	1.72	2.04	1.97	1.93	100.0	345
50세 이상	1.60	1.88	1.84	1.85	100.0	67
학력						
고졸 이하	1.68	1.90	1.84	1.90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1.71	2.09	2.04	2.05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1.75	2.11	1.87	1.95	100.0	17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75	2.23	2.17	2.20	100.0	750
홑벌이	1.67	1.90	1.82	1.84	100.0	750

154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학기	중	방학	 남 중		
구분	평	일	평	일	계	(명)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1.75	2.13	1.96	1.99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1.77	2.08	1.99	1.96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1.75	2.02	2.00	2.03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1.73	2.15	2.08	2.11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1.59	2.00	1.99	2.04	100.0	246
600만 원 이상	1.71	2.06	1.91	1.95	100.0	339
총자녀 수						
1명	1.72	2.06	1.99	1.98	100.0	518
2명	1.72	2.10	2.03	2.08	100.0	828
3명 이상	1.62	1.90	1.84	1.88	100.0	154
학년(응답 대상 자녀)						
초1	1.78	2.24	2.12	2.19	100.0	274
초2	1.70	2.08	2.05	2.06	100.0	232
초3	1.77	2.13	2.04	2.01	100.0	244
초4	1.74	2.06	1.97	2.03	100.0	235
초5	1.57	1.94	1.90	1.90	100.0	233
초6	1.70	1.94	1.89	1.93	100.0	282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응답자 중 어렵다(다소 어려움, 매우 어려움)고 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평일 오후돌봄에 대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방학 기간 어려움이 있다고 한 비율보다 높았다(〈표 5-17〉 참조). 특히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방학 때보다 학기 중 평일 오후 시간에 돌봄 공백 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비해 월등히 돌봄 공백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이할 점은 방학 기간보다 학기 중 평일 오후의 돌봄 공백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 비율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는 것이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경우 돌봄 공백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고학년에서도 응답자의 25% 내외가 학기 중 오후와 방학 기간에 돌봄 공백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초등 고학년의 경우에도 상당수가구에서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7〉 시기별 돌봄 공백의 어려움 비율(다소 어려움 + 매우 어려움)

(단위: %, 명)

					(단위: %, 명)
		│ 중		† 중	
구분	평	일	평	일	(명)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전체	13.4	30.7	26.8	28.2	1,500
성별					
여성	11.7	27.7	25.5	28.4	777
남성	15.2	34.0	28.2	27.9	723
지역					
대도시	13.4	30.2	23.4	23.8	516
중소도시	12.3	31.0	27.3	28.5	554
농어촌	14.9	30.9	30.2	33.0	430
연령					
25~34세	17.9	26.2	22.6	26.2	84
35~39세	16.3	38.2	28.9	31.7	429
40~44세	12.0	28.0	27.3	29.6	575
45~49세	11.3	29.3	26.1	23.2	345
50세 이상	11.9	19.4	17.9	22.4	67
학력					
고졸 이하	12.8	21.7	21.1	22.2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13.6	31.3	28.2	29.2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12.6	36.6	23.4	28.0	175
맞벌이 여부			_		
맞벌이 	15.7	39.7	36.1	37.7	750
홈벌이	11.1	21.7	17.5	18.7	75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14.7	36.3	24.5	25.5	102
200만~300만 원 미만	16.3	31.1	30.4	25.2	135
300만~400만 원 미만	14.2	27.7	24.8	26.1	318
400만~500만 원 미만	14.2	34.4	29.4	31.4	360
500만~600만 원 미만	9.8	27.2	28.0	32.1	246
600만 원 이상	13.0	30.4	24.2	26.0	339
총자녀 수	-0	0			
1명	14.3	29.7	25.1	24.9	518
2명	13.2	32.7	28.5	30.9	828
- 3명 이상	11.7	23.4	23.4	24.7	154
학년(응답 대상 자녀)	1117	23.1	23.1	211,	1,71
초1	19.0	40.1	32.1	35.4	274
조? 초2	12.5	31.0	30.6	31.0	232
<del>立</del> 3	16.8	32.8	26.2	25.0	244
조4	12.3	28.1	26.0	29.8	235
초5	7.3	27.9	24.0	23.6	233
초6	11.7	24.1	22.0	24.1	282
	11./				202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돌봄 공백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어려운 시간대를 조사하였다. 학기 중과 방학 기간에 대해 오전과 오후 시간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오전 시간대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는 〈표 5-18〉과 같다. 오전 시간대의 경우 학기 중 오전 7시 이전에 돌봄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도 35.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오전 8시 이전에 돌봄 공백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약 69.1%로 나타났다. 방학 중에는 돌봄의 어려움이 있는 시간대가 다소 늦어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학기 중에는 수업이 있으나, 방학 중에는 수업이 없기 때문에 오전 시간오롯이 돌봄 공백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18〉 돌봄 공백 해소가 어려운 시간대(학기 중과 방학 기간 평일 오전)

(단위: 명)

	구분			종료	시간		
학기 중	중 평일 오전	(N=201)	7:30 이전	7:31~ 8:00	8:01~ 8:30	8:31 이후	소계
		7:00 이전	6	13	7	16	(42)
	맞	7:01~7:30		1	9	2	(12)
	맞 벌 이	7:31~8:00		1	5	28	(34)
	0	8:01 이후				30	(30)
시작		소계	(6)	(15)	(21)	(76)	(118)
시간		7:00 이전	19	4	5	2	(30)
	홑	7:01~7:30			2	2	(4)
	홑 벌 이	7:31~8:00		2	2	13	(17)
	0	8:01 이후				32	(32)
		소계	(19)	(6)	(9)	(49)	(83)
방학 중	중 평일 오전	(N=402)	8:00 이전	8:01~ 9:00	9:01~ 10:00	10:01 이후	소계
		7:00 이전	2	11	5	18	(36)
	맞	7:01~7:30	1	5	1	5	(12)
	맞 벌 이	7:31~8:00		7	7	55	(69)
	0	8:01 이후			5	149	(154)
시작		소계	(3)	(23)	(18)	(227)	(271)
시간		7:00 이전	16	4	1	7	(28)
	홑	7:01~7:30					-
	홑 벌 이	7:31~8:00		7	5	25	(37)
	ا ۱	8:01 이후				66	(66)
		소계	(16)	(11)	(6)	(98)	(131)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학기 중과 방학 기간의 오후 시간에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는 〈표 5-19〉와 같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학기 중에는 오후 5시 이후에 돌봄 공백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로 맞벌이 가구의 대부분은 초등 오후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이후에 돌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방학 기간에도 돌봄 공백 해소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간은 대부분 오후 5시 이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9〉 돌봄 공백 해소가 어려운 시간대(학기 중과 방학 기간 평일 오후)

(단위: 명)

		 구분			종료 시간			(211 0)
		· 평일 오후 =461)	15:00 이전	15:01 16:00	16:01 17:00	17:01 18:00	18: <u>0</u> 1 이후	소계
		14:00 이전	10	10	17	24	25	(86)
		14:01~15:00		12	10	21	15	(58)
	맞 벌 이	15:01~16:00			6	25	25	(56)
	히	16:01~17:00			1	10	34	(45)
		17:01 이후				2	51	(53)
시작		소계	(10)	(22)	(34)	(82)	(150)	(298)
시간		14:00 이전	20	9	17	16	8	(70)
	_	14:01~15:00		7	11	6	6	(30)
	홑 벌 이	15:01~16:00		1	3	13	7	(24)
		16:01~17:00				8	13	(21)
		17:01 이후				2	16	(18)
		소계	(20)	(17)	(31)	(45)	(50)	(163)
		등 평일 오후 =423)	15:00 이전	15:01~ 16:00	16:01~ 17:00	17:01~ 18:00	18:01 이후	소계
		14:00 이전	30	23	20	63	75	(211)
		14:01~15:00		3	2	5	7	(17)
	밝	15:01~16:00			2	9	13	(24)
	맞 벌 이	16:01~17:00				4	13	(17)
	'	17:01 이후				1	13	(14)
시작		소계	(30)	(26)	(24)	(82)	(121)	(283)
시간		14:00 이전	21	13	22	20	31	(107)
	_	14:01~15:00		2	6		1	(9)
	L M	15:01~16:00			1	4	4	(9)
홑   벌   이	16:01~17:00				6	7	(13)	
	ا ا	17:01 이후					2	(2)
		소계	(21)	(15)	(29)	(30)	(45)	(140)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 제2절 돌봄 서비스 정책 인지 및 요구도

#### 1. 서비스 인지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에 대한 인지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사례보다 '조금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사례보다 '조금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사례가 많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한 결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해 조금 알고 있으나, 실제이용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서비스를 유형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구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0) 돌봄 서비스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모름	거의 모름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계	(명)
초등돌봄교실	3.4	7.6	56.3	32.7	100.0	1,500
지역아동센터	9.3	27.1	47.3	16.3	100.0	1,500
다함께돌봄센터	24.5	41.7	26.9	6.9	100.0	1,5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1	32.7	37.1	10.1	100.0	1,500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응답자 특성별로 서비스 유형별 인지 정도를 살펴보면 〈표 5-21〉과 같다. 돌봄 서비스에 대해 '조금 알고 있음' 또는 '잘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 서비스를 인지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인지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제시하였다.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인지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농어촌 지역, 홑벌이 가구, 1자녀 가구의 인지 비율은 다소 낮았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중 가장 높은 인지 비율을 보였으며 농어촌 지역, 저학력 부모,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인지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활성화된 서비스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중 인지 비율이 가장 낮았다. 연령이 낮은 부모, 학력이 낮은 부모,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가구,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서비스 인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모든 서비스 유형에 대해 맞벌이 가구가 홑벌이 가구보다 서비스 인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1〉 돌봄 서비스별 인지 비율(잘 알고 있음 + 조금 알고 있음)

구분	초등 <u>돌</u> 봄 교실	지역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계	(명)
전체	89.0	63.7	33.8	47.1	100.0	1,500
성별						
여성	94.0	71.3	35.8	46.6	100.0	777
남성	83.7	55.5	31.7	47.7	100.0	723
지역						
대도시	90.3	62.8	38.4	50.0	100.0	516
중소도시	90.4	63.4	31.0	46.9	100.0	554
농어촌	85.6	65.1	31.9	44.0	100.0	430
연령						
25~34세	89.3	75.0	50.0	58.3	100.0	84
35~39세	90.7	67.1	36.6	45.9	100.0	429
40~44세	89.4	60.0	29.9	44.7	100.0	575
45~49세	87.0	61.4	33.0	50.4	100.0	345
50세 이상	85.1	70.1	32.8	44.8	100.0	67
학력						
고졸 이하	93.3	70.6	41.1	56.1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88.1	61.5	32.0	44.4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90.3	70.9	38.3	56.0	100.0	175
맞벌이 여부						
맞벌이	93.2	68.8	37.3	52.4	100.0	750
홑벌이	84.8	58.5	30.3	41.9	100.0	750

구분	초등 <u>돌</u> 봄 교실	지역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계	(명)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88.2	69.6	31.4	45.1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84.4	62.2	30.4	42.2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90.3	63.2	31.1	43.7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87.5	60.0	30.3	44.7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90.2	65.0	35.4	45.9	100.0	246
600만 원 이상	90.6	65.8	41.0	56.3	100.0	339
총자녀 수						
1명	85.1	61.4	36.7	47.9	100.0	518
2명	90.5	64.6	31.4	46.4	100.0	828
3명 이상	94.2	66.2	37.0	48.7	100.0	154
학년(응답 대상 자녀)						
초1	90.1	62.8	35.8	44.2	100.0	274
초2	91.4	66.4	37.1	41.8	100.0	232
초3	88.5	63.9	34.8	47.5	100.0	244
초4	89.4	58.7	30.6	46.8	100.0	235
초5	86.3	62.7	32.6	48.5	100.0	233
초6	88.3	67.0	31.9	53.2	100.0	282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 2. 서비스 요구도 및 지불 의사

다음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가 몇 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응답자의 40.7%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까지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4%, 5.4%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6.9%인 데반해 홑벌이는 44.4%로 나타나 홑벌이 가구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에서도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초등돌봄 서비스 전 학년 확대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보인다.

〈표 5-22〉 바람직한 학교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 학년

	(명)
전체 4.4 5.4 22.4 20.5 6.7 40.7 100.0 1.	500
	,500
성별(x ² =37.910***)	
여성 4.5 6.4 25.7 23.3 4.8 35.3 100.0 7	777
남성 4.3 4.3 18.8 17.4 8.7 46.5 100.0 7	723
지역(x ² =11.378)	
대도시 4.8 6.8 22.3 19.6 8.1 38.4 100.0 5	516
	554
농어촌 3.0 5.3 23.0 20.9 4.9 42.8 100.0 4	430
연령(x ² =44.153**)	
25~34세 8.3 4.8 25.0 17.9 2.4 41.7 100.0	84
35~39세 5.6 7.2 22.8 21.9 4.4 38.0 100.0 4	429
40~44 <del>4</del>   3.5 6.4 24.9 20.5 7.1 37.6 100.0 5	575
	345
	67
학력(x ² =10.463)	
	180
	,145
	175
맞벌이 여부(x ² =10.104)	
맞벌이 4.1 5.7 24.4 21.5 7.3 36.9 100.0 7	750
	750
월명균 기구 소득(x²=34.207)	
200만 원 미만 4.9 4.9 15.7 21.6 5.9 47.1 100.0 1	102
	135
	318
	360
	246
	339
총자녀 수(x ² =19.384*)	
1명 5.4 4.8 18.1 18.1 7.3 46.1 100.0 5	518
	828
	154
학년(응답 대상 자녀)	
$(x^2=136.903***)$	
초1   8.8   8.0   32.8   20.4   1.8   28.1   100.0   2	274
초2   2.2   10.3   28.0   21.6   6.5   31.5   100.0   2	232
초3   4.5   2.5   27.9   21.7   8.2   35.2   100.0   2	244
	235
<u>\$\bar{x}\$5\$ 4.7 6.4 11.2 15.5 8.6 53.6 100.0 2</u>	233
<u>\$\bar{\pi}\$6</u> 2.1 1.8 16.3 23.0 6.7 50.0 100.0 2	282

주: *p<0.05, **p<0.01,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다음은 현재 초등 자녀에 대해 희망하는 돌봄 유형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이용 희망'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서비스 수요자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돌보거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가장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3) 희망하는 주된 돌봄 유형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명)
①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46.0	10.8	56.8	822
②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민간 도우미, 조부모, 친인척 등을 이용한 개별 돌봄	11.9	22.8	34.7	457
③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이용	30.1	26.9	57.0	780
④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이용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	6.0	21.8	27.8	356
⑤ 학원 등 사교육 기관 이용	5.9	17.8	23.7	306
⑥ 기타	-	-	-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희망하는 돌봄 서비스 유형 1순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 5-24〉와 같다. 가구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상대적으로 학교 돌봄, 지역사회 돌봄 희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년은 저학년에 비해 학원 등 사교육 기관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학교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이 부모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보다 높게 조사되어 맞벌이 가구, 저소득 가구의 학교 돌봄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표 5-24〉 희망하는 주된 돌봄 유형(1순위)

전체 46.0 11.9 30.1 6.0 5.9 100.0 1,500 성별(x²=1.915) 여성 46.0 11.9 31.3 5.3 5.9 100.0 777 남성 45.6 11.9 31.3 5.3 5.9 100.0 723 지역(x²=13.386) 대도시 47.9 13.6 28.5 5.2 4.8 100.0 516 중소도시 48.6 11.4 28.2 6.0 6.0 100.0 554 농어촌 40.5 10.7 34.7 7.0 7.2 100.0 430 연령(x²=19.992) 25-34세 42.9 14.3 34.5 4.8 3.6 100.0 84 35-39세 42.9 11.9 32.9 7.0 5.4 100.0 429 40-44세 47.7 10.3 29.6 4.7 7.8 100.0 575 45-49세 47.2 14.5 27.0 7.5 3.8 100.0 345 50세 이상 49.3 10.4 28.4 4.5 7.5 100.0 67 학력(x²=8.280) 고졸 이하 45.6 10.0 29.4 7.8 7.2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46.1 12.9 30.0 5.5 5.5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45.7 7.4 32.0 7.4 7.4 100.0 175 맞벌이 34.0 14.0 36.8 7.5 7.7 100.0 750 월명교 가구 소득(x²=36.794*) 2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360 500만~5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360 500만~5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360 500만~5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39 총자녀 수(x²=22.721**) 119 41.7 14.5 31.5 6.6 5.8 100.0 518 28 3명 이상 44.8 9.7 27.9 12.3 5.2 100.0 518							( '	^소 위· %, 명)
성별(x²=1.915) 여성 46.3 12.0 29.1 6.7 5.9 100.0 777 남성 45.6 11.9 31.3 5.3 5.9 100.0 723 지역(x²=13.386) 대도시 47.9 13.6 28.5 5.2 4.8 100.0 516 중소도시 48.6 11.4 28.2 6.0 6.0 100.0 554 농어촌 40.5 10.7 34.7 7.0 7.2 100.0 430 연령(x²=19.992) 25~34세 42.9 14.3 34.5 4.8 3.6 100.0 84 35~39세 42.9 11.9 32.9 7.0 5.4 100.0 429 40~44세 47.7 10.3 29.6 4.7 7.8 100.0 575 45~49세 47.2 14.5 27.0 7.5 3.8 100.0 345 50세 이상 49.3 10.4 28.4 4.5 7.5 100.0 67 학력(x²=8.280) 고졸 이하 45.6 10.0 29.4 7.8 7.2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46.1 12.9 30.0 5.5 5.5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45.7 7.4 32.0 7.4 7.4 100.0 175 맞벌이 여부(x²=88.018***) 맞벌이 34.0 14.0 36.8 7.5 7.7 100.0 750 흩벌이 58.0 9.9 23.5 4.5 4.1 100.0 750 흩벌이 58.0 9.9 23.5 4.5 4.1 100.0 750 흩벌이 58.0 9.9 23.5 4.5 4.1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6.9 10.3 32.5 5.0 5.3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8차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명	구분	1	2	3	4	(5)	계	(명)
여성 46.3 12.0 29.1 6.7 5.9 100.0 777 남성 45.6 11.9 31.3 5.3 5.9 100.0 723 지역(x²=13.386)  대도시 47.9 13.6 28.5 5.2 4.8 100.0 516 중소도시 48.6 11.4 28.2 6.0 6.0 100.0 554 농어촌 40.5 10.7 34.7 7.0 7.2 100.0 430 연령(x²=19.992)  25~34세 42.9 14.3 34.5 4.8 3.6 100.0 84 35~39세 42.9 11.9 32.9 7.0 5.4 100.0 429 40~44세 47.7 10.3 29.6 4.7 7.8 100.0 575 45~49세 54.2 14.5 27.0 7.5 3.8 100.0 575 45~49세 47.2 14.5 27.0 7.5 3.8 100.0 345 50세 이상 49.3 10.4 28.4 4.5 7.5 100.0 67 학력(x²=8.280)  교졸 이하 45.6 10.0 29.4 7.8 7.2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46.1 12.9 30.0 5.5 5.5 100.0 1.145 대학교 9(4년제 부분) 45.7 7.4 32.0 7.4 7.4 100.0 175 맛벌이 여부(x²=88.018***) 맛벌이 여부(x²=88.018***) 맛벌이 여부(x²=88.018***) 맛벌이 58.0 9.9 23.5 4.5 4.1 100.0 750 활명균 가구 소득(x²=36.794*) 200만 원 미만 39.2 7.8 37.3 9.8 5.9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3.9 16.7 32.5 5.0 5.3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88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8	전체	46.0	11.9	30.1	6.0	5.9	100.0	1,500
남성 45.6 11.9 31.3 5.3 5.9 100.0 723 지역(x²=13.386)  대도시 47.9 13.6 28.5 5.2 4.8 100.0 516 중소도시 48.6 11.4 28.2 6.0 6.0 100.0 554 농어촌 40.5 10.7 34.7 7.0 7.2 100.0 430 연령(x²=19.992) 25~34세 42.9 14.3 34.5 4.8 3.6 100.0 84 35~39세 42.9 11.9 32.9 7.0 5.4 100.0 429 40~44세 47.7 10.3 29.6 4.7 7.8 100.0 575 45~49세 47.2 14.5 27.0 7.5 3.8 100.0 575 45~49세 47.2 14.5 27.0 7.5 3.8 100.0 345 50세 이상 49.3 10.4 28.4 4.5 7.5 100.0 67 학력(x²=8.280) 고졸 이하 45.6 10.0 29.4 7.8 7.2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46.1 12.9 30.0 5.5 5.5 100.0 1,145 대학교 졸(4년제 약 포함) 45.7 7.4 32.0 7.4 7.4 100.0 175 맞벌이 여부(x²=88.018***) 맞벌이 여부(x²=88.018***) 맞벌이 58.0 9.9 23.5 4.5 4.1 100.0 750 콜램고 가구 소득(x²=36.794*) 200만 원 미만 39.2 7.8 37.3 9.8 5.9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750 콜램고 가구 소득(x²=36.794*)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0.3 32.5 5.0 5.3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총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성별(x ² =1.915)							
지역(x²=13.386) 대도시 47.9 13.6 28.5 5.2 4.8 100.0 516 중소도시 48.6 11.4 28.2 6.0 6.0 100.0 554 농어촌 40.5 10.7 34.7 7.0 7.2 100.0 430 연령(x²=19.992) 25-34세 42.9 14.3 34.5 4.8 3.6 100.0 84 35-39세 42.9 11.9 32.9 7.0 5.4 100.0 429 40-44세 47.7 10.3 29.6 4.7 7.8 100.0 575 45-49세 47.2 14.5 27.0 7.5 3.8 100.0 575 50세 이상 49.3 10.4 28.4 4.5 7.5 100.0 67 학력(x²=8.280) 고졸 이하 45.6 10.0 29.4 7.8 7.2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46.1 12.9 30.0 5.5 5.5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45.7 7.4 32.0 7.4 7.4 100.0 175 맞벌이 여부(x²=88.018***) 맞벌이 형부(x²=88.018***) 맞벌이 34.0 14.0 36.8 7.5 7.7 100.0 750 활병교 가구 소득(x²=36.794*) 200만 원 미만 39.2 7.8 37.3 9.8 5.9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6.9 10.3 32.5 5.0 5.3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총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명	여성	46.3	12.0	29.1	6.7	5.9	100.0	777
대도시 47.9 13.6 28.5 5.2 4.8 100.0 516 중소도시 48.6 11.4 28.2 6.0 6.0 100.0 554 농어촌 40.5 10.7 34.7 7.0 7.2 100.0 430 연령(x²=19.992)  25~34세 42.9 14.3 34.5 4.8 3.6 100.0 84 35~39세 42.9 11.9 32.9 7.0 5.4 100.0 429 40~44세 47.7 10.3 29.6 4.7 7.8 100.0 575 45~49세 47.2 14.5 27.0 7.5 3.8 100.0 345 50세 이상 49.3 10.4 28.4 4.5 7.5 100.0 67 학력(x²=8.280)  교졸 이하 45.6 10.0 29.4 7.8 7.2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46.1 12.9 30.0 5.5 5.5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45.7 7.4 32.0 7.4 7.4 100.0 175 맞벌이 여부(x²=88.018***)  맞벌이 여부(x²=88.018***) 맞벌이 명부(x²=88.018***) 맞벌이 34.0 14.0 36.8 7.5 7.7 100.0 750 활명교 가구 소득(x²=36.794*)  200만 원 미만 39.2 7.8 37.3 9.8 5.9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339 총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8	남성	45.6	11.9	31.3	5.3	5.9	100.0	723
중소도시 48.6 11.4 28.2 6.0 6.0 100.0 554 남어촌 40.5 10.7 34.7 7.0 7.2 100.0 430 연령(x²=19.992)  25~34세 42.9 14.3 34.5 4.8 3.6 100.0 84 35~39세 42.9 11.9 32.9 7.0 5.4 100.0 429 40~44세 47.7 10.3 29.6 4.7 7.8 100.0 575 45~49세 47.2 14.5 27.0 7.5 3.8 100.0 345 50세 이상 49.3 10.4 28.4 4.5 7.5 100.0 67 학력(x²=8.280)  교졸 이하 45.6 10.0 29.4 7.8 7.2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46.1 12.9 30.0 5.5 5.5 100.0 1.145 대학원 이상(대학 포함) 45.7 7.4 32.0 7.4 7.4 100.0 175 맞벌이 여부(x²=88.018***) 맞벌이 여부(x²=88.018***) 맞벌이 34.0 14.0 36.8 7.5 7.7 100.0 750 출발이 가구 소득(x²=36.794*) 200만 원 미만 39.2 7.8 37.3 9.8 5.9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6.9 10.3 32.5 5.0 5.3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총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8	지역(x ² =13.386)							
동어촌 40.5 10.7 34.7 7.0 7.2 100.0 430 연령(x²=19.992)  25~34세 42.9 14.3 34.5 4.8 3.6 100.0 84 35~39세 42.9 11.9 32.9 7.0 5.4 100.0 429 40~44세 47.7 10.3 29.6 4.7 7.8 100.0 575 45~49세 47.2 14.5 27.0 7.5 3.8 100.0 345 50세 이상 49.3 10.4 28.4 4.5 7.5 100.0 67 학력(x²=8.280)  교졸 이하 45.6 10.0 29.4 7.8 7.2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46.1 12.9 30.0 5.5 5.5 100.0 1.145 대학원 이상(대학 포함) 45.7 7.4 32.0 7.4 7.4 100.0 175 맞벌이 여부(x²=88.018***)  맛벌이 34.0 14.0 36.8 7.5 7.7 100.0 750 출발이 가구 소득(x²=36.794*)  200만 원 미만 39.2 7.8 37.3 9.8 5.9 100.0 135 300만 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 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 500만 원 미만 46.9 10.3 32.5 5.0 5.3 100.0 318 400만 500만 원 미만 46.9 10.3 32.5 5.0 5.3 100.0 339 총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8	대도시	47.9	13.6	28.5	5.2	4.8	100.0	516
연령(x²=19.992) 25~34세 42.9 14.3 34.5 4.8 3.6 100.0 84 35~39세 42.9 11.9 32.9 7.0 5.4 100.0 429 40~44세 47.7 10.3 29.6 4.7 7.8 100.0 575 45~49세 47.2 14.5 27.0 7.5 3.8 100.0 345 50세 이상 49.3 10.4 28.4 4.5 7.5 100.0 67 학력(x²=8.280) 고졸 이하 45.6 10.0 29.4 7.8 7.2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46.1 12.9 30.0 5.5 5.5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45.7 7.4 32.0 7.4 7.4 100.0 175 맞벌이 여부(x²=88.018***) 맞벌이 경4.0 14.0 36.8 7.5 7.7 100.0 750 홀병교 가구 소득(x²=36.794*) 200만 원 미만 39.2 7.8 37.3 9.8 5.9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75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339 총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명 48.9 10.7 29.7 4.5 6.2 100.0 828	중소도시	48.6	11.4	28.2	6.0	6.0	100.0	554
25~34세 42.9 14.3 34.5 4.8 3.6 100.0 84 35~39세 42.9 11.9 32.9 7.0 5.4 100.0 429 40~44세 47.7 10.3 29.6 4.7 7.8 100.0 575 45~49세 47.2 14.5 27.0 7.5 3.8 100.0 345 50세 이상 49.3 10.4 28.4 4.5 7.5 100.0 67 학력(x²=8.280) 고졸 이하 45.6 10.0 29.4 7.8 7.2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46.1 12.9 30.0 5.5 5.5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45.7 7.4 32.0 7.4 7.4 100.0 175 맞벌이 여부(x²=88.018***) 맞벌이 34.0 14.0 36.8 7.5 7.7 100.0 750 출범이 58.0 9.9 23.5 4.5 4.1 100.0 750 월평균 가구 소득(x²=36.794*) 200만 원 미만 39.2 7.8 37.3 9.8 5.9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3.9 16.7 32.5 5.0 5.3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총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명	농어촌	40.5	10.7	34.7	7.0	7.2	100.0	430
35~39세 42.9 11.9 32.9 7.0 5.4 100.0 429 40~44세 47.7 10.3 29.6 4.7 7.8 100.0 575 45~49세 47.2 14.5 27.0 7.5 3.8 100.0 345 50세 이상 49.3 10.4 28.4 4.5 7.5 100.0 67 학력(x²=8.280) 교졸 이하 45.6 10.0 29.4 7.8 7.2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46.1 12.9 30.0 5.5 5.5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45.7 7.4 32.0 7.4 7.4 100.0 175 맞벌이 여부(x²=88.018***) 맞벌이 58.0 9.9 23.5 4.5 4.1 100.0 750 출범이 58.0 9.9 23.5 4.5 4.1 100.0 750 월평균 가구 소득(x²=36.794*) 200만 원 미만 39.2 7.8 37.3 9.8 5.9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3.9 16.7 32.5 5.0 5.3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총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명 48.9 10.7 29.7 4.5 6.2 100.0 828	연령(x ² =19.992)							
40~44세 47.7 10.3 29.6 4.7 7.8 100.0 575 45~49세 47.2 14.5 27.0 7.5 3.8 100.0 345 50세 이상 49.3 10.4 28.4 4.5 7.5 100.0 67 학력(x²=8.280) 고졸 이하 45.6 10.0 29.4 7.8 7.2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46.1 12.9 30.0 5.5 5.5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45.7 7.4 32.0 7.4 7.4 100.0 175 맞벌이 여부(x²=88.018***) 맞벌이 34.0 14.0 36.8 7.5 7.7 100.0 750 출벌이 58.0 9.9 23.5 4.5 4.1 100.0 750 월평균 가구 소득(x²=36.794*) 200만 원 미만 39.2 7.8 37.3 9.8 5.9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3.9 16.7 32.5 5.0 5.3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총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명 48.9 10.7 29.7 4.5 6.2 100.0 828	25~34세	42.9	14.3	34.5	4.8	3.6	100.0	84
45~49세 47.2 14.5 27.0 7.5 3.8 100.0 345 50세 이상 49.3 10.4 28.4 4.5 7.5 100.0 67 학력(x²=8.280) 고졸 이하 45.6 10.0 29.4 7.8 7.2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46.1 12.9 30.0 5.5 5.5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45.7 7.4 32.0 7.4 7.4 100.0 175 맞벌이 여부(x²=88.018***) 맞벌이 정부(x²=88.018***) 맞벌이 58.0 9.9 23.5 4.5 4.1 100.0 750 출발이 가구 소득(x²=36.794*) 200만 원 미만 39.2 7.8 37.3 9.8 5.9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6.9 10.3 32.5 5.0 5.3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종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8	35~39세	42.9	11.9	32.9	7.0	5.4	100.0	429
50세 이상 49.3 10.4 28.4 4.5 7.5 100.0 67 학력(x²=8.280) 고졸 이하 45.6 10.0 29.4 7.8 7.2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46.1 12.9 30.0 5.5 5.5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45.7 7.4 32.0 7.4 7.4 100.0 175 맞벌이 여부(x²=88.018***) 맞벌이 58.0 9.9 23.5 4.5 4.1 100.0 750 출범이 58.0 9.9 23.5 4.5 4.1 100.0 750 월평균 가구 소득(x²=36.794*) 200만 원 미만 39.2 7.8 37.3 9.8 5.9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3.9 16.7 32.5 5.0 5.3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종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명 48.9 10.7 29.7 4.5 6.2 100.0 828	40~44세	47.7	10.3	29.6	4.7	7.8	100.0	575
학력(x²=8.280) 고졸 이하 45.6 10.0 29.4 7.8 7.2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46.1 12.9 30.0 5.5 5.5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45.7 7.4 32.0 7.4 7.4 100.0 175 맞벌이 여부(x²=88.018***) 맞벌이 58.0 9.9 23.5 4.5 4.1 100.0 750 월평균 가구 소득(x²=36.794*) 200만 원 미만 39.2 7.8 37.3 9.8 5.9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3.9 16.7 32.5 5.0 5.3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총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명 48.9 10.7 29.7 4.5 6.2 100.0 828	45~49세	47.2	14.5	27.0	7.5	3.8	100.0	345
학력(x²=8.280) 고졸 이하 45.6 10.0 29.4 7.8 7.2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46.1 12.9 30.0 5.5 5.5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45.7 7.4 32.0 7.4 7.4 100.0 175 맞벌이 여부(x²=88.018***) 맞벌이 34.0 14.0 36.8 7.5 7.7 100.0 750 홑벌이 58.0 9.9 23.5 4.5 4.1 100.0 750 월평균 가구 소득(x²=36.794*) 200만 원 미만 39.2 7.8 37.3 9.8 5.9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3.9 16.7 32.5 5.0 5.3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총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명 48.9 10.7 29.7 4.5 6.2 100.0 828	50세 이상	49.3	10.4	28.4	4.5	7.5	100.0	67
대학교 졸(4년제 이하) 46.1 12.9 30.0 5.5 5.5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45.7 7.4 32.0 7.4 7.4 100.0 175 맞벌이 여부(x²=88.018***) 맞벌이 34.0 14.0 36.8 7.5 7.7 100.0 750 출범이 58.0 9.9 23.5 4.5 4.1 100.0 750 월평균 가구 소득(x²=36.794*) 200만 원 미만 39.2 7.8 37.3 9.8 5.9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6.9 10.3 32.5 5.0 5.3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종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명 48.9 10.7 29.7 4.5 6.2 100.0 828	학력(x ² =8.280)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45.7 7.4 32.0 7.4 7.4 100.0 175 맞벌이 여부(x²=88.018***) 맞벌이 34.0 14.0 36.8 7.5 7.7 100.0 750 흩벌이 58.0 9.9 23.5 4.5 4.1 100.0 750 월평균 가구 소득(x²=36.794*) 200만 원 미만 39.2 7.8 37.3 9.8 5.9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6.9 10.3 32.5 5.0 5.3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종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명 48.9 10.7 29.7 4.5 6.2 100.0 828	고졸 이하	45.6	10.0	29.4	7.8	7.2	100.0	180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45.7 7.4 32.0 7.4 7.4 100.0 175 맞벌이 여부(x²=88.018***) 맞벌이 34.0 14.0 36.8 7.5 7.7 100.0 750 흩벌이 58.0 9.9 23.5 4.5 4.1 100.0 750 월평균 가구 소득(x²=36.794*) 200만 원 미만 39.2 7.8 37.3 9.8 5.9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6.9 10.3 32.5 5.0 5.3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종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명 48.9 10.7 29.7 4.5 6.2 100.0 828	대학교 졸(4년제 이하)	46.1	12.9	30.0	5.5	5.5	100.0	1,145
맞벌이 여부(x²=88.018***) 맞벌이 34.0 14.0 36.8 7.5 7.7 100.0 750 홑벌이 58.0 9.9 23.5 4.5 4.1 100.0 750 길평균 가구 소득(x²=36.794*) 200만 원 미만 39.2 7.8 37.3 9.8 5.9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6.9 10.3 32.5 5.0 5.3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종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명 48.9 10.7 29.7 4.5 6.2 100.0 828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45.7	7.4	32.0	7.4	7.4	100.0	175
출범이 58.0 9.9 23.5 4.5 4.1 100.0 750 월평균 가구 소득(x²=36.794*) 200만 원 미만 39.2 7.8 37.3 9.8 5.9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6.9 10.3 32.5 5.0 5.3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종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명 48.9 10.7 29.7 4.5 6.2 100.0 828								
월평균 가구 소득(x²=36.794*) 200만 원 미만 39.2 7.8 37.3 9.8 5.9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6.9 10.3 32.5 5.0 5.3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종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명 48.9 10.7 29.7 4.5 6.2 100.0 828	맞벌이	34.0	14.0	36.8	7.5	7.7	100.0	750
월평균 가구 소득(x²=36.794*) 200만 원 미만 39.2 7.8 37.3 9.8 5.9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6.9 10.3 32.5 5.0 5.3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종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명 48.9 10.7 29.7 4.5 6.2 100.0 828	홑벌이	58.0	9.9	23.5	4.5	4.1	100.0	750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6.9 10.3 32.5 5.0 5.3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총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명 48.9 10.7 29.7 4.5 6.2 100.0 828	월평균 가구 소득(x ² =36.794*)							
300만~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6.9 10.3 32.5 5.0 5.3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총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명 48.9 10.7 29.7 4.5 6.2 100.0 828	200만 원 미만	39.2	7.8	37.3	9.8	5.9	100.0	102
300만~400만 원 미만 47.2 9.7 28.6 6.6 7.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46.9 10.3 32.5 5.0 5.3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총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명 48.9 10.7 29.7 4.5 6.2 100.0 828	200만~300만 원 미만	47.4	8.1	26.7	11.1	6.7	100.0	135
400만~500만 원 미만 46.9 10.3 32.5 5.0 5.3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총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명 48.9 10.7 29.7 4.5 6.2 100.0 828	300만~400만 원 미만		9.7	28.6	6.6	7.9	100.0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총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명 48.9 10.7 29.7 4.5 6.2 100.0 828	400만~500만 원 미만	46.9	10.3	32.5	5.0		100.0	
600만 원 이상 46.9 15.0 26.5 5.9 5.6 100.0 339 총자녀 수(x²=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명 48.9 10.7 29.7 4.5 6.2 100.0 828	500만~600만 원 미만	43.9	16.7	32.5	2.4	4.5	100.0	246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2명 48.9 10.7 29.7 4.5 6.2 100.0 828	600만 원 이상	46.9			5.9	5.6	100.0	339
2명 48.9 10.7 29.7 4.5 6.2 100.0 828	총자녀 수(x ² =22.721**)							
	1명	41.7	14.5	31.5	6.6	5.8	100.0	518
3명 이상 44.8 9.7 27.9 12.3 5.2 100.0 154	2명	48.9	10.7	29.7	4.5	6.2	100.0	828
	3명 이상	44.8	9.7	27.9	12.3	5.2	100.0	154
학년(응답 대상 자녀)	학년(응답 대상 자녀)							
$(x^2=28.873)$	(x ² =28.873)							
초1   47.8   10.9   32.5   5.1   3.6   100.0   274	초1	47.8	10.9	32.5	5.1	3.6	100.0	274
壺2   47.4   12.1   31.5   4.7   4.3   100.0   232	초2	47.4	12.1	31.5	4.7	4.3	100.0	232
조3   44.7   10.7   33.2   4.9   6.6   100.0   244	초3	44.7	10.7	33.2	4.9	6.6	100.0	244
초4   44.3   9.4   34.9   5.1   6.4   100.0   235	초4	44.3	9.4		5.1	6.4	100.0	235
초5   48.1   15.0   19.7   8.6   8.6   100.0   233	초5	48.1	15.0	19.7	8.6	8.6	100.0	
<u>\$\bar{\pi}6\$</u> 44.0 13.5 28.7 7.4 6.4 100.0 282	초6	44.0	13.5	28.7	7.4	6.4	100.0	282

주: 1) *p<0.05, **p<0.01, ***p<0.001 2) 상기 표의 각 항목(번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 ②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민간 도우미, 조부모, 친인척 등을 이용한 개별 돌봄
- ③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이용
- ④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이용
- ⑤ 학원 등 사교육 기관 이용
- ⑥ 기타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희망 돌봄 유형에 대해 기존에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 조사에서 분석된 결과를 살펴보면 〈표 5-25〉와 같다. 분석 결과 저학년일수록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한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공 인프라(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다만 현재 이용 비율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 자료의 분석 결과와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의 차이점은 부모 돌봄과 사교육 이용을 통한 돌봄 희망 비율이다.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 조사의 경우 부모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이전체 초등아동의 약 10.6%에 불과하고, 사교육 기관을 이용한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이 4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조사 방법, 시기, 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12)

¹²⁾ 본 연구를 위한 조사의 경우 초등아동 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표집되어 온라인 조사로 실시된 반면, 2018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 조사는 2016 인구 주택 총 조사를 표본 추출 틀로 선정하여 1 대 1 면접 조사로 이루어짐.

〈표 5-25〉 초등학생 자녀의 학년별 희망 주간 돌봄 유형(아동 기준)

(단위: %, 명)

구분	초등돌봄 ·방과후	공공 인프라	사설 교육 기관	부모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37.5	7.1	41.8	10.6	2.3	0.7	100.0	(5,021)
1학년	48.6	5.7	30.3	11.5	3.0	0.9	100.0	(880)
2학년	45.3	5.9	34.1	11.3	2.5	1.0	100.0	(886)
3학년	37.3	7.0	41.7	12.2	1.4	0.4	100.0	(810)
4학년	35.1	8.0	44.8	9.2	2.2	0.7	100.0	(852)
5학년	31.4	7.4	47.4	9.9	3.0	0.9	100.0	(822)
6학년	25.4	8.6	54.7	9.5	1.6	0.3	100.0	(771)

주: 1)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다음은 학교 돌봄 서비스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하였다(〈표 5-26〉 참조).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64.1%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대도시, 중소도시 지역, 부모연령이 낮은 경우, 부모 학력이 높은 경우, 맞벌이 가구, 조사 대상 자녀가 저학년인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 지불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지불 비용은 약 월 11만 원이었으며 대도시 지역, 젊은 부모, 부모학력이 높은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지불 의사 비용이 높게조사되었다. 이처럼 상당수 가구에서 초등돌봄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할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서비스 확대와 질 개선을 위해 수익자가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지불 의사가 있는 비율과 평균 지불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에 따라, 수익자 부담이라 하더라도 수요자 특성에따른 차등 부과 모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²⁾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18.

〈표 5-26〉 학교에서 제공되는 초등돌봄교실 공급 확대를 위한 이용료 지불 의사 (단위: % 만 위 명)

						(단	위: %, 민	t 원, 명)		
		지불 의향 금액								
구분	있음	평균	5만 원 미만	5만~10 만 원 미만	10만~15 만 원 미만	15만 원 이상	계	(명)		
전체	64.1	11.06	26.5	26.2	28.6	18.7	100.0	962		
성별(T=-3.066**)										
여성	60.4	8.85	31.6	30.5	23.5	14.5	100.0	469		
남성	68.2	13.17	21.7	22.1	33.5	22.7	100.0	493		
지역(F=5.255**)										
대도시	67.2	13.89	17.3	21.9	33.7	27.1	100.0	347		
중소도시	66.2	10.43	29.7	29.4	25.3	15.5	100.0	367		
농어촌	57.7	8.04	34.7	27.4	26.2	11.7	100.0	248		
연령(F=0.982)										
25~34세	73.8	14.74	35.5	14.5	21.0	29.0	100.0	62		
35~39세	68.3	11.99	27.0	28.3	28.0	16.7	100.0	293		
40~44세	61.4	10.23	25.5	26.9	29.2	18.4	100.0	353		
45~49세	61.7	10.85	22.1	25.4	31.5	21.1	100.0	213		
50세 이상	61.2	7.22	41.5	26.8	24.4	7.3	100.0	41		
학력(F=0.258)										
고졸 이하	53.9	9.99	33.0	30.9	18.6	17.5	100.0	97		
대학교 졸(4년제 이하)	65.1	11.03	26.0	26.6	29.0	18.4	100.0	7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68.6	12.16	24.2	20.0	34.2	21.7	100.0	120		
맞벌이 여부(T=1.207)										
맞벌이	71.7	11.83	25.1	25.8	29.6	19.5	100.0	538		
홑벌이	56.5	10.09	28.3	26.7	27.4	17.7	100.0	424		
월평균 가구 소득(F=1.691)										
200만 원 미만	52.9	7.26	29.6	33.3	24.1	13.0	100.0	54		
200만~300만 원 미만	61.5	9.75	27.7	25.3	30.1	16.9	100.0	83		
300만~400만 원 미만	66.4	8.21	32.7	28.9	26.1	12.3	100.0	211		
400만~500만 원 미만	60.8	12.31	28.8	27.4	26.5	17.4	100.0	219		
500만~600만 원 미만	62.2	11.90	24.2	21.6	34.6	19.6	100.0	153		
600만 원 이상	71.4	13.20	19.4	24.4	29.3	26.9	100.0	242		
총자녀 수(F=1.634)										
1명	62.2	12.55	25.5	24.5	24.8	25.2	100.0	322		
2명	65.7	10.71	26.1	27.0	31.3	15.6	100.0	544		
3명 이상	62.3	8.09	32.3	27.1	26.0	14.6	100.0	96		
학년(응답 대상 자녀)										
(F=2.750*)										
초1	74.5	15.39	27.5	20.6	28.4	23.5	100.0	204		
초2	65.5	9.39	26.3	27.0	28.9	17.8	100.0	152		
초3	66.0	10.02	26.1	28.6	25.5	19.9	100.0	161		
초4	55.7	10.69	26.0	24.4	32.1	17.6	100.0	131		
초5	59.2	12.46	23.9	29.0	23.9	23.2	100.0	138		
초6	62.4	7.64	28.4	29.0	32.4	10.2	100.0	176		

주: 1) *p<0.05, **p<0.01, ***p<0.001

²⁾ 지불 의향 금액 평균에 대해서만 T/F값 검증.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자유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54.1%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표 5-27〉 참조). 이는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의사 비율보다 다소 낮은 값으로 학교 돌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지불 의사도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학교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의사와 마찬가지로 대도시, 중소도시 지역, 부모 연령이 낮은 경우, 부모 학력이 높은 경우, 맞벌이 가구, 조사 대상 자녀가 저학년인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 지불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지불 비용은 약월 11만 원으로 학교 돌봄에 대한 지불 의사 비용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대도시 지역, 젊은 부모,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 맞벌이 가구일수록 지불 의사 비용이 높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학교 돌봄에 대한 지불 의사 비용보다 높은 금액이었던 반면 흩벌이 가구는 더 낮은 지불 의사 금액이 조사되었다. 지역사회 돌봄의 경우도 상당수 가구에서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확대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27〉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이용료 지불 의사 (단위: %, 만 원, 명)

				ŢIĻ	를 의향 금액		70, 12	12, 0/
	있음			^ 5만~10	<u> </u>			
구분		평균	5만 원 미만	만 원 미만	만 원 미만	15만 원 이상	계	(명)
전체	54.1	11.08	24.0	28.3	26.1	21.6	100.0	812
성별(T=−1.709)								
여성	52.6	10.06	27.4	32.3	21.5	18.8	100.0	409
남성	55.7	12.11	20.6	24.3	30.8	24.3	100.0	403
지역(F=7.482**)								
대도시	55.8	13.96	13.5	24.7	30.2	31.6	100.0	288
중소도시	55.1	10.41	29.5	30.5	23.0	17.0	100.0	305
농어촌	50.9	8.21	30.1	30.1	25.1	14.6	100.0	219
연령(F=1.121)								
25~34세	59.5	13.86	28.0	16.0	26.0	30.0	100.0	50
35~39세	57.1	11.25	22.0	32.7	24.9	20.4	100.0	245
40~44세	51.5	10.84	22.0	28.0	27.7	22.3	100.0	296
45~49세	54.8	11.38	23.3	27.5	27.5	21.7	100.0	189
50세 이상	47.8	5.81	56.3	21.9	12.5	9.4	100.0	32
학력(F=12.096)								
고졸 이하	49.4	11.38	28.1	31.5	23.6	16.9	100.0	89
대학교 졸(4년제 이하)	53.9	10.98	23.5	29.3	25.3	21.9	100.0	617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60.6	11.39	23.6	19.8	33.0	23.6	100.0	106
맞벌이 여부(T=2.028*)								
맞벌이	59.5	12.12	21.5	27.8	27.6	23.1	100.0	446
홑벌이	48.8	9.80	27.0	29.0	24.3	19.7	100.0	366
월평균 가구 소득(F=2.218)								
200만 원 미만	47.1	7.79	35.4	25.0	25.0	14.6	100.0	48
200만~300만 원 미만	49.6	10.28	19.4	34.3	29.9	16.4	100.0	67
300만~400만 원 미만	54.1	8.62	30.8	29.1	25.0	15.1	100.0	172
400만~500만 원 미만	53.9	10.66	23.2	36.1	21.1	19.6	100.0	194
500만~600만 원 미만	52.4	12.67	20.2	23.3	34.9	21.7	100.0	129
600만 원 이상	59.6	13.59	20.3	22.3	25.2	32.2	100.0	202
총자녀 수(F=2.361)								
1명	53.1	12.42	22.9	26.2	22.9	28.0	100.0	275
2명	55.0	10.85	22.2	29.9	29.2	18.7	100.0	455
3명 이상	53.2	7.83	37.8	26.8	19.5	15.9	100.0	82
학년(응답 대상 자녀)								
(F=2.281*)								
초1	60.9	13.66	24.0	25.7	23.4	26.9	100.0	167
초2	52.2	9.30	28.9	23.1	29.8	18.2	100.0	121
초3	60.2	9.82	25.2	32.0	22.4	20.4	100.0	147
초4	49.8	11.38	17.1	29.1	32.5	21.4	100.0	117
초5	49.8	13.55	23.3	27.6	25.0	24.1	100.0	116
초6	51.1	8.62	25.0	31.9	25.7	17.4	100.0	144
Z· 1) *- /0 05 **- /0 01	*** /0 00				- n n -n	.1-1 /-	-1 -17	

주: 1) *p<0.05, **p<0.01, ***p<0.001 2) 지불 의향 금액 평균에 대해서만 T/F값 검증.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 3. 정책 요구도

초등학생 시기에 자녀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부모(개인)가 나눌 경우국가의 돌봄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결과 평균 58.68%로 부모나 개인의 책임보다 국가 책임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국가 책임 비율이 9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3.5%였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경우,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국가 책임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자녀 돌봄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눠야 할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28〉 초등학생 시기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 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	10% 미만	10~ 20% 미만	20~ 40% 미만	40~ 60% 미만	60~ 80% 미만	80~ 90% 미만	90% 이상	계	(명)
전체	58.68	1.5	2.2	13.0	35.9	19.2	14.7	13.5	100.0	1,500
성별(T=-0.653)										
여성	58.29	1.4	2.1	12.7	38.1	18.4	14.5	12.7	100.0	777
남성	59.08	1.5	2.4	13.3	33.5	20.1	14.9	14.4	100.0	723
지역(F=1.697)										
대도시	57.82	2.1	3.5	14.3	32.4	18.6	15.5	13.6	100.0	516
중소도시	58.12	1.3	1.8	14.6	37.9	15.7	13.9	14.8	100.0	554
농어촌	60.42	0.9	1.2	9.3	37.4	24.4	14.9	11.9	100.0	430
연령(F=1.646)										
25~34세	57.77	3.6	2.4	11.9	35.7	14.3	17.9	14.3	100.0	84
35~39세	59.51	1.9	2.1	11.7	35.4	19.8	14.0	15.2	100.0	429
40~44세	57.50	1.6	2.3	14.4	37.7	17.0	13.7	13.2	100.0	575
45~49세	58.64	0.3	2.3	13.3	35.7	22.6	14.5	11.3	100.0	345
50세 이상	64.70	1.5	1.5	9.0	23.9	22.4	25.4	16.4	100.0	67
학력(F=0.813)										
고졸 이하	60.75	2.2	2.8	12.8	28.3	17.2	18.3	18.3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58.43	1.6	2.0	13.1	36.3	19.7	14.3	12.9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58.17	0.0	2.9	12.6	40.6	17.7	13.7	12.6	100.0	175
맞벌이 여부(T=-0.173)										
맞벌이	58.57	1.3	1.9	12.3	38.5	18.9	14.3	12.8	100.0	750
홑벌이	58.78	1.6	2.5	13.7	33.2	19.5	15.2	14.3	100.0	750

170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구분	평균 (%)	10% 미만	10~ 20% 미만	20~ 40% 미만	40~ 60% 미만	60~ 80% 미만	80~ 90% 미만	90% 이상	계	(명)
월평균 가구 소득(F=1.962)										
200만 원 미만	63.92	0.0	3.9	7.8	31.4	16.7	24.5	15.7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58.85	2.2	0.7	16.3	32.6	18.5	11.9	17.8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60.36	1.3	3.1	9.4	34.9	17.0	20.8	13.5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57.69	1.7	1.4	14.7	33.6	24.4	11.4	12.8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56.50	1.6	3.3	14.6	40.2	16.7	10.2	13.4	100.0	246
600만 원 이상	58.07	1.5	1.5	13.6	38.6	18.6	14.2	12.1	100.0	339
총자녀 수(F=2.483)										
1명	58.54	2.3	1.5	13.5	34.7	19.1	14.7	14.1	100.0	518
2명	58.03	1.0	2.9	12.7	37.7	19.3	14.1	12.3	100.0	828
3명 이상	62.59	1.3	0.6	13.0	29.9	18.8	18.2	18.2	100.0	154
학년(응답 대상 자녀)										
(F=3.004*)										
초1	61.98	2.2	0.7	9.1	35.4	19.3	16.4	16.8	100.0	274
초2	58.57	1.7	2.6	15.5	30.2	22.4	12.5	15.1	100.0	232
초3	58.24	1.6	2.0	12.7	38.5	17.2	14.8	13.1	100.0	244
초4	54.25	2.1	3.0	20.0	34.9	15.7	14.5	9.8	100.0	235
초5	58.24	0.9	3.9	10.3	36.9	21.5	14.6	12.0	100.0	233
초6	59.98	0.4	1.4	11.3	38.7	19.1	15.2	13.8	100.0	282

주: 1) *p<0.05, **p<0.01,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학교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공급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률의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두 영역의 서비스 모두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구 아동은 무료로 제공하고 이 밖의원하는 아동은 유료화하여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가구 아동 중심으로 무료로 우선 제공'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응답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표는 부록에 제시하고 있다(〈부표 15〉,〈부표 16〉참조〉). 앞서 조사된 결과를 함께 고려할 때 국가는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 공급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수요자는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²⁾ 책임 정도 평균에 대해서만 T/F값 검증.

〈표 5-29〉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학교	돌봄	지역사회 돌봄		
TE	비율	(명)	비율	(명)	
① 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이나 맞벌이 가구 아동 중심으로 무료로 우선 제공	35.9	538	37.1	557	
② 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과 맞벌이 가구 아동은 무료로 제공하고 이 밖의 원하는 아동은 유료화하여 최대한 제공	47.0	705	46.3	694	
③ 모두 유료화하여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아동에게 최대한 제공	16.2	243	15.7	235	
④ 기타	0.9	14	0.9	14	
	100.0	1,500	100.0	1,500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다음은 현재 학교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이 얼마나 충분한지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다. 충분하다(충분한 편, 매우 충분함)고 응답한 비율이낮아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을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충분성을 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학교 돌봄, 지역사회 돌봄 모두에 대한 공급 충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서비스 공급 충분성에 대한 인식이 흩벌이 가구보다 낮았다.

〈표 5-30〉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충분한 편 + 매우 충분함) (단위: %, 명)

구분	학교 돌봄	지역사회 돌봄	(명)
전체	21.6	16.4	1,500
성별			
여성	22.5	17.1	777
남성	20.6	15.7	723
지역			
대도시	22.5	15.7	516
중소도시	16.1	13.5	554
_ 농어촌	27.7	20.9	430

172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구분	학교 돌봄	지역사회 돌봄	(명)
연령			
25~34세	27.4	19.1	84
35~39세	21.4	16.1	429
40~44세	20.3	17.2	575
45~49세	22.8	15.4	345
50세 이상	19.4	13.4	67
학력			
고졸 이하	22.8	18.4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21.3	15.9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22.3	17.7	175
맞벌이 여부			
<b>맞벌이</b>	19.8	14.3	750
홑벌이	23.5	18.6	75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20.6	13.7	102
200만~300만 원 미만	23.7	19.2	135
300만~400만 원 미만	21.3	16.4	318
400만~500만 원 미만	22.0	18.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23.5	16.2	246
600만 원 이상	19.5	14.5	339
총자녀 수			
1명	21.0	16.4	518
2명	22.3	16.6	828
3명 이상	20.1	15.5	154
학년(응답 대상 자녀)			
초1	16.8	12.4	274
초2	25.0	22.4	232
초3	16.8	13.5	244
초4	22.6	20.5	235
초5	27.9	18.4	233
<u>초</u> 6	21.6	12.8	282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다음은 학기 중 초등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이다. 학기 중에 가장 필요한 지원은 '학교 내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과 '학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로 나타났다. 다만 〈표 5-32〉와 같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봤을 때, 고졸 응답자와 초등 1학년 학부모의 경우 돌봄 서비스 교실 수 확대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31⟩ 초등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학기 중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명)
① 학교 내 돌봄 서비스 교실 수 확대	16.3	5.3	21.5	323
② 학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	31.6	21.3	52.9	794
③ 학교 내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32.3	21.9	54.2	813
④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공급 기관 확대	8.6	11.4	20.0	300
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	4.3	17.9	22.3	334
⑥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3.8	16.6	20.4	334
⑦ 학교 내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3.1	5.5	8.7	306
⑧ 기타	0.0	0.0	0.0	130
계	100.0	100.0	200.0	3,000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표 5-32⟩ 학기 중 초등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관련 가장 필요한 사항(1순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7	8	계	(명)
전체	16.3	31.6	32.3	8.6	4.3	3.8	3.1	0.0	100.0	1,500
성별(x ² =20.609**)										
여성	19.2	27.0	32.9	9.4	4.5	3.9	3.1	0.0	100.0	777
남성	13.1	36.5	31.5	7.7	4.1	3.7	3.2	0.0	100.0	723
지역(x ² =15.995)										
대도시	16.3	31.4	33.5	8.5	4.7	3.7	1.9	0.0	100.0	516
중소도시	17.5	33.6	31.8	7.8	2.9	2.9	3.6	0.0	100.0	554
농어촌	14.7	29.3	31.4	9.8	5.8	5.1	4.0	0.0	100.0	430
연령(x ² =24.777)										
25~34세	16.7	34.5	32.1	8.3	2.4	4.8	1.2	0.0	100.0	84
35~39세	19.6	30.8	31.2	8.6	4.0	3.3	2.6	0.0	100.0	429
40~44세	16.3	30.3	32.3	7.0	5.4	4.3	4.3	0.0	100.0	575
45~49세	13.3	34.2	32.8	11.3	3.2	2.9	2.3	0.0	100.0	345
50세 이상	9.0	31.3	35.8	9.0	6.0	6.0	3.0	0.0	100.0	67
학력(x ² =23.527*)										
고졸 이하	22.8	30.0	23.3	7.2	5.6	5.6	5.6	0.0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15.0	31.7	34.2	8.9	4.2	3.1	2.8	0.0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17.7	32.6	28.6	8.0	4.0	6.3	2.9	0.0	100.0	175
맞벌이 여부(x²=9.632)										
맞벌이	16.9	32.0	32.1	8.3	4.9	3.9	1.9	0.0	100.0	750
홑벌이	15.6	31.2	32.4	8.9	3.7	3.7	4.4	0.0	100.0	750
월평균 가구 소득(x²=40.453)										
200만 원 미만	19.6	22.5	34.3	10.8	6.9	3.9	2.0	0.0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14.8	28.9	33.3	5.2	7.4	5.9	4.4	0.0	100.0	135

174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구분	1	2	3	4	(5)	6	7	8		(명)
300만~400만 원 미만	18.2	28.9	33.3	8.8	2.2	4.1	4.4	0.0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15.0	36.9	28.6	6.9	4.7	5.0	2.8	0.0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16.7	29.3	36.6	10.6	2.0	2.4	2.4	0.0	100.0	246
600만 원 이상	15.0	33.9	31.0	9.4	5.6	2.4	2.7	0.0	100.0	339
총자녀 수(x ² =10.160)										
1명	17.6	30.9	30.1	11.0	4.4	3.5	2.5	0.0	100.0	518
2명	15.7	31.9	33.8	7.2	4.0	4.0	3.4	0.0	100.0	828
3명 이상	14.9	32.5	31.2	7.8	5.8	3.9	3.9	0.0	100.0	154
학년(응답 대상 자녀) (x ² =58.920**)										
초1	22.6	32.8	29.6	8.0	1.8	4.0	1.1	0.0	100.0	274
초2	17.7	31.0	35.8	8.6	3.0	3.0	0.9	0.0	100.0	232
초3	17.6	30.3	35.7	8.6	2.9	2.0	2.9	0.0	100.0	244
초4	17.0	28.5	28.9	10.2	6.4	4.7	4.3	0.0	100.0	235
초5	11.2	36.9	32.2	6.0	3.9	4.3	5.6	0.0	100.0	233
초6	11.3	30.1	31.9	9.9	7.8	4.6	4.3	0.0	100.0	282

주: 1) *p<0.05, **p<0.01, ***p<0.001

2) 상기 표의 각 항목(번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학교 내 돌봄 서비스 교실 수 확대
- ② 학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
- ③ 학교 내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④
- ④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공급 기관 확대
- 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
- ⑥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 ⑦ 학교 내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⑧ 기타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다음은 방학 중 초등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이다. 방학 중에 가장 필요한 지원은 '학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 '학교 내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으로 방학 중에는 서비스 질 개선보다는 '학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게 조사되었다. 다만 〈표 5-34〉와 같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봤을 때, 고졸 응답자, 저소득 가구, 초등 저학년 학부모의 경우 돌봄 서비스 교실 수 확대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등 학기 중이나 방학 중 모두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보다학교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질 개선과 서비스 확대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이해할 수 있다. 이는 초등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주요 공급 기능을

학교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langle \pm 5-33 \rangle$  초등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방학 중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명)
① 학교 내 돌봄 서비스 교실 수 확대	13.5	5.3	18.7	281
② 학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	34.0	20.6	54.6	819
③ 학교 내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28.9	23.4	52.3	785
④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공급 기관 확대	9.7	10.3	19.9	299
<ul><li>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li></ul>	7.1	19.1	26.2	393
⑥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3.9	15.7	19.5	293
⑦ 학교 내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3.0	5.6	8.6	129
⑧ 기타	0.0	0.1	0.1	1
계	100.0	100.0	200.0	3,000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표 5-34〉 방학 중 초등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관련 가장 필요한 사항(1순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7	8	계	(명)
전체	13.5	34.0	28.9	9.7	7.1	3.9	3.0	0.0	100.0	1,500
성별(x ² =19.085**)										
여성	14.7	30.9	29.2	10.0	8.4	4.8	2.1	0.0	100.0	777
남성	12.2	37.3	28.6	9.3	5.7	2.9	4.0	0.0	100.0	723
지역(x ² =23.017)										
대도시	10.1	35.9	30.2	10.9	7.0	2.9	3.1	0.0	100.0	516
중소도시	15.5	35.9	27.1	9.2	5.4	3.8	3.1	0.0	100.0	554
농어촌	14.9	29.3	29.8	8.8	9.3	5.1	2.8	0.0	100.0	430
연령(x ² =29.744)										
25~34세	13.1	25.0	32.1	11.9	14.3	1.2	2.4	0.0	100.0	84
35~39세	15.6	32.2	28.7	10.3	7.0	4.0	2.3	0.0	100.0	429
40~44세	14.8	34.6	27.7	8.2	7.3	4.3	3.1	0.0	100.0	575
45~49세	9.3	37.1	30.7	10.1	5.2	3.8	3.8	0.0	100.0	345
50세 이상	10.4	35.8	28.4	13.4	6.0	3.0	3.0	0.0	100.0	67
학력(x ² =31.932**)										
고졸 이하	21.1	32.2	20.0	10.0	8.9	3.3	4.4	0.0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12.9	33.8	30.8	9.1	6.9	3.8	2.6	0.0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9.1	37.1	25.7	13.1	6.3	4.6	4.0	0.0	100.0	175

176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구분	1	2	3	4	(5)	6	7	8	계	(명)
맞벌이 여부(x ² =3.788)										
맞벌이	12.9	33.1	30.8	9.5	7.2	3.6	2.9	0.0	100.0	750
홑벌이	14.0	34.9	27.1	9.9	6.9	4.1	3.1	0.0	100.0	750
월평균 가구 소득										
$(x^2=54.454*)$										
200만 원 미만	16.7	27.5	30.4	11.8	9.8	2.9	1.0	0.0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16.3	36.3	20.7	5.2	11.9	3.7	5.9	0.0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14.5	35.5	25.5	11.6	6.6	3.1	3.1	0.0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11.1	40.0	25.8	8.3	6.7	5.6	2.5	0.0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13.0	28.5	36.6	11.8	4.1	3.3	2.8	0.0	100.0	246
600만 원 이상	13.3	31.3	32.7	8.8	7.4	3.5	2.9	0.0	100.0	339
총자녀 수(x ² =19.965)										
1명	13.5	32.4	27.0	12.2	7.5	4.4	2.9	0.0	100.0	518
2명	13.9	35.1	28.7	8.6	6.9	4.1	2.7	0.0	100.0	828
3명 이상	11.0	33.1	36.4	7.1	6.5	0.6	5.2	0.0	100.0	154
학년(응답 대상 자녀)										
(x ² =63.120**)										
초1	19.0	29.2	29.6	10.9	6.2	2.6	2.6	0.0	100.0	274
초2	15.9	37.1	30.2	7.3	5.2	3.4	0.9	0.0	100.0	232
초3	12.3	35.2	30.3	9.4	7.4	2.5	2.9	0.0	100.0	244
초4	14.5	33.2	28.5	8.5	10.2	2.1	3.0	0.0	100.0	235
초5	10.7	35.6	23.2	9.4	6.4	7.7	6.9	0.0	100.0	233
초6	8.5	34.4	31.2	11.7	7.1	5.0	2.1	0.0	100.0	282

주: 1) *p<0.05, **p<0.01, ***p<0.001

- ① 학교 내 돌봄 서비스 교실 수 확대 ② 학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
- ③ 학교 내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④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공급 기관 확대
- 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
- ⑥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 ⑦ 학교 내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⑧ 기타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 제3절 소결

분석 결과 학교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다소 높았지만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학교를

²⁾ 상기 표의 각 항목(번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통해 제공하는 방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대도시 거주자인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서비스 유형에 대한 이용 경험이 많았으며 농어촌 지역에선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는 등 지역 특성에 따른서비스 이용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는 모든 서비스유형에서 홑벌이 가구보다 이용 경험이 많았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은 주로 가구 소득이 낮은 경우, 농어촌 지역인 경우 높게 조사됨에 따라서비스 유형에 따른 이용자 특성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대도시 거주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학년 이 저학년에 비해 저녁돌봄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적 돌봄 서비스 이외에 돌봄 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사설 학원을 이용하는 비 율이 월등히 높아 사교육 기관을 통한 돌봄 공백 해소가 매우 일상적 상 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교육 기관을 통한 돌봄 공백 해소의 경우 돌봄 문제와 함께 교육적인 부분도 제공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서 비스에 대한 이용이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 용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돌봄 공백을 사설 학원 등을 통해 해결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 밖에 혼자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과 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방과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존재하는 아동은 응답자의 21.7%에 달하며 평균 주 3.29 회, 1회당 평균 1.94시간 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소득 200 만 원 미만 가구, 맞벌이 가구 아동의 돌봄 공백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 다. 앞서 논의에 따르면 나홀로 아동의 학습이나 생활 등 아동 복지 측면 에서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연구된 만큼 이들에 대한 체계적

인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시기와 시간대를 조사한 결과 학기 중 오후 시간 대가 돌봄 공백이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컸으며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의 경우에도 돌봄 공백 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방학 기간에 대한 돌봄 지원뿐만 아니라 학기 중 오후 시간대(특히 오후돌봄이 끝나는 오후 5시 이후) 돌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초등아동에 대한 돌봄을 개인보다 국가의 책임이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보다는 학교 돌봄을 통한 서비스 지원을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이 되지 않거나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대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공급이 요구된다. 학기 중에는 저학년을 중심으로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요구도가높고 고학년의 경우 서비스 공급 시간대 개선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학 중에는 서비스의 질 개선보다는 양적 확대에 대한 요구도가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학기 중에는 사설 학원 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방학 때는 사설 학원과 같은 자원을 활용하여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비스 질보다는 양에 대한 요구도가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가 많고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도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일정 부분 수익자 부담의 서비스 공급 모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 6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 결론 및 정책 제언 〈〈

## 제1절 결론

이론적 검토 결과 초등아동 시기에 적절한 돌봄 환경은 매우 필수적이며 해당 시기의 돌봄 공백은 아동 복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와 개인(부모)은 모든 아동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국가의 돌봄 지원 책임을 개인의 책임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초등아동에 대한 돌봄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보다는 학교 돌봄을 통한 서비스 지원을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대기 수요가 많고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도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할 의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국내 초등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체계를 살펴보면 공급의 주체는 다원화되어 있으며,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일정 자격 요건을 두어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충분히 일반적인 근로 시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7%가 평일 오후 돌봄 공백 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이 비율이 39.7%에 달한다. 아동마다 시간과 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초등아동들 중 방과 후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존재하는 아동이 2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아동 돌봄에 대한 공백 문제가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었다. 대도시, 소

득 200만 원 미만 가구, 맞벌이 가구 아동의 돌봄 공백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특히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 아동의 돌봄 공백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오후돌봄이 끝나는 오후 5시 이후의 돌봄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의 경우에도 돌봄 공백 해소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 초등 오후돌봄교실이 오후 5시에 종료된다는 것에 기인한다. 이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저녁돌봄을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현재 저녁돌봄은 제공 학교 수가 많지 않으며 그에 따라 이용 학생 수도 적어 반별 인원수가 1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저녁돌봄 이용자가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제공되는 저녁돌봄 서비스의 양적 문제나 질적 문제 때문일 수 있고, 두 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저녁돌봄은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개별 아동의 활동을 지원할 뿐이라는 점에서 수요자(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학교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저녁까지 장시간 돌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 등 다양한 이유로 저녁돌봄에 대한 수요가 낮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녁돌봄 이용 비율은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돌봄 서비스 미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저학년의 경우 고학년보다 서비스 질에 대한 염려가 더 많은 반면 고학년은 저학년에 비해 서비스 제공 시간과 이용 시간이 맞지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측면에서 저녁돌봄 공급을 늘릴 경우 서비스 내용 및 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전돌봄은 2011년 온종일 돌봄교실이 도입될 당시 오전 6시 30분부터 아침돌봄이 제공되고 제공 기관 수도 현재보다 많았으나 현재는 아침돌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

으며 관련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이용 대상과 운영 방법에서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과 일시 돌봄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할과 기능에 차이가 있다. 다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한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또한 사례 조사를 통한 면접에서 수요자들은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서비스 유형을 구체적으로 구별하지 못하였다. 조사 결과 지역아동센터이용 경험은 주로 가구 소득이 낮은 경우, 농어촌 지역인 경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유형에 따른 이용자 특성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도입됨에 따라 대상을 계층화하는 공급 구조를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다.

중앙과 지역 단위 관리 체계 및 운영의 관점에서 한계를 살펴보면, 초등돌봄의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지자체 등 공급과 운영의 주체와 역할에 대해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갈등 구조하에서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학교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도 단위 공급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지역별 편차가 다소 있었다. 지역사회 돌봄의 경우, 다함께돌봄센터의 예산 지원과 집행 등의 구조적 문제로 지역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를 늘리기 어려운 환경에 다함께돌봄센터 확충도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는 확대 가능성이 낮아진다. 일시 돌봄 및 응급 돌봄 기능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학기 중과 방학 기간 중 돌봄 서비스 수요의 차이가 극명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는 기간에 따라 공급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경우부모의 선호와 아동의 선호가 상충되는 문제, 돌봄 대상 연령을 세분화하는 방안, 장애 아동 돌봄 규정, 방학 중 운영 시간 조정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공급 구조는 대상과 공급 시간 측면에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아동을 위한 돌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보편적 돌봄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용 자격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공급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초등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적극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 제2절 정책 제언

## 1. 학교 돌봄 강화와 보편적 돌봄 서비스로의 패러다임 전환

본 연구 결과 수요자들은 초등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어 국가 책임 돌봄을 더욱 확대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국가의 돌봄 지원은 학교 돌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선 호하고 있으며 맞벌이뿐만 아니라 홑벌이 가구에서도 돌봄 공백의 어려움을 느끼고 돌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초등돌봄 서비스는 자격 조건이 정해져 있어 이용이 제한적이며 공급이 수요에 기반한다기보다 수요가 공급에 기반하여 충족되는 상황으로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많다고 여겨지는 실수요자(맞벌이, 한부모, 돌봄 취약계층 등)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인 공급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 공백에 대한 대응은 서비스 공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가 필요해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상당수 있고, 취업 준비나학업 때문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등은 이용할 수 없다.

학교 돌봄에 대한 선호와 비용 지불 의사가 더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초등아동에 대한 돌봄은 학교가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돌봄 자원이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 가구 아동의 돌봄 지원 욕구와 6학년까지의 돌봄 지원 욕구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서비스 공급 구조를 보편적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이용의 우선순위 등은 유지하더라도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아동의 돌봄 수요에 대한 공급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 공급 확대와 질 개선을 위해 현재의 초등돌봄교실 무상 정책을 일정 부분 수익자 부담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들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공적 인프라를 통한 양질의 신뢰할 만한 서비스를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다. 2018년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방안'이 발표되면서 2022년까지의 추진 계획이 제시되었지만 보다 궁극적인 목적과 비전을 고민하고, 보편적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재정 전략 등 체계

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국가에서 최소 비용의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의 방과 후프로그램은 일정 부분 수익자 부담의 돌봄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다. 수익자 부담 모형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 방과 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간 단위보다 장시간을 구성하여 그 안에서 2~3개의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형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의 방과 후프로그램은 아동이 교실과 교실을 이동해야 하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시간이 비는 문제 등으로 저학년의 경우 이용에 어려움이었다. 이에 따라 일부 유료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돌봄교실 모형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소득층 등 수요자 특성에 따른 차등 부과 모형이 고려되어야 한다.

## 2. 중앙과 지역 단위 재정 지원과 운용 체계 개선

초등돌봄은 현재 학교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각기 다른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초등돌봄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지자체 단위의 수요 통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수요를 기반으로 적절한 공급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 특히 농어촌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지역 특성이 반영된 재정 지원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농어촌의 경우 이용 아동이 충분하지 않아 서비스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과 부모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등 돌봄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적인 환경이다. 그럼에도 농어촌 지역은 공적 돌봄 서비스 이외에 사교육 기관 등 사적 자원 또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도 농어촌은 학교 돌봄, 지역사회 돌봄 모두에 대한 공급 충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초등아동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적으로 전가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 는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 학교 돌봄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관련 재정 소요 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내국세 교부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초등돌봄교실 지원비는 3011억 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운영비는 오후돌봄교실 1실당 2368만 원, 저녁돌봄교실 1실당 1500만 원이며, 시설비는 신설 1실당 2574만 8000원, 겸용 교실을 전용 교실로 전환 시 1실당 1058만 8000원, 노후 시설 환경 개선비 1실당 801만 5000원, 학년 연구실 신설 1실당 3076만 9000원으로 제시하고 있다(교 육부, 2018b). 이를 기준으로 하여 오후돌봄교실 1실당 운영비를 2368 만 원으로 산정하고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수가 증가하는 경우 오후돌 봄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후돌봄교 실 이용률이 30%인 경우 1조 69억 원, 50%인 경우 1조 6782억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조 2000 억 원의 3.04% 수준에 이르는 금액이다.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소요 예산도 급증하게 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 상당 부분이 초등돌봄 서비스 운영 예산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 가 된다. 다만 향후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영향도 함께 고려하여 체계적인 재정 구조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6-1〉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에 따른 소요 예산 추정

(단위: 명. 실. 백만 원)

초등학생 수	이용률	이용 인원 수	초등돌봄교실 수	소요 예산				
2,720,000	10%	290,000	14,500	357,860				
	20%	544,000	27,200	671,296				
	30%	816,000	40,800	1,006,944				
	40%	1,088,000	54,400	1,342,592				
	50%	1,360,000	68,000	1,678,240				

주: 초등학생 수 272만 명, 오후돌봄교실 1실당 운영 경비 23,680천 원 기준으로 산정함.

이 외에 초등돌봄에 소요되는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과 같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서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2018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누리과정) 예산은 3조 8927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이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201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일선 시도 교육청과 정부 간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완화시키고자 법안을 개정한 사례가 있다. 유성엽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누리과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재원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성"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6). 이와 같은 사례는 초등돌봄교실 정책 예산을 운용하는 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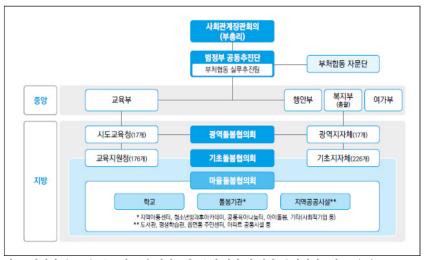
다함께돌봄센터 확대와 관련하여 중앙의 재정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을 지자체 관점에서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50% 투입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해석될 수있다. 하지만 다함께돌봄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부처는 지자체가 아니

라 중앙정부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사업 운영 구조하에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현재 사업 진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현장의 어려움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온종일 돌봄 체계에서는 초등학교 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지역사 회에 개방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 데미의 경우 학교 시설 사용 시 학교장은 임대 교실에 대한 점검 지도, 사 용료 및 공공요금 징수 및 관리, 기타 시도 교육감 및 교육장이 위임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지자체와 방과후아카데미는 돌봄 시설 이용 자 안전(위생, 보건, 급식, 통행 등)에 관한 사항, 임차 시설 설치·운영 및 유지 관리, 보안 및 화재 예방, 기타 공공요금 납부 및 보험 가입 등에 대 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9). 이처럼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운영하고자 할 경우 이를 위한 지침 및 규정이 지자체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각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서비스 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지자 체는 서비스 간의 유기적 연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김 진석 외(2018)의 연구에서는 방과 후 돌봄 기관 융합형으로 기존의 서비 스가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서로 협업하는 방식 으로 학교에서 오후돌봄 시간 이후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각의 서비스 기관이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형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중앙정부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지역 단위의 돌봄 협의체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주관하던 지역 돌봄협의회를 지자체 차원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박지영, 2018). 지자체에서 돌봄 수요 및 공급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서비스 연계와 공급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돌봄협의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범정부 돌봄 서비스 협력및 전달 체계 내에서 지역 단위의 돌봄협의회는 [그림 6-1]과 같이 마을돌봄협의회, 기초돌봄협의회, 광역돌봄협의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지역의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유기적 연계를 위해서는이와 같은 지역 단위 협의체의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림 6-1] 범정부 돌봄 서비스 협력 및 전달 체계

자료: 박지영. (2018).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현황 및 계획. 육아정책포럼, 58(10), p. 37.

#### 3. 지역사회 서비스 유형의 질 관리 및 정체성 확립

지역 내 대표적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다. 〈표 6-2〉는 각 서비스의 특징과 한계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역사가 오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방과 후돌봄에 있어 체계적이지 않고 서비스 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성에서도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이봉주, 2012). 조사 결과에서도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기관은 아동의 선택할 권리, 적절히 돌봄 받을 권리, 발달 단계에 따라 돌봄을 받을 권리가 필요하다(장수정 외 2019).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질이 보편적인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4211개의 센터는 센터 운영 주체에 따라 매우 우수한 시설을 갖춘 곳도 있지만 반대로 매우 열악한 환경속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도 많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질 수준이 보편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등을 통해 질 관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출범한 이상 기존 지역 아동센터의 정체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낙인의 문제가 다함께돌봄센터 출범으로 인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고유한 목적성을 유지하면서도 보편적 복지로의 이행을 위한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초등돌봄 정책이 강화되면서 서비스를 일반 아동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는 향후 센터 운영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딜레마를 풀어 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 돌봄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는 모순적으로 수요 미달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와 이용 자격 제한 요건 등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지자체의 직영 운영으로 예산 구조상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나, 지역아동센터는 상대적으로 재정 구조가 열악하여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향후 두 기관 간의 질적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최영, 2019). 따라서 질 관리와 함께 이용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20%로 규정되어 있는 일반 아동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일시 돌봄 기능 도입 등에 대해 검토하고 획일적인 서비스 공급 구조를 자율적이고 다양한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다함께돌봄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이 밖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돌봄 기능 강화를 위하여 초등 전용 시설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의 경우 방학 기간의 운영 시간 조정과 장애 아동 돌봄에 대한 지침 마련, 연령 구분의 세분화 등 운영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서비스 유형은 다르지만 수요자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유형 간에 질 차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 유형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며 어떤 유형의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연계 측면에서 이동의 문제

-지자체 서비스 공급 유인 부재

-일반 아동의 이용 제한

-서비스 공급량이 제한적

유형	특징	한계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지원	-일반 아동의 이용 제한 -이용자의 낙인 효과 우려 -프로그램 운영의 경직성 -서비스 연계 측면에서 이동의 문제 -자발적 서비스 공급 확대 미흡
디하께도보세다	-일반 아동의 돌봄 공백 지원 -맞벌이 우선 기준 적용 스의가 보다 그로	-일반 아동의 수요 충족 미흡 -방학 기간 운영 시간 한계

〈표 6-2〉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의 특성 비교

#### 4. 오후돌봄과 방학돌봄 서비스 강화

-수익자 부담 구조

-프로그램 운영의 개방성

-일시 돌봄 기능 제공 -취약계층 방과 후 활동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초등아동의 가장 큰 돌봄 공백의 문제는 오후돌봄과 방학돌봄이라고 볼 수 있다. 오후돌봄교실 운영 시간 이후의 돌봄 공백, 방학 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현재의 돌봄 서비스 공급 구조하에서는 사각지대와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많은 가구에서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적 자원을 활용할 여력이 없는 가구의 아동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도 사교육 기관을 이용한 돌봄 공백 해소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설 교육 기관 이용은 교육적 필요에 의해 선택되어야하며 돌봄의 목적으로 선택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사교육 기관을 이용한 돌봄 공백 해소는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 발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오후돌봄 공백에 대한 어려움은 고학년보다 저학년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저학년의 경우 사교육 기관을 통한 돌봄 공백 해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저학년은 장시간 사설 교육

기관을 전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동 등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학년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학교 돌봄의 경우에도 저학년은 서비스 질에 대한 염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학년은 서비스 질에 대한 염려보다는 원하는 시간과 서비스 제공 시간의 불일치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학년을 위한 돌봄과 고학년을 위한 돌봄 서비스 공급 방향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모두에게 돌봄서비스 질은 매우 중요하지만 저학년의 경우 특히 중요한 요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오후 5시 이후의 돌봄 공백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의 오후돌봄 공급 시간을 검토해야 한다. 오후 5시에서 7시까지의 시간대에 돌봄 수요가 높은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오후 10시까지인 저녁돌봄이 효율적 대안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현재 저녁돌봄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저녁돌봄이 당초 기대했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오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오후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을 기존의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당초 오후 7시까지 제공되던 오후돌봄이 이용 아동이 대부분 5시 전후로 퇴소함에 따라 오후 5시로 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오후돌봄을 오후 7시까지 확대하되 중간에 사교육 기관 등의 이용을 위해 입퇴실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돌봄 수요에 좀 더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돌봄 시간을 확대할 경우 특히 저학년의 경우 개별 활동이나 자유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보다는 장시간 돌봄교실에서 지내기에 적절한 환경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오후돌봄뿐만 아니라 시간대별 수요 조사를 통해 아침돌봄이나

저녁돌봄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돌봄 수요를 조사할 때 정확하게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단순히 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만 물어보는 수요 조사는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저녁돌봄에 대한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 교실당 이용 아동 수가 적은 원인 등을 파 악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1~2명 의 이용자를 위해 저녁돌봄을 운영하는 경우 비효율적 운영보다는 지역사 회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오후돌봄 공백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여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 시간을 달리하는 서비스 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이동 등의지원이 필요하다. 초등돌봄교실 이후의 시간에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서비스 중복 문제뿐만 아니라 이동 및 접근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김진석 외(2018)의 연구에서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모형 중 하나로 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이후 돌봄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담당하는 모형을 제안한 바 있다.

넷째, 방학 기간만이라도 초등돌봄교실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방학 기간에 초등돌봄교실은 일반적으로 오후 2시까지 제공되나(일부 학교는 오후 4시까지 제공) 이마저도 저학년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운영되어 고학년은 방학돌봄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학기 중 가장 필요한 지원은 '학교 내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인 반면 방학 중 가장 필요한 지원은 '학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로 조사된 만큼, 방학 기간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고졸 응답자, 저소득 가구, 초등 저학년 학부모의 경우 돌봄 서비스 교실 수 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방학 동안의취약가구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고학년의 경우 학부모

들은 오전 시간대 돌봄 공백과 방학 동안 점심 식사에 대한 염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년에게 학교 도서관 등을 개방하고 수익자 부담의 급식을 실시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존 돌봄 서비스 이외에지역 공공 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등 방학 동안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국내문헌〉

- 강지원, 이세미. (2015).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 현황 분석.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25호. 60-70.
- 국회 본회. (2018. 12. 08.). 제20대 국회 제364회 제16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 교육부. (2016). 학생·학부모 만족도 높은 '초등돌봄교실' 예산도 감액 편성. 교육부 보도참고자료(2016. 05. 20.).
- _____. (2018a).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10개 시·군·구 공모. 교육부 보도자료 (2018. 05. 04.).
- . (2018b).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 교육부.
- _____. (2019).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미리 챙겨 돌봄공백 해소. 교육부 보도 자료(2019. 01. 08.).
- 구슬이. (2014). 방과후 돌봄서비스 평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8). 대한민국 재정 2018.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48호. 2018. 10. 16., 일부개정.
- 김미진, 홍후조. (2019). 초등 저학년 하교시간에 관한 비교와 조사 연구. 비교교육 연구. 29(1), 77-109.
- 김선혜. (2015). 초등학교 돌봄서비스의 목적 논의: 공공성과 아동 자기결정의 자유에 근거하여. 한국초등교육, 26(4), 515-535.
- 김영란, 조선주, 선보영, 배호중, 김진석, 정영모. (2018).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진석, 백선희, 정영모, 김소영, 조은하. (2018).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및 제도화 방안. 범정부공동추진단, 서울여자대학교.
- 박지영. (2018).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현황 및 계획. 육아정책모럼, 58(10), 32-38.

- 백경흔. (2015). 여성주의 논의 확장을 통한 '아동중심적' 아동돌봄 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아동과 권리, 19(1), 1-25.
- 백경흔, 송다영, 장수정. (2018). 이중돌봄 맥락에서 본 부정의한 세대 간 돌봄책임 재분배. 한국여성학, 34(2), 33-70.
- 보건복지부. (2019a).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______. (2019b). 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_____. (2019c). 2018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_____. (2019d).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_____. (각 연도).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_____. (각 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개요. 세종: 보건
-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우리동네키움센터. (2019). 서울시 오마을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모델 개발과 전달체계 구출 방안 토론회 자료집.

복지부.

- 송다영, 장수정, 백경흔. (2017). 희망서울 행복가족: 서울가족보고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송혜림. (2012). 자녀돌봄지원정책의 추이와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가정관리학회, 121-135.
- 신호정. (2016).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시간이 가지는 의미. 방과후아동지도연구, 13(2). 25-43.
- 심정미, 채현탁. (2015).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협력에 관한 쟁점 고찰. 한국자치행정학보, 29(2), 313~328.
- 여성가족부. (2018). 2018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______. (2019).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_____. (각 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개요.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도 및 만족도 조사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오범호, 양수경, 박원표. (2009).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정책 효과 분석 연구. 교육 과학기술부, 경남대학교.
- 이봉주, 조아라. (2011).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6, 7-33.
- 이봉주. (2012). '아동이 행복한 도시, 서울'을 위한 아동돌봄기준선.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45-80.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워.
- 이재희, 김근진, 엄지원. (2017). 초등자녀 양육지원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재희. (2018). 초등 자녀 방과후 돌봄 지원방안. 이슈페이퍼 2018-02.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희현, 장명림, 황준성, 유경훈, 김성기, 김위정, ... 김보미. (2018).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실태 및 개선과제: 우수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부, 한국교육 개발원.
- 이희현, 윤종혁, 황준성, 김혜진, 김병찬, 김수동, ... 길성용. (2019). 해외 방과후 돌봄정책 사례 분석.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임혜정. (2017a).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돌봄공백이 학교 학습활동적 응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1(3), 65-86.
- _____. (2017b).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 영향 요인분석. 보건사회연구, 37(4), 510-534.
- 장수정, 송다영, 백경흔. (2019).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공동육아 방과 후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2, 251-287.
- 장혜경, 황정임, 최인희, 김영란, 주재선, 김소영, ... 김수지. (2015). 2015년 가족 실태조사 분석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영모. (2019).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

- (2019. 10.). URL: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ent_srl=1660437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조영희. (2012).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현황과 가족정책적 과제. 한국가정 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가정관리학회, 139-155.
- _____. (2014).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가족자원경영 학회지, 18(1), 141-162.
- 조은경. (2014). 방과후서비스 간 협력체계에 대한 초등 돌봄 입장. 2014 한국방 과후아동지도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62~70.
- 주재복, 김영주. (2016). 무상복지를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해결방안. 한국지방 행정연구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제16112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2016. 11. 9.). URL: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R6P 1A1A0I9P1P7N4A0X0B1O6J8B6
- 최영. (2019). 문재인 정부 방과후 초등돌봄 정책의 개편 내용 및 방향. 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2019. 10.). URL: http://www.peoplepower21.org/index. 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ent_srl=1660414
- 최옥채, 박미은, 서미경, 전석균. (201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경기: 양서원.
- 통계청. (2019).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통계청 보도자료(2019. 06. 25.).
- 한국교육개발원, 17개 시·도교육청. (2018). 2019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한도희, 연규철. (2009). 한국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 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 청소년시설환경학회 2009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151~176.

#### 〈국외문헌〉

- Erickson, E. H. (1993). Childhood and society. W·W·Norton & Company. 윤진, 김인경 역. (1997). 아동기와 사회: 인간발달 8단계 이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Fin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7). *Finish Education in a Nutshell.* Helsinki.
- Jensen, E. (2005). *Teaching with the Brain in Mind, Revised 2nd Edition*. Alexandria, VA: ASCD.
- Kohlberg, L. (1981).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moral stages and the idea of justice. Harper & Row. 김민남, 김봉소, 전미숙 역. (2000). 도덕발달의 철학. 경기: 교육과학사.
- Lee Manning., M. (2002). Revisiting Developmentally Appropriate Middle Level Schools. *Childhood Education*, 78(4), 225-227.
- Maslow, A. H. (1967). A Theory of Metamotivation: the Biological Rooting of the Value Lif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7(2), 93–127.
- OECD (2019). OECD Labor Force Statistics 2019. Paris. OECD.Piaget, J., & Inhelder, B. (1969). The psychology of the child. New York: Basic Books. 김재은 역. (1983). 삐아제의 아동심리학. 경기: 교육과학사.
- Rogers, C. R. (1995). A way of being. Houghton Mifflin Harcourt. 오제은 역. (2007). 칼 로저스의 사람-중심 상담. 서울: 학지사.
- Schunk, D., H. (2016). *Learning theories: an educational perspective*(7rd ed). Pearson.
- Statiscs Sweden (2015).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 -by-subject-area/education-and-research

## 〈홈페이지〉

- 김승환 교육감 공식블로그. 결의문. [웹사이트]. (2019. 10. 1.). URL: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kimjbedu
-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2019. 11. 30.) URL: http://www.mogef.go.kr/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웹사이트]. (2019. 10. 10.). URL: http://www.eduinfo. go.kr/portal/main.do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아동종합실태조사(2018년). [웹사이트]. (2019. 11. 29.). URL: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 117074_2018_A081&conn_path=I3
- 학교알리미. [웹사이트]. (2019. 09. 11., 2019. 10. 30.). URL: www.schoolinfo. go.kr
- 한국보육진흥원. [웹사이트]. (2019. 09. 10.). URL: https://www.kcpi.or.kr/e-나라지표 국정모니터링지표. [웹사이트]. (2019. 11. 26.). URL: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505

## [부 록 1] 부표 및 부그림

#### 〈부표 1〉 지역아동센터 주간 운영 일수 및 하루 운영 시간

(단위: 개, %)

구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주간	전체	4,036(100.0)	4,059(100.0)	4,105(100.0)	4,138(100.0)			
	운영 안 함	17(0.4)	6(0.1)	-	-			
운영	5일 미만 운영	-	-	3(0.1)	-			
일수	5일 운영	1,935(47.9)	2,135(52.6)	2,505(61.0)	2,983(72.1)			
(일/주)	6일 운영	1,964(48.7)	1,847(45.5)	1,554(37.9)	1,118(27.0)			
	7일 운영	120(3.0)	71(1.8)	43(1.0)	37(0.9)			
	전체	4,019(100.0)	4,053(100.0)	4,105(100.0)	4,138(100.0)			
	6시간 미만	10(0.2)	1(0.0)	0(0.0)	110(2.7)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	12(0.3)	2(0.1)	(7시간 미만)				
-1-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7(0.9)	23(0.6)	8(0.2)	(9시간 미만)			
하루 운영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	787(19.6)	530(13.1)	263(6.4)				
시간	9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538(38.3)	1,805(44.5)	2,433(59.2)	2,617(63.2)			
	10시간 이상 ~11시간 미만	759(18.9)	735(18.1)	594(14.5)	565(13.7)			
	11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465(11.6)	546(13.5)	401(9.8)	374(9.0)			
	12시간 이상	411(10.2)	411(10.1)	406(9.9)	472(11.4)			

- 주: 1) 운영 안 함: 신고 이후 운영 준비로 인한 이용 아동 모집 중 또는 휴지, 폐쇄 준비 중임.
  - 2) 2012/2014년: 운영을 하지 않는 센터는 하루 운영 시간에서 제외됨.
  - 3) 2016년: 2017년 운영 준비 및 휴지, 폐쇄 예정인 2곳 제외됨.
  - 4) 2016/2018년: 하루 운영 시간 중 통합된 셀의 경우 이전의 운영 시간 구분과 관계없이 특정 시간 미만 으로 통합 제시.
  - 5) 2018년: 분석 불가능 시설 73곳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 〈부표 2〉지역아동센터 운영 시간(2018년)

(단위: 개, %)

																							(5T)	11, 707
닫는 시간 여는 시간	17시	18시	18시 30분	19시	19시 10분	19시 20분	19시 30분	19시 40분	19시 50분	20시	20시 10분	20시 20분	20시 30분	20시 40분	21시	21시 30분	22시	22시 10분	22시 20분	22시 30분	23시	23시 30분	센터 수	비율
8시				1			1										4		1				7	0.2
8시 30분		1								1					1					1			4	0.1
8시 50분			1																				1	0.0
9시		6	1	120			12			36	1		7		35	4	55				2		279	6.7
9시 30분			8	29		1	23			7			4		9	4	4				1		90	2.2
9시 40분				1																			1	0.0
9시 50분					1																		1	0.0
10시	3	7	1	1,763	4	2	93	1	1	208	2	1	64		196	20	348	1		2	3	1	2,721	65.8
10시 20분						1																	1	0.0
10시 30분			1	2		1	214		1	14	1		14		9	5	14			2			278	6.7
10시 50분										1													1	0.0
11시				27			6		1	330	1		19	1	65	8	78			1	3		540	13.1
11시 20분												1											1	0.0
11시 30분							3						14		1	3	4						25	0.6
12시										28			4		77	5	25						139	3.4
12시 30분															2	6	1						9	0.2
13시										1					17	3	16						37	0.9
13시 30분																3							3	0.1
센터 수	3	14	12	1,943	5	5	352	1	3	626	5	2	126	1	412	61	549	1	1	6	9	1	4,138	100.0
비율	0.1	0.3	0.3	47.0	0.1	0.1	8.5	0.0	0.1	15.1	0.1	0.1	3.0	0.0	10.0	1.5	13.3	0.0	0.0	0.2	0.2	0.0	100.0	

주: 1) 분석 불가능 시설 73곳 제외됨.

²⁾ 운영 시간의 경우 근로 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종사자 간 교대로 휴게 시간 사용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2019c). 2018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p.21.

〈부표 3〉 지역아동센터 연도별 토요일, 공휴일 및 야간 보호 운영 여부

(단위: 개, %)

7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4,036	4,061	4,059	4,102	4,105	4,136	4,138
	선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토	매주	2,041	2,104	1,963	1,899	1,652	1,253	1,112
요	운영	(50.6)	(51.8)	(48.4)	(46.3)	(40.2)	(30.3)	(26.9)
일	격주	278	204	146	105	93	95	77
	운영	(6.9)	(5.0)	(3.6)	(2.6)	(2.3)	(2.3)	(1.9)
운	행사	1,190	1,243	1,319	1,399	1,683	2,061	2,192
영	시	(29.5)	(30.6)	(32.5)	(34.1)	(41.0)	(49.8)	(53.0)
여	월	108	108	103	81	61	95	85
부	1회	(2.7)	(2.7)	(2.5)	(1.9)	(1.5)	(2.3)	(2.0)
	운영	419	402	528	618	616	632	672
	안 함	(10.3)	(9.9)	(13.0)	(15.1)	(15.0)	(15.3)	(16.2)
	_ 전체	4,036	4,061	4,059	4,102	4,105	4,136	4,138
공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 휴 일	운영	154	138	93	66	64	51	41
일		(3.8)	(3.4)	(2.3)	(1.6)	(1.6)	(1.2)	(1.0)
	행사	2,399	2,522	2,226	2,462	2,391	2,479	2,501
운	시	(59.5)	(62.1)	(54.8)	(60.0)	(58.3)	(60.0)	(60.4)
영	월	5	5	5	7	6	9	3
여	1회	(0.1)	(0.1)	(0.1)	(0.2)	(0.1)	(0.2)	(0.1)
부	운영	1,478	1,396	1,735	1,567	1,644	1,597	1,593
	안 함	(36.6)	(34.4)	(42.8)	(38.2)	(40.0)	(38.6)	(38.5)
20시	 전체	4,036	4,061	4,059	4,102	4,105	4,136	4,138
이후	[전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야간	0~	2,095	2,093	2,160	1,874	1,724	1,712	1,174
보호)	운영	(51.9)	(51.5)	(53.2)	(45.7)	(42.0)	(41.4)	(28.4)
운영	운영	1,941	1,968	1,899	2,228	2,381	2,424	2,964
여부	안 함	(48.1)	(48.5)	(46.8)	(54.3)	(58.0)	(58.6)	(71.6)

주: 1) 각 연도 기준 조사 분석 불가능 시설 제외됨.

²⁾ 토요일, 공휴일, 야간 보호는 정부 예산 지원 여부와 상관없는 지역아동센터 실제 운영 현황임. 자료: 보건복지부. (2019c). 2018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p.22.

〈부표 4〉 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① 초등돌봄교실

				E1.3		(17.	위· %, 명 <i>)</i>
<b>-</b>				만족			
구분	이용 경험 있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명)
전체	50.7	2.1	11.8	73.2	12.9	100.0	761
성별(x ² =13.198**)							
여성	50.5	2.8	14.0	67.6	15.6	100.0	392
남성	51.0	1.4	9.5	79.1	10.0	100.0	369
지역(x ² =3.983)							
대도시	53.5	1.4	13.4	72.5	12.7	100.0	276
중소도시	47.5	1.9	9.5	75.3	13.3	100.0	263
농어촌	51.6	3.2	12.6	71.6	12.6	100.0	222
연령(x ² =15.840)							
25~34세	59.5	0.0	14.0	60.0	26.0	100.0	50
35~39세	59.2	1.6	13.8	72.4	12.2	100.0	254
40~44세	45.4	2.3	11.5	73.9	12.3	100.0	261
45~49세	48.1	2.4	9.6	77.1	10.8	100.0	166
50세 이상	44.8	6.7	6.7	73.3	13.3	100.0	30
학력(x ² =4.235)							
고졸 이하	48.9	2.3	13.6	67.0	17.0	100.0	88
대학교 졸(4년제 이하)	50.4	2.1	10.9	74.9	12.1	100.0	577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54.9	2.1	15.6	68.8	13.5	100.0	96
맞벌이 여부(x²=0.142)							
맞벌이	65.7	2.0	11.6	73.4	13.0	100.0	493
홑벌이	35.7	2.2	12.3	72.8	12.7	100.0	268
월평균 가구 소득(x²=13.716)							
200만 원 미만	54.9	1.8	10.7	75.0	12.5	100.0	56
200만~300만 원 미만	47.4	0.0	12.5	85.9	1.6	100.0	64
300만~400만 원 미만	45.6	2.1	12.4	71.0	14.5	100.0	145
400만~500만 원 미만	52.5	1.6	12.2	73.5	12.7	100.0	189
500만~600만 원 미만	57.7	2.8	12.0	73.2	12.0	100.0	142
600만 원 이상	48.7	3.0	10.9	69.1	17.0	100.0	165
총자녀 수(x ² =9.508)							
1명	53.5	3.2	10.8	75.1	10.8	100.0	277
2명	48.6	1.5	13.7	71.6	13.2	100.0	402
3명 이상	53.2	1.2	6.1	74.4	18.3	100.0	82
학년(응답 대상 자녀)							
$(x^2=15.800)$							
초1	51.1	0.0	10.0	72.9	17.1	100.0	140
초2	59.9	2.2	11.5	69.8	16.5	100.0	139
초3	48.0	5.1	12.8	70.9	11.1	100.0	117
초4	53.2	1.6	11.2	76.0	11.2	100.0	125
초5	46.4	1.9	14.8	73.1	10.2	100.0	108
초6	46.8	2.3	11.4	76.5	9.8	100.0	132

주: 1) *p<0.05, **p<0.01, ***p<0.001

²⁾  $x^{2}$ 값은 만족도에 대한 수치임.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부표 5〉 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② 지역아동센터

						(단·	위: %, 명) 
				만족	돈		
구분	이용 경험 있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명)
전체	15.1	7.0	18.1	58.1	16.7	100.0	227
성별(x ² =3.692)							
여성	16.1	8.0	19.2	52.8	20.0	100.0	125
남성	14.1	5.9	16.7	64.7	12.7	100.0	102
지역(x ² =4.150)							
대도시	17.8	8.7	18.5	54.3	18.5	100.0	92
중소도시	9.9	5.5	14.5	69.1	10.9	100.0	55
농어촌	18.6	6.3	20.0	55.0	18.8	100.0	80
연령(x ² =23.023*)							
25~34세	28.6	8.3	8.3	58.3	25.0	100.0	24
35~39세	20.0	5.8	25.6	54.7	14.0	100.0	86
40~44세	9.6	9.1	7.3	65.5	18.2	100.0	55
45~49세	15.1	7.7	13.5	61.5	17.3	100.0	52
50세 이상	14.9	0.0	60.0	30.0	10.0	100.0	10
학력(x ² =3.913)							
고졸 이하	16.1	0.0	20.7	62.1	17.2	100.0	29
대학교 졸(4년제 이하)	14.6	7.8	17.4	56.9	18.0	100.0	167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17.7	9.7	19.4	61.3	9.7	100.0	31
맞벌이 여부(x ² =1.177)							
맞벌이	18.1	5.9	16.9	60.3	16.9	100.0	136
홑벌이	12.1	8.8	19.8	54.9	16.5	100.0	91
월평균 가구 소득(x ² =7.405)							
200만 원 미만	22.5	4.3	17.4	60.9	17.4	100.0	23
200만~300만 원 미만	19.3	7.7	26.9	53.8	11.5	100.0	26
300만~400만 원 미만	15.7	8.0	14.0	62.0	16.0	100.0	50
400만~500만 원 미만	13.1	4.3	21.3	59.6	14.9	100.0	47
500만~600만 원 미만	13.0	9.4	12.5	50.0	28.1	100.0	32
600만 원 이상	14.5	8.2	18.4	59.2	14.3	100.0	49
총자녀 수(x ² =4.312)							
1명	17.0	9.1	19.3	56.8	14.8	100.0	88
2명	14.4	5.9	15.1	61.3	17.6	100.0	119
3명 이상	13.0	5.0	30.0	45.0	20.0	100.0	20
학년(응답 대상 자녀)							
(x ² =25.958*)							
초1	10.2	14.3	10.7	42.9	32.1	100.0	28
초2	18.5	7.0	18.6	67.4	7.0	100.0	43
초3	16.0	2.6	23.1	59.0	15.4	100.0	39
초4	15.7	5.4	16.2	45.9	32.4	100.0	37
초5	19.3	4.4	24.4	64.4	6.7	100.0	45
초6	12.4	11.4	11.4	62.9	14.3	100.0	35

주: 1) *p<0.05, **p<0.01, ***p<0.001

²⁾  $x^2$ 값은 만족도에 대한 수치임.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부표 6〉 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③ 다함께돌봄센터

	(년위· %, 명) 								
ᄀᆸ	이오 거리	шо	rii÷ii⊐						
구분	이용 경험 있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명)		
전체	9.8	6.8	14.3	61.9	17.0	100.0	147		
성별(x ² =3.354)									
여성	11.8	8.7	12.0	59.8	19.6	100.0	92		
남성	7.6	3.6	18.2	65.5	12.7	100.0	55		
지역(x ² =6.620)									
대도시	14.5	4.0	10.7	65.3	20.0	100.0	75		
중소도시	6.1	5.9	14.7	64.7	14.7	100.0	34		
농어촌	8.8	13.2	21.1	52.6	13.2	100.0	38		
연령(x ² =26.256*)									
25~34세	22.6	0.0	5.3	47.4	47.4	100.0	19		
35~39세	12.6	3.7	20.4	64.8	11.1	100.0	54		
40~44세	7.1	14.6	4.9	68.3	12.2	100.0	41		
45~49세	7.8	7.4	18.5	59.3	14.8	100.0	27		
50세 이상	9.0	0.0	33.3	50.0	16.7	100.0	6		
학력(x ² =4.353)									
고졸 이하	9.4	11.8	17.6	41.2	29.4	100.0	17		
대학교 졸(4년제 이하)	8.8	5.9	14.9	64.4	14.9	100.0	101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16.6	6.9	10.3	65.5	17.2	100.0	29		
맞벌이 여부(x ² =3.110)									
맞벌이	13.7	7.8	14.6	64.1	13.6	100.0	103		
홑벌이	5.9	4.5	13.6	56.8	25.0	100.0	44		
월평균 가구 소득(x ² =9.714)									
200만 원 미만	7.8	12.5	0.0	75.0	12.5	100.0	8		
200만~300만 원 미만	4.4	0.0	33.3	66.7	0.0	100.0	6		
300만~400만 원 미만	8.8	7.1	17.9	57.1	17.9	100.0	28		
400만~500만 원 미만	10.3	2.7	13.5	62.2	21.6	100.0	37		
500만~600만 원 미만	9.8	8.3	4.2	70.8	16.7	100.0	24		
600만 원 이상	13.0	9.1	18.2	56.8	15.9	100.0	44		
총자녀 수(x ² =4.806)									
1명	11.8	9.8	14.8	60.7	14.8	100.0	61		
2명	8.1	6.0	16.4	61.2	16.4	100.0	67		
3명 이상	12.3	0.0	5.3	68.4	26.3	100.0	19		
학년(응답 대상 자녀)									
$(x^2=8.111)$									
초1	6.6	5.6	16.7	50.0	27.8	100.0	18		
초2	12.1	7.1	7.1	67.9	17.9	100.0	28		
초3	13.1	6.3	21.9	53.1	18.8	100.0	32		
초4	8.5	5.0	15.0	60.0	20.0	100.0	20		
초5	9.9	4.3	13.0	73.9	8.7	100.0	23		
초6	9.2	11.5	11.5	65.4	11.5	100.0	26		

주: 1) *p<0.05, **p<0.01, ***p<0.001

²⁾  $x^2$ 값은 만족도에 대한 수치임.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부표 7〉 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④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단·	위: %, 명)
				만족	돈		
구분	이용 경험 있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명)
전체	18.3	4.4	11.3	69.5	14.9	100.0	275
성별(x ² =14.103**)							
여성	16.6	7.0	9.3	62.0	21.7	100.0	129
남성	20.2	2.1	13.0	76.0	8.9	100.0	146
지역(x ² =4.429)							
대도시	25.2	3.8	13.8	64.6	17.7	100.0	130
중소도시	14.1	3.8	10.3	74.4	11.5	100.0	78
농어촌	15.6	6.0	7.5	73.1	13.4	100.0	67
연령(x ² =14.702)							
25~34세	31.0	3.8	3.8	61.5	30.8	100.0	26
35~39세	19.3	4.8	18.1	66.3	10.8	100.0	83
40~44세	13.9	6.3	6.3	72.5	15.0	100.0	80
45~49세	20.6	2.8	12.7	70.4	14.1	100.0	71
50세 이상	22.4	0.0	6.7	80.0	13.3	100.0	15
학력(x ² =1.925)							
고졸 이하	18.3	3.0	9.1	66.7	21.2	100.0	33
대학교 졸(4년제 이하)	16.5	4.8	11.6	68.8	14.8	100.0	189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30.3	3.8	11.3	73.6	11.3	100.0	53
맞벌이 여부(x²=0.647)							
맞벌이	20.7	3.9	11.6	68.4	16.1	100.0	155
홑벌이	16.0	5.0	10.8	70.8	13.3	100.0	120
월평균 가구 소득(x ² =16.501)							
200만 원 미만	15.7	0.0	18.8	75.0	6.3	100.0	16
200만~300만 원 미만	16.3	4.5	9.1	81.8	4.5	100.0	22
300만~400만 원 미만	14.8	10.6	10.6	63.8	14.9	100.0	47
400만~500만 원 미만	18.6	3.0	14.9	73.1	9.0	100.0	67
500만~600만 원 미만	18.7	2.2	8.7	69.6	19.6	100.0	46
600만 원 이상	22.7	3.9	9.1	64.9	22.1	100.0	77
총자녀 수(x ² =7.403)							
1명	17.2	4.5	14.6	66.3	14.6	100.0	89
2명	18.6	4.5	11.7	70.8	13.0	100.0	154
3명 이상	20.8	3.1	0.0	71.9	25.0	100.0	32
학년(응답 대상 자녀)							
$(x^2=15.081)$							
초1	11.7	0.0	12.5	68.8	18.8	100.0	32
초2	16.4	2.6	15.8	65.8	15.8	100.0	38
초3	20.9	3.9	15.7	66.7	13.7	100.0	51
초4	18.3	7.0	9.3	62.8	20.9	100.0	43
초5	21.5	2.0	12.0	68.0	18.0	100.0	50
초6	21.6	8.2	4.9	80.3	6.6	100.0	61

주: 1) *p<0.05, **p<0.01, ****p<0.001

²⁾ x²값은 만족도에 대한 수치임.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 210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8〉 희망하는 주된 돌봄 유형(2순위)

						(5	간위· %, 명 <i>)</i>
구분	1	2	3	4	(5)	계	(명)
전체	10.8	22.8	26.9	21.8	17.8	100.0	1,221
성별(x ² =1.779)							
여성	10.0	22.7	26.5	21.9	18.9	100.0	630
남성	11.7	22.8	27.2	21.7	16.6	100.0	591
지역(x ² =15.684)							
대도시	8.9	27.9	25.3	20.1	17.8	100.0	427
중소도시	10.6	20.8	29.0	21.3	18.2	100.0	451
농어촌	13.4	19.0	25.9	24.5	17.2	100.0	343
연령(x ² =24.539)							
25~34세	9.8	29.5	23.0	26.2	11.5	100.0	61
35~39세	13.5	25.8	24.5	20.6	15.7	100.0	364
40~44세	9.5	21.1	30.2	19.5	19.7	100.0	441
45~49세	9.5	20.3	26.7	25.3	18.2	100.0	296
50세 이상	11.9	22.0	22.0	23.7	20.3	100.0	59
학력(x ² =14.677)							
고졸 이하	14.9	15.7	25.4	26.1	17.9	100.0	134
대학교 졸(4년제 이하)	10.9	24.0	26.8	20.4	17.9	100.0	940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6.8	21.1	28.6	26.5	17.0	100.0	147
맞벌이 여부(x²=25.428***)							
맞벌이	13.2	21.0	22.4	25.1	18.3	100.0	638
홑벌이	8.2	24.7	31.7	18.2	17.2	100.0	583
월평균 가구 소득(x²=19.860)							
200만 원 미만	11.1	28.4	16.0	28.4	16.0	100.0	81
200만~300만 원 미만	11.7	22.3	28.7	19.1	18.1	100.0	94
300만~400만 원 미만	13.0	19.9	29.7	22.4	15.0	100.0	246
400만~500만 원 미만	9.9	22.9	28.3	20.1	18.8	100.0	314
500만~600만 원 미만	11.6	22.1	25.6	21.6	19.1	100.0	199
600만 원 이상	9.1	24.0	26.1	22.3	18.5	100.0	287
총자녀 수(x ² =14.289)							
1명	12.3	23.5	24.2	24.9	15.2	100.0	422
2명	9.8	22.3	27.3	20.6	20.0	100.0	674
3명 이상	11.2	23.2	33.6	17.6	14.4	100.0	125
학년(응답 대상 자녀)							
$(x^2=33.626)$							
초1	13.3	26.5	28.8	16.8	14.6	100.0	226
초2	8.0	24.5	29.8	21.8	16.0	100.0	188
<u></u>	9.4	23.3	27.7	19.8	19.8	100.0	202
초4 -	13.0	22.7	22.2	23.8	18.4	100.0	185
초5	11.9	21.4	29.9	20.9	15.9	100.0	201
_초6	9.1	18.3	22.8	27.9	21.9	100.0	219

주: 1) *p<0.05, **p<0.01, ***p<0.001

²⁾ 상기 표의 각 항목(번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 ②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민간 도우미, 조부모, 친인척 등을 이용한 개별 돌봄
- ③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이용
- ④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테미 등) 이용
- ⑤ 학원 등 사교육 기관 이용
- ⑥ 기타

〈부표 9〉 희망하는 주된 돌봄 유형(1순위 + 2순위, 중복 응답)

구분	1)	2	3	4	(5)	계	(명)
전체	54.8	30.5	52.0	23.7	20.4	181.4	1,500
성별							
여성	54.4	30.4	50.6	24.5	21.2	181.1	777
남성	55.2	30.6	53.5	23.0	19.5	181.7	723
지역							
대도시	55.2	36.6	49.4	21.9	19.6	182.8	516
중소도시	57.2	28.3	51.8	23.3	20.8	181.4	554
농어촌	51.2	25.8	55.3	26.5	20.9	179.8	430
연령							
25~34세	50.0	35.7	51.2	23.8	11.9	172.6	84
35~39세	54.3	33.8	53.6	24.5	18.6	184.8	429
40~44세	55.0	26.4	52.7	19.7	23.0	176.7	575
45~49세	55.4	31.9	49.9	29.3	19.4	185.8	345
50세 이상	59.7	29.9	47.8	25.4	25.4	188.1	67
학력							
고졸 이하	56.7	21.7	48.3	27.2	20.6	174.4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55.0	32.7	52.0	22.3	20.2	182.1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51.4	25.1	56.0	29.7	21.7	184.0	175
맞벌이 여부							
맞벌이	45.2	31.9	55.9	28.8	23.3	185.1	750
홑벌이	64.4	29.1	48.1	18.7	17.5	177.7	75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48.0	30.4	50.0	32.4	18.6	179.4	102
200만~300만 원 미만	55.6	23.7	46.7	24.4	19.3	169.6	135
300만~400만 원 미만	57.2	25.2	51.6	23.9	19.5	177.4	318
400만~500만 원 미만	55.6	30.3	57.2	22.5	21.7	187.2	360
500만~600만 원 미만	53.3	34.6	53.3	19.9	19.9	180.9	246
600만 원 이상	54.6	35.4	48.7	24.8	21.2	184.7	339
총자녀 수							
1명	51.7	33.6	51.2	26.8	18.1	181.5	518
2명	56.9	28.9	51.9	21.3	22.5	181.4	828
3명 이상	53.9	28.6	55.2	26.6	16.9	181.2	154

### 212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구분	1	2	3	4	(5)	계	(명)
학년(응답 대상 자녀)							
초1	58.8	32.8	56.2	19.0	15.7	182.5	274
초2	53.9	31.9	55.6	22.4	17.2	181.0	232
초3	52.5	29.9	56.1	21.3	23.0	182.8	244
초4	54.5	27.2	52.3	23.8	20.9	178.7	235
초5	58.4	33.5	45.5	26.6	22.3	186.3	233
초6	51.1	27.7	46.5	29.1	23.4	177.7	282

주: 상기 표의 각 항목(번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 ②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민간 도우미, 조부모, 친인척 등을 이용한 개별 돌봄
- ③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이용
- ④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이용
- ⑤ 학원 등 사교육 기관 이용
- ⑥ 기타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부표 10〉 돌봄 서비스 인지 정도 ① 초등돌봄교실

구분	전혀 모름	거의 모름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계	(명)
전체	3.4	7.6	56.3	32.7	100.0	1,500
성별(x ² =66.804***)						
여성	2.3	3.7	53.8	40.2	100.0	777
남성	4.6	11.8	59.1	24.6	100.0	723
지역(x ² =24.082**)						
대도시	1.7	7.9	59.3	31.0	100.0	516
중소도시	2.3	7.2	54.7	35.7	100.0	554
농어촌	6.7	7.7	54.9	30.7	100.0	430
연령(x ² =18.291)						
25~34세	1.2	9.5	51.2	38.1	100.0	84
35~39세	3.0	6.3	56.4	34.3	100.0	429
40~44세	3.0	7.7	54.6	34.8	100.0	575
45~49세	4.1	9.0	60.0	27.0	100.0	345
50세 이상	9.0	6.0	58.2	26.9	100.0	67
학력(x ² =10.839)						
고졸 이하	1.1	5.6	53.3	40.0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3.6	8.3	56.9	31.3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4.6	5.1	56.0	34.3	100.0	175
맞벌이 여부(x ² =55.072***)						
맞벌이	1.5	5.3	53.1	40.1	100.0	750
홑벌이	5.3	9.9	59.6	25.2	100.0	750
월평균 가구 소득(x ² =17.151)						

구분	전혀 모름	거의 모름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계	(명)
200만 원 미만	4.9	6.9	53.9	34.3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3.7	11.9	60.0	24.4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3.8	6.0	57.9	32.4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3.6	8.9	57.8	29.7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3.3	6.5	50.8	39.4	100.0	246
600만 원 이상	2.4	7.1	56.6	33.9	100.0	339
총자녀 수(x ² =28.184***)						
1명	6.6	8.3	55.2	29.9	100.0	518
2명	2.1	7.5	56.8	33.7	100.0	828
3명 이상	0.0	5.8	57.8	36.4	100.0	154
학년(응답 대상 자녀) (x ² =22.637)						
초1	4.4	5.5	56.6	33.6	100.0	274
초2	2.2	6.5	51.7	39.7	100.0	232
초3	2.0	9.4	57.0	31.6	100.0	244
초4	2.6	8.1	54.0	35.3	100.0	235
초5	6.0	7.7	61.4	24.9	100.0	233
초6	3.2	8.5	57.1	31.2	100.0	282

주: *p<0.05, **p<0.01, ***p<0.001

〈부표 11〉 돌봄 서비스 인지 정도 ② 방과후학교 연계형 초등돌봄교실

					`	L 11. 70, U/
구분	전혀 모름	거의 모름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계	(명)
전체	4.3	13.3	56.3	26.2	100.0	1,500
성별(x ² =14.860**)						
여성	3.7	11.8	54.2	30.2	100.0	777
남성	4.8	14.8	58.5	21.9	100.0	723
지역(x ² =6.629)						
대도시	3.3	11.8	56.4	28.5	100.0	516
중소도시	4.5	14.6	54.5	26.4	100.0	554
농어촌	5.1	13.3	58.4	23.3	100.0	430
연령(x ² =22.582*)						
25~34세	3.6	10.7	51.2	34.5	100.0	84
35~39세	3.5	13.8	53.1	29.6	100.0	429
40~44세	3.5	12.3	57.6	26.6	100.0	575
45~49세	5.5	13.9	59.7	20.9	100.0	345
50세 이상	10.4	17.9	53.7	17.9	100.0	67
학력(x ² =9.815)						
고졸 이하	3.9	12.8	51.7	31.7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4.3	14.1	56.9	24.6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4.6	8.0	56.6	30.9	100.0	175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214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구분	전혀 모름	거의 모름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계	(명)
맞벌이 여부(x²=46.153***)						
맞벌이	2.7	10.5	53.7	33.1	100.0	750
홑벌이	5.9	16.0	58.8	19.3	100.0	750
월평균 가구 소득(x ² =21.507)						
200만 원 미만	7.8	13.7	52.9	25.5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5.9	21.5	52.6	20.0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3.5	13.5	57.2	25.8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3.9	14.4	56.7	25.0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4.1	10.6	54.1	31.3	100.0	246
600만 원 이상	3.8	10.3	59.0	26.8	100.0	339
총자녀 수(x ² =11.998)						
1명	5.6	14.3	55.0	25.1	100.0	518
2명	4.2	12.6	57.4	25.8	100.0	828
3명 이상	0.0	13.6	54.5	31.8	100.0	154
학년(응답 대상 자녀) (x ² =35.983**)						
초1	2.6	12.4	55.8	29.2	100.0	274
초2	2.6	10.8	54.7	31.9	100.0	232
초3	5.7	12.7	50.4	31.1	100.0	244
초4	3.0	18.7	53.2	25.1	100.0	235
초5	7.3	13.7	60.5	18.5	100.0	233
초6	4.6	11.7	62.1	21.6	100.0	282

주: *p<0.05, **p<0.01, ***p<0.001

〈부표 12〉 돌봄 서비스 인지 정도 ③ 지역아동센터

구분	전혀 모름	거의 모름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계	(명)
전체	9.3	27.1	47.3	16.3	100.0	1,500
성별(x ² =44.712***)						
여성	8.2	20.5	51.7	19.6	100.0	777
남성	10.4	34.2	42.6	12.9	100.0	723
지역(x ² =3.016)						
대도시	9.5	27.7	46.5	16.3	100.0	516
중소도시	8.3	28.3	47.8	15.5	100.0	554
농어촌	10.2	24.7	47.7	17.4	100.0	430
연령(x ² =32.564**)						
25~34세	9.5	15.5	40.5	34.5	100.0	84
35~39세	8.4	24.5	49.9	17.2	100.0	429
40~44세	9.6	30.4	46.3	13.7	100.0	575
45~49세	9.6	29.0	47.0	14.5	100.0	345
50세 이상	10.4	19.4	50.7	19.4	100.0	67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구분	전혀 모름	거의 모름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계	(명)
학력(x ² =24.397***)						
고졸 이하	6.1	23.3	43.9	26.7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10.0	28.5	47.3	14.1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7.4	21.7	50.9	20.0	100.0	175
맞벌이 여부(x ² =20.412***)						
맞벌이	7.3	23.9	49.7	19.1	100.0	750
홑벌이	11.2	30.3	44.9	13.6	100.0	750
월평균 가구 소득(x ² =15.515)						
200만 원 미만	10.8	19.6	54.9	14.7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10.4	27.4	41.5	20.7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8.5	28.3	43.7	19.5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10.3	29.7	46.4	13.6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8.1	26.8	51.2	13.8	100.0	246
600만 원 이상	8.8	25.4	49.0	16.8	100.0	339
총자녀 수(x ² =25.613***)						
1명	13.5	25.1	43.4	18.0	100.0	518
2명	7.7	27.7	49.9	14.7	100.0	828
3명 이상	3.2	30.5	46.8	19.5	100.0	154
학년(응답 대상 자녀)						
$(x^2=13.039)$						
초1	9.5	27.7	48.2	14.6	100.0	274
초2	8.6	25.0	47.0	19.4	100.0	232
초3	7.0	29.1	45.5	18.4	100.0	244
초4	10.6	30.6	44.3	14.5	100.0	235
초5	11.6	25.8	45.1	17.6	100.0	233
초6	8.5	24.5	52.8	14.2	100.0	282

주: *p<0.05, **p<0.01,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부표 13〉 돌봄 서비스 인지 정도 ④ 다함께돌봄센터

					(	단위. %, 명)
구분	전혀 모름	거의 모름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계	(명)
전체	24.5	41.7	26.9	6.9	100.0	1,500
성별(x ² =7.902*)						
여성	25.2	39.0	27.5	8.2	100.0	777
남성	23.7	44.7	26.3	5.4	100.0	723
지역(x ² =21.816**)						
대도시	19.0	42.6	28.9	9.5	100.0	516
중소도시	25.8	43.1	25.1	6.0	100.0	554
농어촌	29.3	38.8	27.0	4.9	100.0	430
연령(x ² =25.022*)						
25~34세	20.2	29.8	34.5	15.5	100.0	84
35~39세	24.5	38.9	29.1	7.5	100.0	429
40~44세	27.3	42.8	24.2	5.7	100.0	575
45~49세	20.9	46.1	27.2	5.8	100.0	345
50세 이상	23.9	43.3	25.4	7.5	100.0	67
학력(x ² =13.612*)						
고졸 이하	24.4	34.4	31.1	10.0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24.7	43.3	26.2	5.8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22.9	38.9	27.4	10.9	100.0	175
맞벌이 여부(x²=9.405*)		0 - 7				
맞벌이	22.4	40.3	29.3	8.0	100.0	750
홑벌이	26.5	43.2	24.5	5.7	100.0	750
월평균 가구 소득(x ² =19.552)		_				
200만 원 미만	25.5	43.1	25.5	5.9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28.9	40.7	24.4	5.9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28.6	40.3	25.8	5.3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24.4	45.3	23.9	6.4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22.8	41.9	29.3	6.1	100.0	246
600만 원 이상	19.8	39.2	31.0	10.0	100.0	339
총자녀 수(x ² =14.858*)			_			
1명	27.4	35.9	29.2	7.5	100.0	518
2명	22.7	45.9	25.4	6.0	100.0	828
3명 이상	24.0	39.0	27.9	9.1	100.0	154
학년(응답 대상 자녀)				-		
$(x^2=24.347)$						
<u>초</u> 1	24.8	39.4	28.8	6.9	100.0	274
초2	22.4	40.5	26.7	10.3	100.0	232
<u>초</u> 3	25.0	40.2	27.9	7.0	100.0	244
<u>초</u> 4	31.5	37.9	23.0	7.7	100.0	235
초5	25.3	42.1	28.8	3.9	100.0	233
<u>초</u> 6	18.8	49.3	26.2	5.7	100.0	282

주: *p<0.05, **p<0.01,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부표 14〉 돌봄 서비스 인지 정도 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b>11日・70, 73</b> )
구분	전혀 모름	거의 모름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계	(명)
전체	20.1	32.7	37.1	10.1	100.0	1,500
성별(x ² =0.516)						
여성	20.6	32.8	36.3	10.3	100.0	777
남성	19.6	32.6	37.9	9.8	100.0	723
지역(x ² =10.206)	-,		0, ,			,
대도시	16.5	33.5	39.1	10.9	100.0	516
중소도시	20.0	33.0	36.6	10.3	100.0	554
능어촌 -	24.7	31.4	35.1	8.8	100.0	430
연령(x ² =20.136)		<b>5</b>				-5-
25~34세	14.3	27.4	38.1	20.2	100.0	84
35~39세	20.7	33.3	37.3	8.6	100.0	429
40~44세	23.0	32.3	36.2	8.5	100.0	575
45~49세	16.2	33.3	38.8	11.6	100.0	345
50세 이상	19.4	35.8	32.8	11.9	100.0	67
학력(x ² =22.033)	-2	55.0	5=.0			-,
고졸 이하	16.1	27.8	38.9	17.2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21.2	34.4	35.6	8.7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17.1	26.9	44.6	11.4	100.0	175
맞벌이 여부(x ² =17.350**)	-,					
맞벌이	17.5	30.1	41.5	10.9	100.0	750
후벌이	22.8	35.3	32.7	9.2	100.0	750
월평균 가구 소득(x²=26.207*)		55.5	3=-7	, . <u> </u>		,,,,
200만 원 미만	18.6	36.3	37.3	7.8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22.2	35.6	28.9	13.3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25.2	31.1	34.0	9.7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20.6	34.7	36.7	8.1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20.3	33.7	35.0	11.0	100.0	246
600만 원 이상	14.5	29.2	45.1	11.2	100.0	339
총자녀 수(x ² =6.796)						
1명	22.0	30.1	38.0	9.8	100.0	518
2명	19.4	34.2	37.0	9.4	100.0	828
3명 이상	17.5	33.8	34.4	14.3	100.0	154
학년(응답 대상 자녀)	-7.5	55.0	<i>y</i> =	3		-,-
$(x^2=19.715)$						
초1	22.3	33.6	36.1	8.0	100.0	274
초2	19.8	38.4	33.2	8.6	100.0	232
초3	22.5	29.9	36.1	11.5	100.0	244
초4	20.9	32.3	34.0	12.8	100.0	235
초5	20.2	31.3	36.5	12.0	100.0	233
초6	15.6	31.2	45.0	8.2	100.0	282

주: *p<0.05, **p<0.01,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부표 15〉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1	2	3	4	계	(명)
전체	35.9	47.0	16.2	0.9	100.0	1,500
성별(x ² =8.310*)						
여성	35.1	46.6	17.9	0.4	100.0	777
남성	36.7	47.4	14.4	1.5	100.0	723
지역(x ² =6.361)						
대도시	37.2	44.6	16.9	1.4	100.0	516
중소도시	33.4	48.7	17.3	0.5	100.0	554
농어촌	37.4	47.7	14.0	0.9	100.0	430
연령(x ² =6.189)						
25~34세	36.9	47.6	14.3	1.2	100.0	84
35~39세	34.7	45.5	18.4	1.4	100.0	429
40~44세	36.9	47.0	15.5	0.7	100.0	575
45~49세	34.8	48.4	16.2	0.6	100.0	345
50세 이상	38.8	49.3	10.4	1.5	100.0	67
학력(x ² =8.449)						
고졸 이하	39.4	47.2	13.3	0.0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36.0	46.9	16.2	0.9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31.4	47.4	18.9	2.3	100.0	175
맞벌이 여부(x²=6.248)						
맞벌이	35.9	48.5	15.2	0.4	100.0	750
홑벌이	35.9	45.5	17.2	1.5	100.0	750
월평균 가구 소득(x ² =22.708)						
200만 원 미만	35.3	51.0	13.7	0.0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42.2	44.4	10.4	3.0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35.8	42.8	20.4	0.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34.2	50.3	14.2	1.4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35.8	47.2	17.1	0.0	100.0	246
600만 원 이상	35.4	47.2	16.8	0.6	100.0	339
총자녀 수(x ² =13.820*)						
1명	37.8	43.8	17.4	1.0	100.0	518
2명	34.7	47.2	17.1	1.0	100.0	828
3명 이상	35.7	56.5	7.1	0.6	100.0	154
학년(응답 대상 자녀)						
$(x^2=15.328)$						
초1	36.5	43.8	18.6	1.1	100.0	274
초2	32.3	46.1	20.3	1.3	100.0	232
초3	36.1	50.0	13.1	0.8	100.0	244
초4	31.1	53.6	14.5	0.9	100.0	235
초5	39.5	43.3	15.9	1.3	100.0	233
초6	39.0	45.7	14.9	0.4	100.0	282

주: 1) *p<0.05, **p<0.01, ***p<0.001

²⁾ 상기 표의 각 항목(번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이나 맞벌이 가구 아동 중심으로 무료로 우선 제공
- ② 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과 맞벌이 가구 아동은 무료로 제공하고 이 밖의 원하는 아동은 유료화하여 최대한 제공
- ③ 모두 유료화하여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아동에게 최대한 제공
- ④ 기타

〈부표 16〉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생각

구분	1)	2	3	4	계	(명)
전체	37.1	46.3	15.7	0.9	100.0	1,500
성별(x ² =5.405)						
여성	37.1	45.6	16.9	0.5	100.0	777
남성	37.2	47.0	14.4	1.4	100.0	723
지역(x ² =9.259)						
대도시	36.6	45.7	16.7	1.0	100.0	516
중소도시	33.9	47.8	17.3	0.9	100.0	554
농어촌	41.9	44.9	12.3	0.9	100.0	430
연령(x ² =11.854)						
25~34세	32.1	51.2	15.5	1.2	100.0	84
35~39세	38.9	42.0	17.7	1.4	100.0	429
40~44세	38.6	46.8	13.9	0.7	100.0	575
45~49세	32.5	49.9	16.8	0.9	100.0	345
50세 이상	43.3	44.8	11.9	0.0	100.0	67
학력(x ² =6.863)						
고졸 이하	38.9	47.8	13.3	0.0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36.4	46.6	16.1	0.9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40.0	42.3	15.4	2.3	100.0	175
맞벌이 여부(x ² =8.753)		/				
맞벌이	35.6	48.9	15.2	0.3	100.0	750
홑벌이 의평급 기급 사도( ² 04 055)	38.7	43.6	16.1	1.6	100.0	750
월평균 가구 소득(x ² =21.055)	20.2	// 1	17.6	0.0	100.0	100
200만 원 미만	38.2	44.1	17.6	0.0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41.5	42.2	13.3	3.0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34.0	46.2	18.9	0.9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500만~600만 원 미만	38.3	48.3	11.7	1.7	100.0	360
500년~600년 현 미년 600만 원 이상	35.4 38.1	48.4 44.8	16.3 16.8	0.0 0.3	100.0 100.0	246
8자녀 수(x ² =8.310)	38.1	44.8	10.8	0.5	100.0	339
용사너 무(X=8.310) 1명	36.7	45.8	16.0	1.5	100.0	518
1명 2명	37.1	45.6 45.7	16.7	0.6	100.0	828
2명 3명 이상	39.0	51.3	9.1	0.6	100.0	020 154
20 10	37.0	71.0	J.1	0.0	100.0	

구분	1	2	3	4	계	(명)
학년(응답 대상 자녀)						
$(x^2=15.866)$						
초1	38.0	43.8	17.5	0.7	100.0	274
초2	38.8	44.4	15.1	1.7	100.0	232
초3	34.8	51.2	13.5	0.4	100.0	244
초4	31.9	49.4	17.4	1.3	100.0	235
초5	42.5	40.3	15.5	1.7	100.0	233
초6	36.9	48.2	14.9	0.0	100.0	282

주: 1) *p<0.05, **p<0.01, ***p<0.001

- ① 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이나 맞벌이 가구 아동 중심으로 무료로 우선 제공
- ② 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과 맞벌이 가구 아동은 무료로 제공하고 이 밖의 원하는 아동은 유료화하여 최대한 제공
- ③ 모두 유료화하여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아동에게 최대한 제공
- ④ 기타

〈부표 17〉 학기 중 초등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관련 가장 필요한 사항(2순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7	8	계	(명)
전체	5.3	21.3	21.9	11.4	17.9	16.6	5.5	0.0	100.0	1,500
성별(x ² =8.639)										
여성	4.6	21.8	22.4	11.3	16.3	16.7	6.8	0.0	100.0	777
남성	5.9	20.9	21.4	11.5	19.6	16.5	4.1	0.0	100.0	723
지역(x ² =16.359)										
대도시	3.5	20.0	20.7	11.6	20.5	18.6	5.0	0.0	100.0	516
중소도시	6.1	22.9	24.4	10.6	16.6	14.1	5.2	0.0	100.0	554
농어촌	6.3	20.9	20.2	12.1	16.5	17.4	6.5	0.0	100.0	430
연령(x ² =31.843)										
25~34세	2.4	15.5	23.8	13.1	25.0	16.7	3.6	0.0	100.0	84
35~39세	6.1	24.7	22.4	11.2	15.6	15.2	4.9	0.0	100.0	429
40~44세	4.5	22.6	21.9	12.3	17.4	14.3	7.0	0.0	100.0	575
45~49세	6.1	17.1	20.6	9.0	20.0	22.3	4.9	0.0	100.0	345
50세 이상	6.0	17.9	23.9	14.9	17.9	16.4	3.0	0.0	100.0	67
학력(x ² =23.012*)										
고졸 이하	7.8	26.7	21.1	11.7	15.0	10.0	7.8	0.0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5.4	21.0	21.6	11.6	18.6	16.9	4.9	0.0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1.7	18.3	25.1	9.7	16.6	21.1	7.4	0.0	100.0	175
맞벌이 여부(x²=2.096)										
맞벌이	5.1	21.9	20.9	11.6	18.9	16.1	5.5	0.0	100.0	750
홑벌이	5.5	20.8	22.9	11.2	16.9	17.1	5.6	0.0	100.0	750

²⁾ 상기 표의 각 항목(번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1	2	3	4	(5)	6	7	8	계	(명)
월평균 가구 소득(x ² =38.713)										
200만 원 미만	2.0	31.4	13.7	15.7	18.6	10.8	7.8	0.0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5.2	23.0	23.7	11.9	13.3	17.0	5.9	0.0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5.7	23.6	23.3	9.7	19.8	12.9	5.0	0.0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6.7	17.5	25.8	10.3	17.2	16.4	6.1	0.0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5.3	21.1	16.7	12.2	20.3	18.7	5.7	0.0	100.0	246
600만 원 이상	4.4	19.8	22.1	12.1	16.8	20.4	4.4	0.0	100.0	339
총자녀 수(x ² =15.619)										
1명	4.8	21.8	22.8	13.3	19.1	14.1	4.1	0.0	100.0	518
2명	5.9	20.7	21.5	10.5	18.0	17.5	5.9	0.0	100.0	828
3명 이상	3.2	23.4	21.4	9.7	13.6	20.1	8.4	0.0	100.0	154
학년(응답 대상 자녀)										
(x ² =45.656*)										
초1	6.6	27.0	24.5	10.2	14.2	13.1	4.4	0.0	100.0	274
초2	6.0	18.5	21.1	10.3	16.8	20.7	6.5	0.0	100.0	232
초3	4.9	25.0	17.6	10.7	20.1	18.9	2.9	0.0	100.0	244
초4	4.3	22.1	23.8	6.8	19.6	16.6	6.8	0.0	100.0	235
초5	4.3	17.6	20.6	18.0	18.9	13.7	6.9	0.0	100.0	233
초6	5.3	17.4	23.4	12.4	18.4	17.0	6.0	0.0	100.0	282

주: 1) *p<0.05, **p<0.01, ***p<0.001

- ① 학교 내 돌봄 서비스 교실 수 확대 ② 학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
- ③ 학교 내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④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공급 기관 확대
- 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
- ⑥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 ⑦ 학교 내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⑧ 기타

〈부표 18〉 학기 중 초등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관련 가장 필요한 사항 (1순위 + 2순위, 중복 응답)

구분	1	2	3	4	(5)	6	7	8	계	(명)
 전체 성별	21.5	52.9	54.2	20.0	22.3	20.4	8.7	0.0	200.0	1,500
여성 여성	23.8	48.8	55 3	20.7	20.8	20.6	9.9	0.0	200.0	777
남성	-5								200.0	723
지역										
대도시	19.8	51.4	54.3	20.2	25.2	22.3	7.0	0.0	200.0	516
중소도시	23.6	56.5	56.1	18.4	19.5	17.0	8.8	0.0	200.0	554
농어촌	20.9	50.2	51.6	21.9	22.3	22.6	10.5	0.0	200.0	430

²⁾ 상기 표의 각 항목(번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222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구분	1	2	3	4	(5)	6	7	8	계	(명)
연령										
25~34세	19.0	50.0	56.0	21.4	27.4	21.4	4.8	0.0	200.0	84
35~39세	25.6	55.5	53.6	19.8	19.6	18.4	7.5	0.0	200.0	429
40~44세	20.9	52.9	54.3	19.3	22.8	18.6	11.3	0.0	200.0	575
45~49세	19.4	51.3	53.3	20.3	23.2	25.2	7.2	0.0	200.0	345
50세 이상	14.9	49.3	59.7	23.9	23.9	22.4	6.0	0.0	200.0	67
학력										
고졸 이하	30.6	56.7	44.4	18.9	20.6	15.6	13.3	0.0	2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20.4	52.7	55.8	20.5	22.8	20.1	7.7	0.0	2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19.4	50.9	53.7	17.7	20.6	27.4	10.3	0.0	200.0	175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0	53.9	53.1	19.9	23.9	20.0	7.3	0.0	200.0	750
홑벌이	21.1	52.0	55.3	20.1	20.7	20.8	10.0	0.0	200.0	75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21.6	53.9	48.0	26.5	25.5	14.7	9.8	0.0	2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20.0	51.9	57.0	17.0	20.7	23.0	10.4	0.0	2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23.9	52.5	56.6	18.6	22.0	17.0	9.4	0.0	2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21.7	54.4	54.4	17.2	21.9	21.4	8.9	0.0	2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22.0	50.4	53.3	22.8	22.4	21.1	8.1	0.0	200.0	246
600만 원 이상	19.5	53.7	53.1	21.5	22.4	22.7	7.1	0.0	200.0	339
총자녀 수										
1명	22.4	52.7	52.9	24.3	23.6	17.6	6.6	0.0	200.0	518
2명	21.6	52.5	55.3	17.8	22.0	21.5	9.3	0.0	200.0	828
3명 이상	18.2	55.8	52.6	17.5	19.5	24.0	12.3	0.0	200.0	154
학년(응답 대상 자녀)										
초1	29.2	59.9	54.0	18.2	16.1	17.2	5.5	0.0	200.0	274
초2	23.7	49.6	56.9	19.0	19.8	23.7	7.3	0.0	200.0	232
초3	22.5	55.3	53.3	19.3	23.0	20.9	5.7	0.0	200.0	244
초4	21.3	50.6	52.8	17.0	26.0	21.3	11.1	0.0	200.0	235
초5	15.5	54.5	52.8	24.0	22.7	18.0	12.4	0.0	200.0	233
초6	16.7	47.5	55.3	22.3	26.2	21.6	10.3	0.0	200.0	282

주: 상기 표의 각 항목(번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학교 내 돌봄 서비스 교실 수 확대 ② 학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

③ 학교 내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④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공급 기관 확대

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

⑥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⑦ 학교 내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⑧ 기타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부표 19〉 방학 중 초등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관련 가장 필요한 사항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명)
① 학교 내 돌봄 서비스 교실 수 확대	13.5	5.3	18.7	281
② 학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	34.0	20.6	54.6	819
③ 학교 내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28.9	23.4	52.3	785
④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공급 기관확대	9.7	10.3	19.9	299
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	7.1	19.1	26.2	393
⑥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3.9	15.7	19.5	293
⑦ 학교 내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3.0	5.6	8.6	129
⑧ 기타	0.0	0.1	0.1	1
	100.0	100.0	200.0	3,000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부표 20〉 방학 중 초등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관련 가장 필요한 사항(2순위)

구분	1	2	3	4	(5)	6	7	8	계	(명)
전체	5.3	20.6	23.4	10.3	19.1	15.7	5.6	0.1	100.0	1,500
성별(x ² =9.011)										
여성	5.3	19.7	25.0	10.8	16.7	16.2	6.2	0.1	100.0	777
남성	5.3	21.6	21.7	9.7	21.7	15.1	5.0	0.0	100.0	723
지역(x ² =29.781**)										
대도시	4.1	16.7	21.9	10.7	23.4	18.4	4.8	0.0	100.0	516
중소도시	5.1	22.0	27.1	10.8	15.5	13.5	5.8	0.2	100.0	554
농어촌	7.0	23.5	20.5	9.1	18.6	15.1	6.3	0.0	100.0	430
연령(x ² =32.102)										
25~34세	3.6	13.1	27.4	9.5	26.2	14.3	6.0	0.0	100.0	84
35~39세	6.8	24.2	23.5	9.6	18.6	12.6	4.7	0.0	100.0	429
40~44세	4.3	21.6	24.0	11.0	18.4	14.1	6.6	0.0	100.0	575
45~49세	5.8	16.2	21.4	9.9	19.7	21.4	5.2	0.3	100.0	345
50세 이상	3.0	20.9	22.4	11.9	16.4	20.9	4.5	0.0	100.0	67
학력(x ² =22.376*)										
고졸 이하	3.3	26.1	18.9	11.1	13.3	17.2	10.0	0.0	1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5.3	20.4	23.6	10.6	19.7	15.5	4.8	0.0	1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6.9	16.0	26.9	7.4	21.1	14.9	6.3	0.6	100.0	175

구분	1	2	3	4	(5)	6	7	8	계	(명)
맞벌이 여부(x²=5.684)										
맞벌이	5.6	21.1	22.7	10.3	20.3	15.7	4.4	0.0	100.0	750
홑벌이	4.9	20.1	24.1	10.3	18.0	15.6	6.8	0.1	100.0	750
월평균 가구 소득(x ² =49.395*)										
200만 원 미만	2.0	22.5	9.8	13.7	19.6	25.5	6.9	0.0	1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5.9	23.7	22.2	8.9	20.0	13.3	5.9	0.0	1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4.7	22.6	25.2	9.1	19.8	12.6	6.0	0.0	1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6.7	18.3	29.7	9.2	17.2	12.2	6.7	0.0	1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6.5	21.1	20.7	10.2	21.1	14.6	5.3	0.4	100.0	246
600만 원 이상	4.1	18.9	21.5	12.1	18.6	20.9	3.8	0.0	100.0	339
총자녀 수(x ² =19.575)										
1명	6.9	21.6	22.4	11.4	20.3	12.9	4.2	0.2	100.0	518
2명	4.6	20.2	24.9	9.2	18.8	16.4	5.9	0.0	100.0	828
3명 이상	3.2	19.5	18.8	12.3	16.9	20.8	8.4	0.0	100.0	154
학년(응답 대상 자녀)										
(x ² =36.950)										
초1	7.3	27.0	22.3	9.5	18.2	12.8	2.9	0.0	100.0	274
초2	6.0	15.9	25.4	9.1	16.4	17.7	9.5	0.0	100.0	232
초3	5.7	20.5	22.1	11.5	21.3	15.6	3.3	0.0	100.0	244
초4	5.1	20.0	26.8	9.8	17.4	15.3	5.5	0.0	100.0	235
초5	3.4	21.0	23.6	10.7	20.2	14.2	6.9	0.0	100.0	233
초6	3.9	18.4	20.9	11.0	20.9	18.4	6.0	0.4	100.0	282

주: 1) *p<0.05, **p<0.01, ***p<0.001

- ① 학교 내 돌봄 서비스 교실 수 확대
- ② 학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
- ③ 학교 내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④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공급 기관 확대
- 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
- ⑥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 ⑦ 학교 내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⑧ 기타

〈부표 21〉 방학 중 초등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관련 가장 필요한 사항 (1순위 + 2순위, 중복 응답)

	구분	1	2	3	4	(5)	6	7	8	계	(명)
전체		18.7	54.6	52.3	19.9	26.2	19.5	8.6	0.1	200.0	1,500
성별											
여성		19.9	50.6	54.2	20.8	25.1	21.0	8.2	0.1	200.0	777
남성		17.4	58.9	50.3	18.9	27.4	18.0	9.0	0.0	200.0	723

²⁾ 상기 표의 각 항목(번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1	2	3	4	(5)	6	7	8	계	(명)
지역										
대도시	14.1	52.5	52.1	21.5	30.4	21.3	7.9	0.0	200.0	516
중소도시	20.6	57.9	54.2	20.0	20.9	17.3	8.8	0.2	200.0	554
농어촌	21.9	52.8	50.2	17.9	27.9	20.2	9.1	0.0	200.0	430
연령										
25~34세	16.7	38.1	59.5	21.4	40.5	15.5	8.3	0.0	200.0	84
35~39세	22.4	56.4	52.2	19.8	25.6	16.6	7.0	0.0	200.0	429
40~44세	19.1	56.2	51.7	19.1	25.7	18.4	9.7	0.0	200.0	575
45~49세	15.1	53.3	52.2	20.0	24.9	25.2	9.0	0.3	200.0	345
50세 이상	13.4	56.7	50.7	25.4	22.4	23.9	7.5	0.0	200.0	67
학력										
고졸 이하	24.4	58.3	38.9	21.1	22.2	20.6	14.4	0.0	200.0	180
대학교 졸(4년제 이하)	18.3	54.2	54.4	19.7	26.6	19.4	7.4	0.0	200.0	1,145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16.0	53.1	52.6	20.6	27.4	19.4	10.3	0.6	200.0	17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8.5	54.1	53.5	19.7	27.5	19.3	7.3	0.0	200.0	750
홑벌이	18.9	55.1	51.2	20.1	24.9	19.7	9.9	0.1	200.0	75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18.6	50.0	40.2	25.5	29.4	28.4	7.8	0.0	200.0	102
200만~300만 원 미만	22.2	60.0	43.0	14.1	31.9	17.0	11.9	0.0	200.0	135
300만~400만 원 미만	19.2	58.2	50.6	20.8	26.4	15.7	9.1	0.0	200.0	318
400만~500만 원 미만	17.8	58.3	55.6	17.5	23.9	17.8	9.2	0.0	200.0	360
500만~600만 원 미만	19.5	49.6	57.3	22.0	25.2	17.9	8.1	0.4	200.0	246
600만 원 이상	17.4	50.1	54.3	20.9	26.0	24.5	6.8	0.0	200.0	339
총자녀 수										
1명	20.5	54.1	49.4	23.6	27.8	17.4	7.1	0.2	200.0	518
- 2명	18.5	55.3	53.6	17.8	25.7	20.5	8.6	0.0	200.0	828
3명 이상	14.3	52.6	55.2	19.5	23.4	21.4	13.6	0.0	200.0	154
학년(응답 대상 자녀)							-0 -			
초1	26.3	56.2	51.8	20.4	24.5	15.3	5.5	0.0	200.0	274
<u>초</u> 2	22.0	53.0	55.6	16.4	21.6	21.1	10.3	0.0	200.0	232
초3	18.0	55.7	52.5	20.9	28.7	18.0	6.1	0.0	200.0	244
<u>초</u> 4	19.6	53.2	55.3	18.3	27.7	17.4	8.5	0.0	200.0	235
<u>초</u> 5	14.2	56.7	46.8	20.2	26.6	21.9	13.7	0.0	200.0	233
<u>초</u> 6	12.4	52.8	52.1	22.7	28.0	23.4	8.2	0.4	200.0	282

주: 상기 표의 각 항목(번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학교 내 돌봄 서비스 교실 수 확대 ② 학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
- ③ 학교 내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④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공급 기관 확대
- 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
- ⑥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 ⑦ 학교 내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⑧ 기타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 〈부표 22〉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2004~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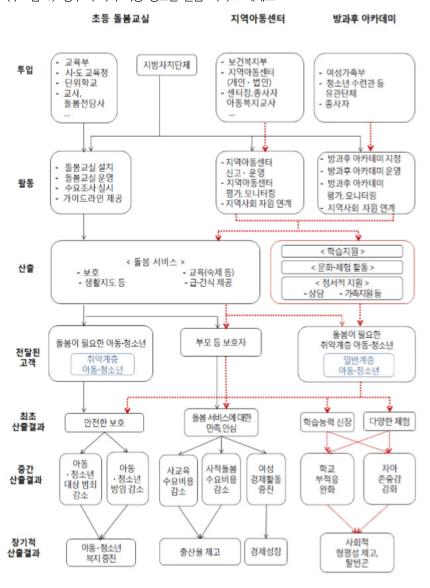
(단위: 개, %)

															- 111 111, 707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T4-11	895	1,709	2,029	2,618	3,013	3,474	3,690	3,985	4,036	4,061	4,059	4,102	4,107	4,189	4,21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1	104	157	210	262	302	354	367	395	404	405	409	414	414	450	454
서울	(11.6)	(9.2)	(10.3)	(10.0)	(10.0)	(10.2)	(9.9)	(9.9)	(10.0)	(10.0)	(10.1)	(10.1)	(10.1)	(10.7)	(10.8)
HIL	43	95	110	134	155	171	185	194	196	200	200	205	204	208	212
부산	(4.8)	(5.6)	(5.4)	(5.1)	(5.1)	(4.9)	(5.0)	(4.9)	(4.9)	(4.9)	(4.9)	(5.0)	(5.0)	(5.0)	(5.0)
	21	28	35	60	75	115	147	171	177	188	191	200	199	198	200
대구	(2.3)	(1.6)	(1.7)	(2.3)	(2.5)	(3.3)	(4.0)	(4.3)	(4.4)	(4.6)	(4.7)	(4.9)	(4.8)	(4.7)	(4.7)
이런	58	105	117	143	157	175	174	182	187	186	181	179	183	182	178
인천	(6.5)	(6.1)	(5.8)	(5.5)	(5.2)	(5.0)	(4.7)	(4.6)	(4.6)	(4.6)	(4.5)	(4.4)	(4.5)	(4.3)	(4.2)
광주	39	80	92	143	164	201	218	272	278	285	292	300	301	306	308
성구	(4.4)	(4.7)	(4.5)	(5.5)	(5.4)	(5.8)	(5.9)	(6.8)	(6.9)	(7.0)	(7.2)	(7.3)	(7.3)	(7.3)	(7.3)
대전	24	62	83	122	133	139	144	149	146	147	147	146	145	145	144
네신	(2.7)	(3.6)	(4.1)	(4.7)	(4.4)	(4.0)	(3.9)	(3.7)	(3.6)	(3.6)	(3.6)	(3.6)	(3.5)	(3.5)	(3.4)
울산	17	33	41	49	51	54	52	56	57	58	56	56	55	54	56
굴신	(1.9)	(1.9)	(2.0)	(1.9)	(1.7)	(1.6)	(1.4)	(1.4)	(1.4)	(1.4)	(1.4)	(1.4)	(1.3)	(1.3)	(1.3)
세종	-	-	-	-	-	-	-	-	11	9	10	11	12	12	13
시승	-	-	-	-	-	-	-	-	(0.3)	(0.2)	(0.2)	(0.3)	(0.3)	(0.3)	(0.3)
7171	192	336	402	534	601	656	679	722	735	728	751	757	763	783	789
경기	(21.5)	(19.7)	(19.8)	(20.4)	(19.9)	(18.9)	(18.4)	(18.1)	(18.2)	(17.9)	(18.5)	(18.5)	(18.6)	(18.7)	(18.7)
7101	41	94	102	114	139	159	159	164	164	162	163	166	168	168	172
강원	(4.6)	(5.5)	(5.0)	(4.4)	(4.6)	(4.6)	(4.3)	(4.1)	(4.1)	(4.0)	(4.0)	(4.0)	(4.1)	(4.0)	(4.1)
	56	102	118	137	156	176	185	201	202	199	190	188	184	185	184
충북	(6.3)	(6.0)	(5.8)	(5.2)	(5.2)	(5.1)	(5.0)	(5.0)	(5.0)	(4.9)	(4.7)	(4.6)	(4.5)	(4.4)	(4.4)
ᄎ나	39	79	87	125	151	181	200	216	214	221	224	232	226	240	238
충남	(4.4)	(4.6)	(4.3)	(4.8)	(5.0)	(5.2)	(5.4)	(5.4)	(5.3)	(5.4)	(5.5)	(5.7)	(5.5)	(5.7)	(5.7)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북	59	130	147	173	212	255	267	286	288	287	281	281	286	285	285
신국	(6.6)	(7.6)	(7.2)	(6.6)	(7.0)	(7.3)	(7.2)	(7.2)	(7.1)	(7.1)	(6.9)	(6.9)	(7.0)	(6.8)	(6.8)
전남	87	182	216	279	307	343	368	399	392	392	383	387	384	379	378
선급	(9.7)	(10.6)	(10.6)	(10.7)	(10.2)	(9.9)	(10.0)	(10.0)	(9.7)	(9.7)	(9.4)	(9.4)	(9.3)	(9.0)	(9.0)
경북	34	91	108	143	164	206	232	252	256	261	257	259	258	267	271
<u> </u>	(3.8)	(5.3)	(5.3)	(5.5)	(5.4)	(5.9)	(6.3)	(6.3)	(6.3)	(6.4)	(6.3)	(6.3)	(6.3)	(6.4)	(6.4)
경남	66	106	128	158	189	219	244	254	257	260	255	253	259	261	263
~ ~ ~ ·	(7.4)	(6.2)	(6.3)	(6.0)	(6.3)	(6.3)	(6.6)	(6.4)	(6.4)	(6.4)	(6.3)	(6.2)	(6.3)	(6.2)	(6.2)
제주	15	29	33	42	57	70	69	72	72	73	69	68	66	66	66
세구	(1.7)	(1.7)	(1.6)	(1.6)	(1.9)	(2.0)	(1.9)	(1.8)	(1.8)	(1.8)	(1.7)	(1.7)	(1.6)	(1.6)	(1.6)

주: 2016년 이전 수치는 2016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 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임.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부그림 1〉 정부 부처의 아동·청소년 돌봄 서비스 체계도



외부요인들: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자료: 구슬이. (2014). 방과후돌봄서비스 평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부록 2] 조사표



응답자 ID									

#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초등아동이 등하교 전후 이용하고 있는 돌봄서비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돌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는 초등 아동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작성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통계 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조사업체 : ㈜리서치앤리서치

연구책임자 : 김은정 부연구위원

2019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art A. 돌봄서비스 인지, 경험, 만족도

## 문1. 귀하는 다음의 돌봄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돌봄서비스 설명>

서비스	정의 및 내용
	-초등학교 내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
(1) 초 <del>등돌</del> 봄교실	봄활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다름)
	-오후돌봄(방과후~17시), 저녁돌봄(17시~22시) 등이 있으며, 운영시간은
	학교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초등돌봄교실 운영 프로그램 중 하나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개 이상
(2) 방과후학교연계형 초등돌봄교실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2) 647-422/16 202622	전용교실 또는 겸용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돌봄활동
	-방과후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학교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 <u>으로</u> 보호·
	교육,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3)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제공
	-이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제공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숙제지도, 신
(4) 다함께돌봄센터	체활동, 학습활동(특기적성) 프로그램, 급·간식 등을 제공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운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중등 3학년)의 건강한 성장
(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올 지원하기 위하여 방과후 학습지원, 전문체험 활동, 학습 프로그램,
	생활지원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4점 척도
(1) 초등돌봄교실	① 전혀 모른다	② 거의 모른다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2) 방과후학교연계형 초등돌봄교실	① 전혀 모른다	② 거의 모른다
(2) 정의우역파인계영 조승물놈파달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3) 지역아동센터	① 전혀 모른다	② 거의 모른다
(3) 시탁이중센터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4) 다함께돌봄센터	① 전혀 모른다	② 거의 모른다
(4) 나람께글음'앤니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① 전혀 모른다	② 거의 모른다
(기) 영프단정퍼투에기네비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문2. 귀하는 자녀 돌봄을 위해 다음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해당 경험을 토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서비스	이용경험 (문2-1)	만족도 (문2-2)
(1) 초등돌봄교실	① 있다 ② 없다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대체로 만족 ④ 매우 만족
(2) 방과후학교연계형 초등돌봄교실	① 있다 ② 없다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대체로 만족 ④ 매우 만족
(3) 지역아동센터	① 있다 ② 없다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대체로 만족 ④ 매우 만족
(4) 다함께돌봄센터	① 있다 ② 없다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대체로 만족 ④ 매우 만족
(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① 있다 ② 없다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대체로 만족 ④ 매우 만족

### Part B. 돌봄 실태

문3. 귀하의 자녀의 현재 돌봄 유형은 어떠합니까? 다음의 돌봄 유형별로 현재 이용 여부와 이용 시간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이용(또는 해당) 시간은 24시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D.41	이용( 여박	부 (문 <b>3-1</b> )	시작 시간	난 (문 <b>3-2</b> )	종료 사	<b>난 (문 3-3)</b>	
문항	980	왕에미	시	분	시	분	
(1) 초등돌봄교실 아침돌봄	1	2	00시	00분	JA00	00분	
(2) 초등돌봄교실 오후돌봄	1	2	00시	00분	JA00	00분	
(3) 초등돌봄교실 저녁돌봄	1	2	00시	00분	JA00	00분	
(4) 방과후학교연계형 초등돌봄	1	2	00시	00분	JA00	00분	
(5) 지역아동센터	1	2	00시	00분	JA00	00분	
(6) 다함께돌봄센터	1	2	00시	00분	007	00분	
(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	2	00시	00분	JA00	00분	
(8) 지자체 공적 돌봄서비스 (예: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1	2	00시	00분	الـ000	00분	
(9) 부모 돌봄	1	2					
(10) 아이돌보미 또는 민간 도우미 이용	1	2					
(11) 조부모 등 친인척 돌봄	1	2					
(12) 사설 학원 이용 (돌봄의 시간적 공백이 발생하여 보내는 경우에만 해당)	1	2	※ 질문하지 않음				
(13) 성인보호자 없이 형제자매와 같 이 있음	1	2					
(14) 혼자 있음 (일주일에 하루라도 혼자 있는 경우가 있으면 해당)	1	2					
(15) 기타	1	2					

문3-4.	초등학교에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아침, 오후,	저녁, !	방과후학교(	연계형)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후	유는 무엇입	[니까? (※ 방.	과후학교 프	로그램은	-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① 가능한 한 집에서 돌보고 싶어서(부모, 아이돌보미, 민간도우미, 조부모 등 친인척 등)
- ② 신청했는데 떨어져서 이용하지 못함
- ③ 이용자격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함
- ④ 서비스 내용과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③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를 이용 하기 위해서
- ⑥ 학교 돌봄서비스 제공시간과 원하는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학원 이용, 퇴근 후 픽업 시간 등)
- ⑦ 현재 학교에서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8	기타					
---	----	--	--	--	--	--

- 문3-5.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능한 한 집에서 돌보고 싶어서(부모, 아이돌보미, 민간도우미, 조부모 등 친인척 등)
  - ②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③ 이용자격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함
- ④ 신청했는데 떨어져서 이용하지 못함
- ⑤ 서비스 내용과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⑥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이동이 어려워서
- ⑦ 서비스 제공시간과 원하는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학원 이용, 퇴근 후 픽업 등)
- ⑧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 ⑨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취약계층 등)

⑩ 기타	
------	--

문3-6. 해당 자녀가 혼자 있는 경우는 일주일에 며칠, 주당 **전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주 ( )일 총 ( )시간 ( )분

### 234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문4. 귀하는 다음시기의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 시간대는 24시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시간대				
,	시기		4점 척도 (문4-1)	시작 시간 (문 <b>4-2</b> )		종료 시간 (문4-3)		
				시	분	시	분	
	평일	오 전	① 전혀 어려움이 없음 ② 거의 어려움이 없음 ③ 다소 어려움 ④ 매우 어려움	JA00	00분	الـ00	00분	
학 기 중		수	① 전혀 어려움이 없음 ② 거의 어려움이 없음 ③ 다소 어려움 ④ 매우 어려움	JA00	00분	JA00	00분	
8	주말	오 전	① 전혀 어려움이 없음 ② 거의 어려움이 없음 ③ 다소 어려움 ④ 매우 어려움	JA00	00분	الـ00	00분	
	超	유	① 전혀 어려움이 없음 ② 거의 어려움이 없음 ③ 다소 어려움 ④ 매우 어려움	JA00	00분	JA00	00분	
	편이 이외	오전	① 전혀 어려움이 없음 ② 거의 어려움이 없음 ③ 다소 어려움 ④ 매우 어려움	JA00	00분	JV00	00분	
방		오후	① 전혀 어려움이 없음 ② 거의 어려움이 없음 ③ 다소 어려움 ④ 매우 어려움	JA00	00분	J007	00분	
바이 하다 성이	마무 - 기	오 전	① 전혀 어려움이 없음 ② 거의 어려움이 없음 ③ 다소 어려움 ④ 매우 어려움	الـ00	00분	JA00	00분	
		오후	① 전혀 어려움이 없음 ② 거의 어려움이 없음 ③ 다소 어려움 ④ 매우 어려움	JA00	00분	الـ00	00분	

## Part C. 돌봄서비스 및 정책 요구도

문5. 귀하는 학교에서 초등돌봄서비스가 몇 학년까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년
문6. 귀하는 현재 자녀의 <b>주된 돌봄유형으로 희망하는 방법</b> 은 무엇입니까? 1가지 이상인 경우 2순위 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①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②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민간도우미, 조부모, 친인척 등을 이용한 개별 돌봄
③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이용
④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이용
④ 학원 등 사교육 기관 이용
⑤ 기타
문7. 귀하는 한정된 예산제약 하에서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아침, 오후, 저녁, 방과후학교연계형) 공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이나 맞벌이 가구 아동 중심으로 무료로 우선 제공
② 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이나 맞벌이 가구 아동은 무료로 제공하고 이 밖의 원하는 아동은 유료화 하여 최대한 제공
③ 모두 유료화 하여 돌봄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아동에게 최대한 제공
④ 기타
<del> </del>
문8. 귀하는 한정된 예산제약 하에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
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공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이나 맞벌이 가구 아동 중심으로 무료로 우선 제공
② 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이나 맞벌이 가구 아동은 무료로 제공하고 이 밖의 원하는 아동은
유료화 하여 최대한 제공
③ 모두 유료화 하여 돌봄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아동에게 최대한 제공
④ 기타

문9. 귀하께서는 현재 학교에서 제공되는 초등돌봄교실 공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한 편이다         ③ 충분한 편이다         ④ 매우 충분하다
문10. 귀하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교실 수 확대 등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이용료를 내야한다면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문10-1 ② 아니오> 문 11
문10-1. 월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까? 월만 원
문11. 귀하께서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테미등) 공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한 편이다 ③ 충분한 편이다 ④ 매우 충분하다
문12. 귀하는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등)와 관련하여 공급기관 확대 등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이용료를 내야한다면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현재 이용료를 내고 있는 경우 예로 응답 바랍니다) ① 예> 문12-1 ② 아니오> 문13
문12-1. 월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까? 월만 원

문13. 귀하는 <b>학기 중</b> 초등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① 학교 내 돌봄서비스 교실 수 확대 ② 학교 내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및 다양화 ③ 학교 내 돌봄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④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공급기관 확대 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및 다양화 ⑥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⑦ 학교 내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연계 ⑧ 기타
문14. 귀하는 <b>방학 중</b> 초등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① 학교 내 돌봄서비스 교실 수 확대 ② 학교 내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및 다양화 ③ 학교 내 돌봄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④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공급기관 확대 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및 다양화 ⑥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⑦ 학교 내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연계 ⑧ 기타
문15. 귀하는 초등학생 시기의 돌봄 책임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와 개인(부모)에 돌봄 분담 정도를 비율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국가와 개인(부모)이 합쳐 100%가 되어야 합니다.]
① 국가: () % ② 개인(가정): () % 문16. 초등아동의 돌봄지원과 관련하여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art D. 일반 사항						
DQ1.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b>DQ2.</b> 연			령	만세	
DQ3. 학력	① 고졸 이하 ③ 대학교 졸			졸(3년제 이하) 원 이상(재학 포함)		
DQ4. 자녀수	※ 해당 시기에 각각의 자녀 총자녀수 ① 영유아 (00명) (00명) ③ 초등고학년(4~6학년 (00명) ⑤ 고등학생 (00명)			수 기입하게 구현, 총자녀수와 합계 일치 ② 초등저학년(1~3학년) (00명) 명) ④ 중학생 (00명) ⑥ 대학생 이상 (00명)		
DQ5. 취업유무	① 취업	본인 ① 취업 ② 비취업> DQ7			배우자(사실혼 포함) 설 ② 비취업> DQ7 P자 없음(이혼, 사별)> DQ7	
DQ6. 경제활동 참여상태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정규직) ②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 ③ 고용주, 자영업자 ④ 무급가족종사자 ⑤ 기타			① 상용 (고용계 ② 임시 (고용계 ③ 고용계	장직 임금근로자  약기간 1년 이상 또는 정규직)  /일용직 임금근로자  약기간 1년 미만) 당주, 자영업자 당가족종사자	
DQ7. 가구소득 (월평균)	① 100만 원 미만 ③ 200-300만 원 미만 ⑤ 400-500만 원 미만 ⑦ 600-700만 원 미만			② 100-200만 원 미만 ④ 300-400만 원 미만 ⑤ 500-600만 원 미만 ⑦ 700만원 이상		

***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간행물 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www.kihasa.re.kr

발간자료

간행물 구독안내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